

건축정책기본계획 성과관리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Guideline for Performance Management of
the Fundamental Plans on Architecture Policy

김상호 Kim, Sang Ho
김영현 Kim, Young Hyun

(a u r i

AURI-정책-2009-4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성과관리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Guideline for Performance Management of
the Fundamental Plans on Architecture Policy

지은이 : 김상호, 김영현

펴낸곳: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출판등록: 제385-2008-0005호

인쇄: 2009년 12월 8일, 발행: 2009년 12월 15일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 아크로타워 B동 301호

전화: 031-478-9600, 팩스: 031-478-9609

<http://www.auri.re.kr>

가격: 7,000원, ISBN:978-89-93216-34-9

*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연구진

- | 연구책임 김상호 · 연구위원
- | 연구진 김영현 · 연구원
- | 연구보조원 권수현 · 정환성

연구심의위원회

- | 외부심의위원 박인석 · 명지대학교 교수
 김태오 · 국토해양부 건축문화팀 서기관
 김성일 ·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 내부심의위원 조준배 · 설계연구실장
 권영상 · 부연구위원

연구요약

연구배경 및 목적

지난 2007년 12월에 건축기본법이 제정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건축정책 기본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으며, 기존에 운용되고 있는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체계 및 최근 경관법에 의한 경관기본계획 등과의 관계에 대해 건축·도시관련 전문가들조차도 계획간의 위계와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축정책기본계획의 궁극적인 목적 달성과 함께 건축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에 합당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성과관리 체계 마련과 계획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리역량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건축·도시 관련분야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계획으로 각 실천과제별로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가 도출되어야 하나 그 범위가 매우 넓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수립되는 계획으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사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성과관리에 관한 첫번째 연구로서 완전무결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실천과제별 성격을 유형화하고, 현재 운용되고 있는 정부정책 관련 법·제도와 유사기본계획의 성과관리 체계를 검토하여 향후 마련해야 할 성과관리 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분석

건축정책기본계획 실천과제별로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과제를 유형화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추진주체별’, ‘과제의 성격’, ‘과제별 추진기간’, ‘성과지표 도출 가능 유무’ 등 4가지 측면으로 과제의 유형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많은 과제들이 단일 유형이 아닌 2가지 이상의 유형을 지녔으며, 단기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과제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가 필요한 과제가 많았다. 따라서 성과관리도 단기적인 결과중심의 평가보다는 장기적으로 전략적이고 상시적인 과정중심의 성과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평가 및 성과관리의 이론적 검토

정부정책 및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시행에 근거가 되는 관련 법률인 정부업무평가기본법, 국가재정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조사하고, 관련된 주요 제도운용 현황과 제도별 구성 및 추진체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아울러 해외 주요국인 미국, 영국, 일본의 정책평가 및 성과관리제도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성과관리 제도의 위치와 성격을 파악 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 성과관리에 획일적인 평가기준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제하에 융통성 있는 평가 전략을 활용하려는 추세이며, 평가결과의 활용은 주로 평가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여 업무에 대한 책임성과 효율성을 증진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건축정책기본계획은 범부처, 범지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건축·도시관련 정책 및 예산사업에 대한 통합관리를 목적으로 수립되는 것으로 앞서 살펴본 「정부업무평가기본법」과 「국가재정법」과는 어떠한 연관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지속적인 검토와 연계가능성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연구개발 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이 정부예산의

25~30%를 차지하고 있는 건축·도시관련 사업의 통합관리를 위한 별도의 성과관리 관련법령을 제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국내 법정계획의 성과관리 체계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성과관리 방향 설정을 위해 성격이 유사한 전략계획으로서 “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 “여성정책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정책기본계획”들을 대상으로 성과지표 및 평가방법, 평가지표 등 구체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부분의 법정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정책과제별로 평가분야와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세부과제의 평가가 이루어지며, 과제별 성과지표를 두고 정량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예외적으로 국토종합계획과 여성정책기본계획의 경우에는 별도의 성과지표가 없이 주로 정성적, 기술적 평가가 이루어지며, 필요시에만 정량적 평가를 병행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평가는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평가위원회는 각 기관에서 이루어진 자체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방향

앞서 살펴보았듯이 정책평가 또는 성과관리는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측정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정책 및 사업이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와 함께 부수적인 효과나 역기능, 장기적인 파급효과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성과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성과관리 기본방향을 정리하면 우선 첫째,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성과측정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중앙집권적인 평가체계가 아닌 지역의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

셋째,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한 환류체계의를 구축해야 한다.

성과관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추진과정을 분석하여 향후 정책방향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단편적인 평가방식이 아닌 전략적이고 과정중심의 성과관리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3개월이라는 제약적인 연구기간과 함께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기본계획의 실천과제에 대한 심층적인 내용분석이 어려운 한계점이 있었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과정에서 조사·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성과관리 체계구축 과정을 3단계(정보수집기-성과관리체계 구축기-성과평가 정착기)로 구분하여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최종년도인 2014년까지 지속적인 개선·개발을 위한 성과관리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차 례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의 범위	4
2.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5
3. 과업 수행방법	7
제2장 건축정책기본계획 성과관리의 필요성	9
1. 계획의 실효성 확보 및 효과의 극대화	9
2. 성과관리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의 증대	13
3. 성과관리 환류체계를 통한 계획의 지속성 확보	14
제3장 건축정책기본계획 분석	17
1. 계획의 성격 및 구성체계	17
1) 계획의 개요	17
2) 계획의 구성체계	21
3) 계획의 추진체계	27
2. 실천과제의 유형화	30

제4장 정책평가 및 성과관리의 이론적 검토35

- 1. 정책평가 및 성과관리 관련 법제도 검토35
 - 1) 정부업무평가기본법35
 - 2) 국가재정법41
 - 3)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46
- 2. 주요 평가 및 성과관리제도 운용현황 및 체계48
 - 1) 공공부문의 주요 평가제도 현황48
 - 2)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제도55
 - 3)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65
- 3. 해외 주요국의 정책평가 및 성과관리제도 운용 현황67
 - 1) 미국의 정책평가 및 성과관리 제도67
 - 2) 영국의 정책평가 및 성과관리 제도69
 - 3) 일본의 정책평가 및 성과관리 제도71
- 4. 요약 및 시사점72

제5장 국내 법정계획의 성과관리 체계75

- 1. 국내 법정 기본계획의 성과관리 현황75
- 2. 법정계획의 성과관리 운영 사례 조사분석79
 - 1) 국토종합계획의 실천계획 추진실적 평가79
 - 2)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 성과관리87
 - 3) 여성정책기본계획 이행상황 점검94
 - 4)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101
- 3. 기존 법정계획의 성과관리 체계 종합 분석106

제6장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방향109

- 1. 성과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기본방향109
- 2. 기본계획 단계별 성과관리 방향112
- 3. 실행계획의 성과관리 방향 설정117

1) 성과관리의 성격과 기능	117
2) 성과관리 체계 및 참여주체별 역할	118
3) 성과측정 방법 및 항목 설정 방향	122
4) 성과측정 및 분석을 위한 성과관리 평가위원회 구성 방향	125

제7장 결론127

참고문헌	131
SUMMARY	133
부록1. 재정사업자율평가지표	139
부록2. 건축정책기본계획 실천과제별 실행계획 추진실적서 작성양식(예시)	141

표 차례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6
[표 3-1] 건축기본법에서 명시된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18
[표 3-2] 건축기본법의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용어정의	18
[표 3-3] 건축정책기본계획 정책목표 부문별 추진전략과 실천과제	25
[표 3-4] 건축정책기본계획 실천과제별 담당부처	29
[표 3-5] 건축정책기본계획 실천과제 유형별 분류	33
[표 4-1]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평가업무 유형	37
[표 4-2]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및 평가시행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39
[표 4-3] 정부업무평가의 평가구분 및 내용	40
[표 4-4] 자체평가 및 특정평가 대상	40
[표 4-5] 자체평가계획 및 특정평가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40
[표 4-6]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포함되는 사항	42
[표 4-7] 정부 성과관리와 감사원의 역할	44
[표 4-8] 연구개발성과평가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46
[표 4-9] 성과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47
[표 4-10]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성과평가관리의 구분 및 대상	47
[표 4-11] 공공부문 주요 평가제도 현황	48
[표 4-12] 통합평가체계하의 중앙행정기관 평가	49
[표 4-13]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	50
[표 4-14]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	52
[표 4-15]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현황	54
[표 4-16] 중앙행정기관평가 개요	58
[표 4-17] 자체평가 대상	60
[표 4-18] 특정평가 대상	62

[표 4-19] 자율평가 절차	65
[표 4-20] 재정사업자율평가 평가항목 구성	66
[표 4-21] PART에서의 평가영역 및 평가영역별 질문(평가기준)	69
[표 4-22] 일본 정책평가의 일반적인 5개 기준	71
[표 5-1] 기본법에 근거한 법정 기본계획 현황	76
[표 5-2] 법정 기본계획과 평가제도 현황	78
[표 5-3] 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 추진실적 평가 개요	80
[표 5-4] 2006년 실천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항목	84
[표 5-5] 이행계획의 내용 구성	87
[표 5-6]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 성과관리 평가 개요	89
[표 5-7] 이행계획 세부과제별 성과지표	91
[표 5-8] 77개 국가지속가능성 지표(SDI,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	92
[표 5-9] 여성정책기본계획 이행상황 점검 개요	94
[표 5-10] 여성정책기본계획의 구성 및 과제	95
[표 5-11] 여성정책기본계획 Part I 이행점검표 작성항목	97
[표 5-12] 여성정책기본계획 Part II 이행점검표 작성항목	99
[표 5-13] Part III 이행점검표 작성항목	100
[표 5-14]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개요	101
[표 5-15] 제1차 기본계획의 구성 및 내용	103
[표 5-16] 여성가족부의 시행계획 성과지표(예시)	105
[표 5-17]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시행계획 성과지표(예시)	105
[표 5-18] 법정 기본계획의 성과관리 종합표	108
[표 6-1] 실행계획 부합성 점검항목(예시)	123
[표 6-2] 실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항목(예시)	124

그림 차례

[그림 1-1] 과업수행 흐름도	8
[그림 2-1] 사업서비스업과 제조업과의 관계	10
[그림 2-2]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협력체계도	12
[그림 3-1]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위상 및 역할	20
[그림 3-2] 건축기본법의 구성체계	22
[그림 3-3] 건축정책기본계획의 구성 체계	23
[그림 3-4]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별 추진전략	24
[그림 3-5]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추진체계	28
[그림 3-6]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집행·평가 체계	28
[그림 4-1]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구성체계	37
[그림 4-2] 관련제도 운영체계	38
[그림 4-3] 자체평가 절차	41
[그림 4-4] 국가재정법의 구성체계	42
[그림 4-5]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절차	43
[그림 4-6] 재정사업의 성과관리평가 업무 흐름도	43
[그림 4-7] 예산조성 및 기금조성 체계	45
[그림 4-8] 관련제도 운용체계	46
[그림 4-9] 정부업무평가 운영 체계	56
[그림 4-10] 정부업무평가 시행체계	57
[그림 4-11] 자율평가 추진 체계도	66
[그림 5-1] 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 평가체계	81
[그림 5-2] 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 평가주체별 역할	82
[그림 5-3] 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 평가절차	83
[그림 5-4]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 성과관리 구성체계	88

[그림 6-1] 건축정책기본계획 성과관리 로드맵	115
[그림 6-2] 건축정책기본계획 성과관리 환류체계	119
[그림 6-3] 건축정책기본계획 성과관리 참여주체별 역할 및 기능	120
[그림 6-4] 건축정책기본계획 성과관리 세부절차	121

제1장 서론

1. 연구의 개요
2.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3. 과업 수행방법

1.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우리의 건축과 도시환경은 세계10위권의 경제수준에 비해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특히 '품격이 낮은 건축물'의 난립과 이로 인한 '주변공간과의 부조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한 건축도시 관련사업에 대해서도 지역간 불균형이나 부처별 유사사업의 중복, 관련계획이나 디자인에 대한 목표의식의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가차원의 건축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건축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7년 12월에는 건축기본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건축의 이념과 공공적 가치를 추구하는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구축되었다. 매 5년마다 수립하는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건축도시분야의 공공성 구현과 건축도시 관련산업의 경쟁력 강화, 창조적 건축문화 기반 확충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도시분야의 최상위 국가종합계획이다.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는 2010년 시행을 목표로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도 광역건축기본계획과 기초건축기본계획으로 이어지는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성격>

- ▶ 건축기본법에 의거하여 5년 단위로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해야 하는 법정계획
- ▶ 시·도별 광역건축기본계획 및 시·군·구별 기초건축기본계획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건축분야 최상위 기본계획
- ▶ 대통령령으로 구성되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의 건축정책의 심의·조정, 시책을 종합하고 체계화하는 범부처적인 실천계획
- ▶ 기존의 지방자치단체별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건축관련 사업에 대해 체계적인 예산운영과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계획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시행이 이루어지는데 건축기본법 제15조¹⁾에서는 이러한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매 2년마다 국회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건축도시 관련분야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계획으로 각 실천과제별로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가 도출되어야 하는데 그 범위가 매우 넓고, 또한 최초로 수립되는 계획으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사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건축정책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실천과제들은 대부분 여러 부처가 연계하여 추진하는 형태로 부처별 역할분담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본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부처의 자발적인

1) 건축기본법 제15조 :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건축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년마다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시행의 전 과정에서 부처간 이견조정과 정책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검토가 시급하다.

다른 한편으로,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건축과·도시분야에 관련된 제도개선 및 예산사업에 대한 법정계획으로써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에서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관리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성과관리의 목적〉

- ▶건축정책기본계획 실천과제별 성과관리와 이에 대한 환류체계 구축
 - 실천과제별 성과지표(목표)와 산출결과 평가를 통해 성과도출 및 과제조정의 환류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향후 계획수립 및 수정 등 정책방향의 제시
 -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협력체계 구축
 - 건축정책기본계획은 지자체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원활한 관련 사업진행의 기반 제공, 시범사업 공간제공 유도 등의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성과관리 필요
 - ▶범부처간 전략 및 추진과제의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
 - 건축정책기본계획 실천과제는 대부분 여러 부처와 연계되어 과제별 역할 분담체계를 가지므로 성과관리를 통해 부처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시행의 전 과정에서 부처간 이견조정·정책갈등 해소를 위한 모니터링이 필요
-

본 연구는 2010년 시행을 목표로 수립중인 ‘건축정책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성과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로 우선 법정 기본계획의 성과관리를 위한 관련제도 및 건축정책기본계획과 유사한 건축·도시관련 기본계획의 성과관리 체계를 조사분석하여 성과관리에 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건축정책기본계획의 구성체계 및 추진체계를 분석하여 실천과제별로 효율적인 성과관리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건축정책별로 구체적인 성과관리 방안과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전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것도 본 연구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성과관리체계, 실천과제별 평가지표 개발 및 성과관리를 위한 조사항목 설정, 건축정책 평가보고서 작성지침 개발 등 광범위한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최종적으로 건축정책의 체계적인 성과평가를 위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참조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목표인데 이것은 국민의 부담으로 운영되는 국가재정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새롭게 수립·시행되는 건축정책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3) 연구의 범위

□ 내용적 범위

건축정책기본계획은 정부에서 수립하고 시행하는 법정 기본계획으로서 성과관리와 관련된 현행 법·제도를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적용되어야 하는 사항을 살펴보고 건축정책기본계획과 유사한 법정 기본계획의 성과관리 체계를 조사·분석한다.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성과관리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2010년에 시행될 예정인 건축정책기본계획(안)의 구성체계와 추진체계, 각 실천과제의 성격별 유형을 구분하여 과제별로 특화된 성과관리 방식을 구상한다. 나아가서는 향후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수립될 지역건축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전체적인 기본계획의 성과관리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 시간적 범위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국토해양부에서 5년 주기로 수립·시행하는 법정계획으로서 2009년 12월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0년부터 본격

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따라서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시행될 제 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시간적 범위로 하여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 선행연구 현황

법정계획의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대표적인 선행연구로는 국토연구원에서 국토종합계획의 성과평가를 위한 시행한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지표 설정과 활용에 관한 연구(이용우, 2007)”와 건설교통부의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전략(2002)”, “재정사업 자율평가 체계구축 연구(2005)”, 국무조정실의 “성과지표 개발관리 매뉴얼(2006)”, 그리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영근의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지수화 연구(2003)”, 한국교통연구원·국토연구원·건설교통부가 협동으로 수행한 “정책목표 연계형 성과지표 및 평가체계 개발(2006)” 등이 있다.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정책과제 및 사업에 대한 평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과 『국가재정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으로 다수의 연구보고서 및 성과보고서가 있으나 2010년에 시행예정인 건축정책기본계획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평가체계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지표 설정과 활용에 관한 연구 •연구자(년도) : 이용우 (2007) •연구목적 :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지표를 설정하고, 이의 활용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행연구 등 문헌조사 •UN, OECD, 영국, 독일 등 해외사례연구 •전문가 및 국민 의견수렴 : 전문가 설문, 인터넷 이용한 국민 설문, 공청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유시지표 사례연구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지표 설정모형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지표(안) 설정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지표(안) 산정 및 목표치 설정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재정사업 자율평가 체계구축 연구 •연구자(년도) : 김성일, 국토연구원(2005) •연구목적 :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대상사업 선정,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을 검토하여 실질적인 건설교통부문 재정사업의 자율평가 체계를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행연구 검토 •국내외 사례조사 및 국토해양부 내부 사업점검 자료 및 추진자료, 성과계획서 등 조사분석 •연구협의회를 통한 의견수렴 •담당자 면담조사 및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의 개요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및 성과지표의 적용현황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 운영의 개선방안 및 성과지표 개선방안 제시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정책목표 연계형 성과지표 및 평가체계 개발 •연구자(년도) : 김성일 외 (2007) •연구목적 : 건설교통부문의 재정과 성과를 연계하는 성과지향형 예산체계 구축을 위한 성과지표 및 성과평가방안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연구원과 한국교통연구원이 공동으로 문헌조사, 면담조사, 실증분석을 수행 •각종 국내외 문헌자료 분석, 연구협의회 구성 운영, 관계자 면담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목표 연계형 성과평가제도의 개요 •국내외 정책목표 연계형 성과관리제도 사례 •정책목표 연계형 성과지표 개발 및 정책 프로그램별 성과지표 설명 •정책목표 연계형 성과평가체계의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지역건축기본계획은 정책부문별 제도개선, 재정예산사업, 연구개발 등 다양한 추진방법으로 시행 •건축정책의 성공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부문별·부처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지표 개발을 목적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 및 인터넷을 통한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 조사 •성과평가와 관련된 정부부처 담당자와의 인터뷰 •전문가 및 국민 설문조사를 통한 지표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법령에 근거하여 정부에서 수립·시행하고 있는 법정계획의 성과평가체계의 조사분석 •해외주요국의 건축정책 추진체계 및 평가체계 조사분석 •건축정책 부문별·부처별·지역별 평가방법 및 추진체계 설정 •건축정책의 평가기준 및 지표 개발 •성과평가를 위한 조사항목 설정 및 건축정책의 기본방향 및 관리체계 구축 	

3. 과업 수행방법

□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대한 분석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건축·도시분야의 정책과 사업을 함께 다루는 복합적인 성격의 계획으로 타 기본계획에 비해서는 실천과제별 성격과 적용범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각 실천과제별로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과제를 유형화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추진주체별’, ‘과제의 성격’, ‘과제별 추진기간’, ‘성과지표 도출가능 유무’ 등 4가지 측면으로 과제의 유형을 구분하고, 이에 따른 유형별 성과관리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 국내외 성과관리와 관련된 선행연구 및 문헌자료 조사·분석

정부의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정책평가와 성과관리를 시행하는 근거가 되는 관련 법률로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국가재정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있는데 이러한 법률에 관한 분석과 함께 관련된 주요 제도운용 현황과 주요 제도별 구성 및 추진체계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한다.

또한 법령에 근거하여 정부에서 수립·시행하고 있는 법정계획의 성과관리체계를 조사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처별로 운용하고 있는 기본법은 48개에 달하며, 기본법에 의한 관련계획 44개와 관련계획을 지원하는 실천계획 49개, 일반 법률에 의해 수립되는 법정계획 33개가 수립·시행 중에 있다. 이 가운데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성과평가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성격이 유사한 정책(전략)계획들을 대상으로 성과지표 및 평가방법, 평가지표 등 구체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조사하고 분석한다.

□ 성과관리 관련 선행연구자들의 의견청취

건축정책기본계획과 유사한 법정계획의 성과관리 관련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과 국가의 정책평가를 주로 담당하는 전문연구기관인 행정연구원의 관련 전문가와의 인터뷰와 자문회의를 통해 연구범위 및 진행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 과업수행 흐름도



[그림 1-1] 과업수행 흐름도

제2장 건축정책기본계획 성과관리의 필요성

1. 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 및 효과의 극대화
2. 성과관리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의 증대
3. 성과관리 환류체계를 통한 계획의 지속성 확보

1. 계획의 실효성 확보 및 효과의 극대화

□ 건축도시분야의 효율적인 정부예산 관리체계 구축

그 동안 우리나라는 국토환경을 관리하는 각 부처별, 지자체별로 산발적인 건축도시 관련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별 불균형을 초래하기도 하였으며, 부처별 유사사업의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예산운용과 관련계획이나 디자인에 대한 목표의식의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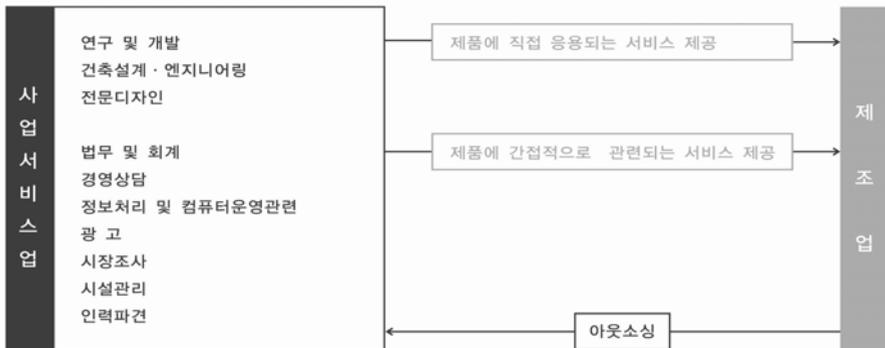
건축정책기본계획은 2007년 12월에 제정된 건축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되며 건축도시분야의 범정부적 정책과 사업방향을 제시하는 법정 기본계획으로서 부처별, 지자체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어온 건축도시 관련정책과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건축을 예로 들면, 건축도시전반을 다루는 국토해양부를 시작으로 교육시설은 교육과학기술부, 정부청사는 행정안전부, 문화전사·공연·체육시설은 문화체육관광부, 재외공관은 외교통상부, 병영시설은 국방부 등 대부분의 정부부처가 관련되어 있으며, 지역의 공공건축에 대한 실질적인 건설·유지·관리는 지자체가 담당하는

2) 김상호, “질적특성을 고려한 건축도시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 p.16.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 정책 및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시행과 함께 경쟁적으로 추진되어 온 대규모 청사의 건립이나 지역의 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무분별한 전시·컨벤션시설의 건설 등도 지역간 불균형 또는 중복투자의 문제와 함께 부처간 예산의 분리와 칸막이식 예산집행에 따른 통합 사업추진의 어려움 등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공공부문의 건축정책 및 사업을 전략적 계획을 통해 관리하고자 하는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국토전반의 공간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으로서 과제에 투입되는 실질적인 정부비용도 대규모이겠지만 계획에서 다루는 건축·도시 관련정책 및 사업이 타산업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데 그 중요성이 있다.

건축설계·엔지니어링산업이 포함된 사업서비스업은 서비스 아웃소싱을 통해 타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다.³⁾ 예를 들어 건축정책기본계획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이 정비되고,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물의 확산을 통해 국가전체의 건축물 에너지소비가 감소된다면 정부예산의 효율화에 기여하는 바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출 처: 사업서비스업의 현황 및 발전방향 (2007.4, 한국은행 조사국 산업지역팀, p1)

[그림 2-1] 사업서비스업과 제조업과의 관계

3) 하봉찬,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정체 현상과 시사점, KIET 산업경제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건축도시분야 중 공공부문, 특히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여 정부차원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공건축물은 국가자산으로서 그 가치를 환산하면 27조 1,426억원(2005년 기준)⁴⁾에 달한다. 따라서 국가의 중요한 자산을 형성하고 정부의 예산집행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의 특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협력체계 강화

건축기본법에서는 국가차원의 건축정책기본계획과 함께 지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명시하고 있는데 광역시·도 차원에서 수립하는 광역건축기본계획은 의무 수립대상이며 시·군·구에서 수립하는 기초건축기본계획은 필요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처럼 건축정책기본계획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연계 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정책의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1940년대 전후(戰後) 도시 재건을 위해 지역별 개발계획과 공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 지역간의 극심한 경제격차와 불균형이 발생하여 1965년도에는 최초로 국가차원의 전략계획 수립을 시도하였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통합된 계획수립 메커니즘이 갖추어지지 못하고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초기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 채 실패하고 말았는데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계획의 성공에 핵심적인 요소임을 알 수 있다.⁵⁾

우리나라에서도 각 지자체별로 각종 건축·도시 관련정책 및 사업이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행정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범부처·범지역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이러한 정책방향을 담은 건축정책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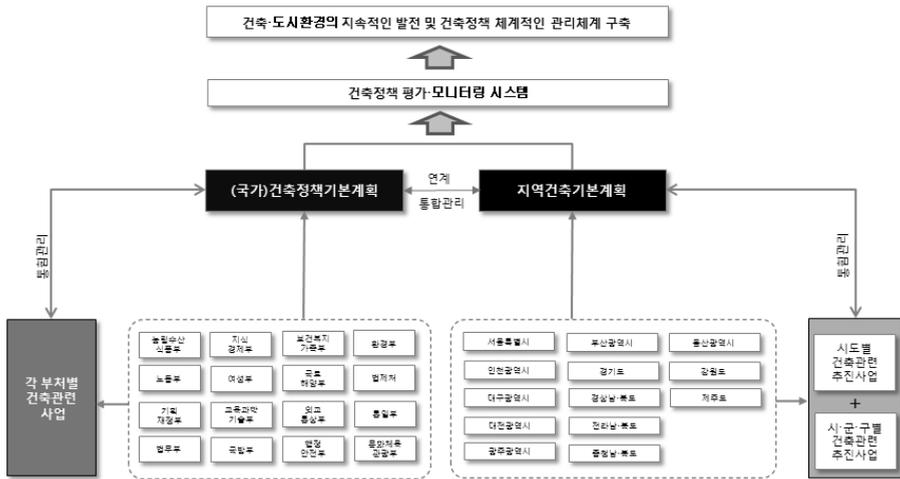
4) 기획재정부 “회계연도 국유재산 결산결과”, 2005년 기준.

5) Peter Hall, "Evolution of strategic planning and regional development, p.24.

자체간의 역할 분담 등 협력적인 성과관리 체계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국가차원에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립되는 지역건축기본계획은 실질적으로 건축물과 공간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및 사업계획을 포함하기 때문에 건축정책기본계획 추진과제별 성과지표는 지자체 차원의 지역건축기본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건축정책기본계획이 지니는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축도시분야의 관련정책과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성과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림 2-2]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협력체계도

2. 성과관리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의 증대

성과관리 예산제도(Performance Budgeting) 또는 성과관리(Performance Management)가 OECD 국가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확대 도입되고 있는 실정인데⁶⁾ 캐나다에서는 모든 정부 지출에 관한 사항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기 위해 사전 재정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신규 예산사업 신청시에는 예산사업의 성과정보, 기존 프로그램 예산구조와의 정합성,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사업평가 중심의 성과관리에서 전략적 검토(strategic review)방식으로 성과점검의 체계가 바뀌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에서는 1997년부터 시행된 정부성과평가법(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 Act_GPRA)에 근거하여 각 부처가 성과관리 차원에서 제출하는 전략계획서, 연간성과계획서, 연간 성과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1998년 성과관리에 의한 재정지출 운용을 중요한 예산제도의 틀로 구축하여 3단 주기의 소요비용 검토(spending review)를 중심으로 부처별 결과중심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성과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국제적인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중국과 브라질에서도 이미 도입되었으며, 개발도상국 중에서 남미의 칠레,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도입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2002년 사이에 성과관리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성과정보를 생산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2003년부터는 주요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성과계획서를 도입하고, 2005년부터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성과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⁷⁾

6) 한국조세연구원 성과관리센터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국제비교”, 2008.

7) 이러한 결과 중심의 성과관리를 추진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재정상황의 악화에 따라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위기의식에서부터 시작되었음

3. 성과관리 환류체계를 통한 계획의 지속성 확보

지난 2007년 12월에 건축기본법이 제정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기본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는데 기존에 운용되고 있는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체계 및 최근 경관법에 의한 경관기본계획 등과의 관계에 대해 건축·도시관련 전문가들조차도 계획간의 위계와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건축정책기본계획의 궁극적인 목적 달성과 함께 건축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에 합당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성과관리 체계 마련과 계획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리역량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본계획의 실천과제별 수행과정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계획이 지닌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차기 계획에 환류함으로써 제2차, 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에는 1차 계획의 성과결과를 반영하여 전략계획으로서 갖추어야 할 실효성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성과관리 과정에서의 학습 및 지식 축적을 통해 계획 수립 및 추진주체의 역량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성과관리방법 및 절차, 활용방안 등 성과관리체계도 건축정책과 함께 지속적으로 개선·개발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성과결과가 정부예산배분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궁극적으로 목표했던 전략계획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정부정책 평가관련 법·제도와 연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건축정책을 수립하고 준비하는 건축·도시분야에서도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성과관리방식을 강구하고 전략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용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 및 사업관련 성과관리는 정책평가 관련 법·제도에 준용하여 수행되는 것 외에도 개별 부처 및 지자체,

그리고 사업별로 단편적이고 일시적으로 운용되는 경우⁸⁾가 많아 정부차원에서 이에 대해 꾸준히 법·제도를 개선·개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정책관련 성과관리체계도 이에 발맞추지 못한다면 단일 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성과점검으로 전략할 우려도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성과관리에 관한 첫번째 연구로서 완전무결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실천과제별 성격을 유형화하고, 현재 운용되고 있는 정부정책관련 법·제도와 유사기본계획의 성과관리 체계를 검토하여 향후 마련해야 할 성과관리 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8) 평가제도 운영 실태조사 결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총 170개 평가제도가 운영중이며 이중 110개는 개별 법률 및 대통령령에 직접 근거하거나 관련 규정을 유추 적용하고 있으며, 부령·훈령은 6개, 관련대책·지침·규정 등에 근거한 평가는 14개로 나타난 반면, 40개는 아무런 근거없이 운영되고 있음(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제도 조사 및 정비방안)

제3장 건축정책기본계획 분석

1. 계획의 성격 및 구성체계
2. 실천과제의 유형화

1. 계획의 성격 및 구성체계

1) 계획의 개요

□ 계획의 성격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건축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국가계획(National Plan)으로서 건축도시분야의 시대적 변화를 선도하고 국내외 흐름을 포괄하여 건축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광역과 기초계획 및 부문별 실행계획의 근간이 된다. 또한 건축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실용적 전략계획(Strategic Plan)으로서 한국사회에 파급효과가 큰 건축정책의 주요 핵심사항에 초점을 맞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계획이다. 나아가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민·관 협력계획(Collaborative Plan)으로서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한다.

□ 계획의 범위

시간적 범위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주기의 계획으로 수립되며, 내용적 범위는 건축기본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다음의 항목별로 범정부 차원의 실천방향을 제시한다. 공간적 범위는 국토 전영역에 해당되며, 건축기본법상의 적용대상인 건축물과 공간환경으로서 개별건축물과 그 주변의 공간구조 및 경관까지 포괄하고 있다.⁹⁾

[표 3-1] 건축기본법에서 명시된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건축기본법 제11조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건축의 품격 및 품질 향상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 •지역의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대책 •우수한 설계기법 및 첨단건축물 등 연구개발 •건축분야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방안 •건축디자인 등 건축의 국제경쟁력 향상 •건축문화 기반구축 •건축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및 선도시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에 대한 건축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우수한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 •국토·도시·건축 기록자료 구축에 관한 사항 •주민지원기구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표 3-2] 건축기본법의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용어정의

구 분	공간적 범위
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건축기본법 제3조 제1항)
공간환경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 공공공간 및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구조: 공간을 이루는 방식(배치, 구성 등) •공공공간: 공공이 소유한 공간, 시설물(가로, 공원, 광장, 고가도로 등) •경관: 공간전반의 모습, 이미지(자연, 인공요소, 주민의 생활상 등) (건축기본법 제3조 제2항)

9) 건축기본법 제3조에서는 건축물과 공간환경에 대한 용어정의를 되어 있으며, 제7조, 제8조, 제9조에서는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취지인 기본이념으로 건축물과 공간환경에 대한 공공성 구현을 명시하고 있음

□ 계획의 역할¹⁰⁾ 및 위상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취지와 계획을 통해 기대하는 역할은 크게 건축·도시 분야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국토환경디자인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건축문화를 진흥시키고 국가의 품격을 향상하고자 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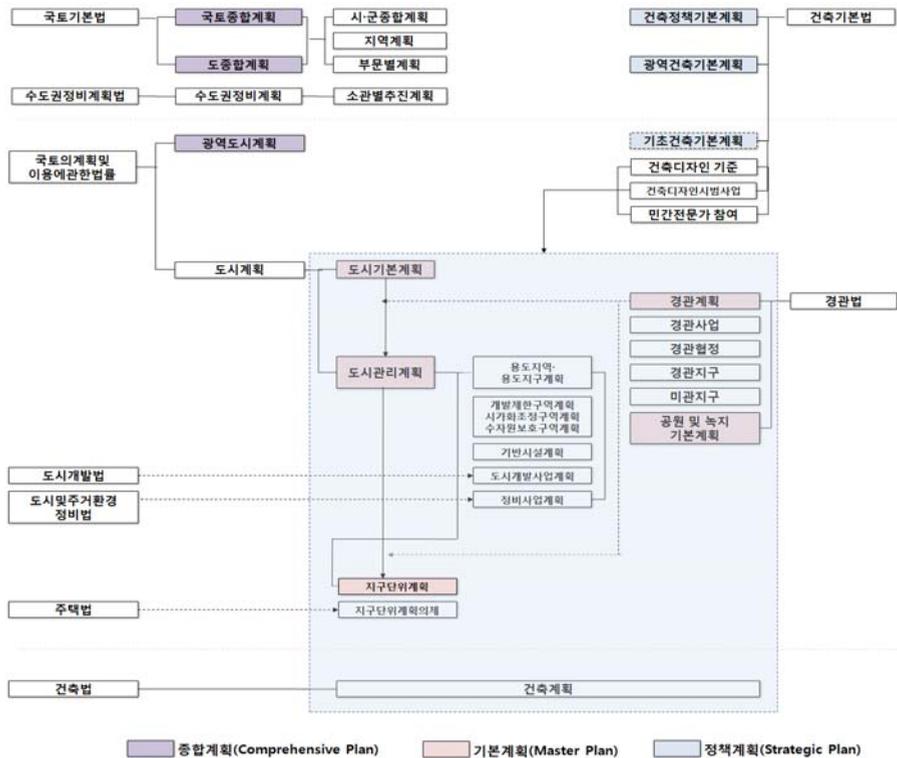
구체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건축, 도시)디자인 정착』을 위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전략적 정책수단으로, 현재의 국가경쟁력 확보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 남겨줄 문화적 자산을 확충보호하여 문화적 정체성을 지니고 지속적인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건축정책은 전 국토의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대상으로 하여 지금까지 개발과 관리의 대상으로만 인식되어 온 국토환경에 대해 디자인의 개념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새로운 정책 분야이다. 잘 디자인된 건축물과 공간환경은 도시의 이미지를 결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하에 건축정책기본계획에서는 공공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중심으로 좋은 디자인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며, 이를 통해 도시와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선도적인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존의 도시계획체계 속에서 건축정책기본계획이 가지는 위계 및 위상을 도식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기존의 건축·도시 관련 계획들에 있어서 전략적 측면에서 정책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의 기존의 건축·도시 관련 계획들이 공간에 대한 물리적 계획이라면 건축정책기본계획에서 다루는 정책 및 사업은 제도개선, 국책사업, 연구과제, 시범사업 등의 형태로 통합적인 전략계획의 성격을 지닌다.

10) 김상호, “질적특성을 고려한 건축·도시공간정책의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의 요약 내용 발췌

따라서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정책 및 사업은 기존의 물리적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도시 관련계획에서 시행할 사업들의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과 동시에 세부적인 지침을 제시하여 전략적 접근을 모색한다는 점이 차이점이라 할 것이다.



[그림 3-1]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위상 및 역할

□ 추진경위

건축·도시의 환경개선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07년 12월 건축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2008년부터 전문가 TF팀을 구성하고, 세부과제 도출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인식조사, 동향조사, 공청회 개최 등을 진행해 왔다. 2010년에 본격

적인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준비 중에 있다.

추진단계	추진기간	세부내용
법 제정 단계	'07.12	건축기본법 제정
	'08. 6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정
계획수립 단계	'08. 8~12	전문가 TF 구성 및 운영
	'08.10	대국민 인식조사 및 건축산업 동향 조사
	'08.11	국제심포지엄 및 토론회
	'09. 1	소관별 관련시책 및 사업 조사
	'09. 1~5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자문 및 워크숍
	'09.11	부처협의 및 의견수렴
	'09.11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심의·조정 단계	'09.12(예정)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 및 대통령 보고
	'09.12(예정)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 시행 공고

2) 계획의 구성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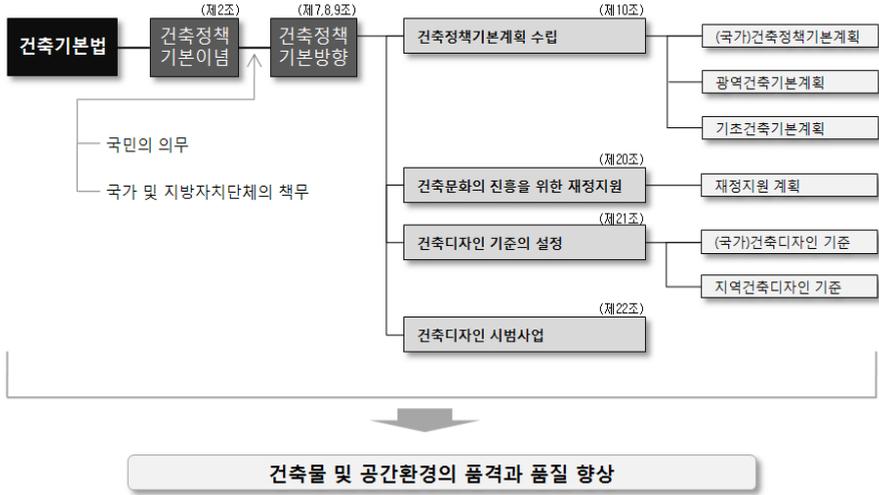
□ 근거법인 건축기본법의 구성체계

건축의 공공성 실현을 목적으로 제정된 건축기본법은 총 5장, 2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은 건축정책의 기본이념과 용어정의 등, 2장은 건축정책의 기본방향, 3장은 건축정책의 수립, 4장은 건축정책위원회, 5장은 건축문화 진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계획의 공간적, 내용적 범주와 수립주체에 따라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 (지역)건축기본계획으로 구분하여 위계 및 각각의 역할을 설정하고 있다.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은 국가 전체의 건축물 및 공간환경에 대하여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건축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기본계획 내용을 포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지역)건축기본계획은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에 부합하고, 각 지역의 건축적 특화를 위해 그 지역의 현황 및 사회·경제·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수립주체, 공간적 범위에 따라 광역건축기본계획¹¹⁾과 기초건축기본계획¹²⁾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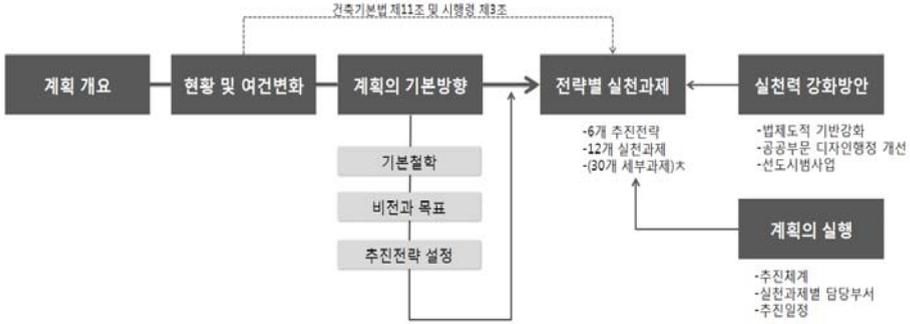


[그림 3-2] 건축기본법의 구성체계

□ 건축정책기본계획의 구성체계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건축도시분야의 법·제도, 산업, 교육·연구 등과 관련된 현황과 여건에 맞는 건축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추진전략과 실천과제, 세부과제를 선정하고 있다. 또한 실천력 강화방안은 전략별 실천과제들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전략으로 선도시범사업, 제도적 기반 강화, 디자인행정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세부과제의 실행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11) 광역건축기본계획 : 건축기본법 제12조 제1항, 시도지사가 사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
 12) 기초건축기본계획 :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광역건축기본계획에 따라 시·군·구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



[그림 3-3] 건축정책기본계획의 구성 체계

□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현재까지 정리된 건축정책기본계획(안)은 ‘지속가능한 건축, 품격있는 국토환경’을 비전으로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정책목표와 6개 추진전략, 12개 실천과제, 그리고 38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3대 정책목표는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 ‘건축·도시분야 녹색성장 기반구축’, ‘창조적 건축문화 실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정책목표인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은 개별 건축물의 품격과 품질을 높임과 동시에 통합적인 관점에서 건축물·도시환경·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며 관련 추진전략은 ‘국토환경 디자인 강화’, ‘건축·도시 디자인 수준 향상’으로, 지역의 경관과 국토기간시설의 디자인 향상, 공공건축물·시설물과 일상생활환경 디자인 개선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두 번째 정책목표인 ‘건축·도시분야 녹색성장 기반구축’은 녹색 건축·도시환경 조성으로 저탄고 녹색성장 기조에 부응하고, 건축·도시산업을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며 관련 추진전략으로는 ‘녹색 건축·도시 구현’과 ‘건축·도시 산업의 고도화’로, 탄소저감형 건축·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마련과 관련 기술 및 에너지 관리체계를 구축, 건축설계·엔지니어링 분야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반 강화와 전문인력 육성·교육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번째 정책목표인 ‘창조적 건축문화 실현’은 우리

고유의 건축문화자산의 보전과 창조적 발전을 통해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글로벌 경쟁 시대에 국제 교류와 협력을 선도하고자 하며 관련 추진전략은 고유한 건축문화 창달과 건축문화의 역량강화 및 국제협력 증진으로, 한옥 등의 건축문화자산의 창조적 활용과 재생을 통한 대중화·활성화 도모와 건축관련 기준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선진화하여 국제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천력강화전략은 앞선 12개 실천과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선도시범사업 시행, 제도적 기반 강화, 디자인행정프로세스 개선의 3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그림 3-4]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별 추진전략

- 정책목표 부문별 추진전략과 실천과제

[표 3-3] 건축정책기본계획 정책목표 부문별 추진전략과 실천과제

추진전략	실천과제 / 세부과제
정책목표 1.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	
1. 국토환경 디자인 강화	1) 지역이미지 향상을 위한 경관 형성·관리 - 수변·연안 개발, 산업·관광단지 조성 등 지역개발사업의 디자인 제고 - 품격높은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건축·도시 통합디자인 도입 - 농어촌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루도록 경관형성 및 관리체계 강화
	2) 국토기간시설 디자인 제고 -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대표적 건축물로서 철도 건축물 디자인 향상 - 항만 경관디자인 개선 및 랜드마크 시설 도입 - 성장시대의 단순한 이동통로 기능을 위한 도로에서 휴식, 조망,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경관도로로 전환
2. 건축·도시 디자인 수준 향상	1) 공공건축물·시설물 디자인 품질 제고 - 공공건축물·시설물 설계과정 개선 - 공공건축물·시설물에 대하여 디자인 가치를 중시하는 발주방식 장려 -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디자인 개선 추진
	2) 일상생활환경 디자인 개선 추진 - 지역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시설의 디자인 개선 및 다양화 - 일상생활과 밀접한 가로, 광장, 건축물,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통합 디자인 활성화 - 주민참여 방식의 지역가꾸기사업 활성화
정책목표 2. 건축·도시분야 녹색성장 기반구축	
3. 녹색 건축·도시 구현	1) 탄소저감형 건축·도시환경 조성 - 에너지 고효율화를 위한 녹색건축물 보급·확대 - 탄소저감을 위한 녹색도시 조성 기반 마련
	2) 녹색 건축·도시 조성 기술 및 에너지 관리체계 마련 - 저탄소 저에너지 건축·도시 관련기술 개발 촉진 - 건축·도시분야 효율적 에너지 관리체계 마련 - 건축관련 친환경 저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4. 건축·도시 산업의 고도화	1) 건축설계·엔지니어링 분야 육성 및 진흥 - 건축·도시 관련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공유체계 구축 - 건축·도시분야 연구기반 강화
	2) 건축·도시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 강화 - 건축·도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 공공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 -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건축 교육과정 확충 및 건축사 전문성 제고

정책목표 3. 창조적 건축문화 실현

<p>5. 고유한 건축문화 창달</p>	<p>1) 건축문화자산의 창조적 활용·발전 - 한옥의 산업화 및 대중화 추진 - 건축문화자산에 대한 관심 고취와 실용적 재생·활용 - 건축문화 관련 기록물의 축적 및 관리시스템 구축</p> <p>2) 일상생활에서의 건축문화 향유기회 확대 -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건축문화 행사 다각화 및 내실화 추진 - 건축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창조역량 강화를 위하여 건축 기초 교육 활성화 도모</p>
<p>6. 건축문화의 역량강화 및 국제협력 증진</p>	<p>1) 건축관련기준 글로벌 스탠더드화 - 안정성과 사용성 향상을 위해 성능중심으로 건축관련 기준을 합리적 개선 추진 - 건축 관련 설계도서 작성기준 및 계약 등의 선진화</p> <p>2) 건축·도시분야 국제 교류·협력 강화 - 국내 신도시건설 경험 전략 상품화 및 해외 진출 추진 - 국내 건축문화와 건축가에 대한 해외 교류 강화</p>

실행력 강화전략

<p>실행력 강화전략</p>	<p>1) 선도시범사업 추진 - 건축·도시 통합디자인 시범사업 - 한옥 활성화 시범사업 - 건축문화자산 보전·활용 시범사업 - 공공건축·시설물 디자인 개선 시범사업</p>
<p>실행력 강화전략</p>	<p>2) 제도적 기반강화 - 품격있는 건축·도시화경 조성을 위한 각종 법·제도 정비 - 각종 심의 및 평가제도 개선</p>
<p>실행력 강화전략</p>	<p>3) 디자인행정 프로세스 개선 - 중앙정부의 설계관련 업무체계 개선 - 지자체의 건축·도시 디자인행정 쇄신</p>

3) 계획의 추진체계

□ 집행전략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추진현황과 주요성과는 2년마다 국회에 보고하도록 건축기본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부처별로 수립하는 연차별 실행계획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여야 하며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이 종료되는 시점(2014년)에서는 기본계획의 최종성과를 도출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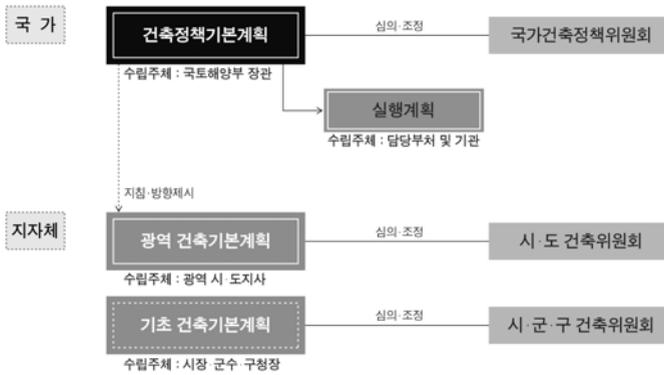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계획 집행을 위해서 매년 관련부처 및 기관에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국토해양부 장관은 매년 말 계획 집행을 현황 및 성과를 평가하고 실행계획의 현황과 전차년도 추진실적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한다. 이것은 성과결과의 환류와 함께 대국민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기본계획의 추진전략별 실천과제 수행에 수반되는 예산은 관련 사업계획 등과 연계하여 확보하도록 하며, 차기년도 예산은 담당부처별로 전년도에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 추진체계 및 주체별 역할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추진은 국가차원과 지자체차원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국가차원에서는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한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디자인 행정프로세스 개선 등 계획 실행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관련 산업 지원, 선도시범사업을 기획·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에 목표와 전략에 따라 지역의 상황이나 특수성을 반영하여 각종 관련계획과 연계한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게 된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기관은 실천과제에 따라 연차별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소요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광역 시·도지사는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광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광역건축정책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이에 대한 심의·조정 역할을 맡도록 한다. 기초단위의 시·군·구의 장은 법적으로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필요한 경우에 기초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한 시·군·구 건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림 3-5]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추진체계



[그림 3-6]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집행·평가 체계

□ 실천과제별 담당부처

기본계획에서는 각 실천과제별로 주관부처와 협조부처의 범위를 설정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아래 표와 같이 대다수 실천과제는 주관부처로 국토해양부가 지정되어 있고, 일부 과제의 성격에 따라 농림부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른 부처가 공동주관으로 설정된 경우가 있다.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로 설정된 실천력 강화전략으로는 선도시범사업의 추진, 제도적 기반강화, 디자인행정프로세스 개선과 관련된 과제들을 국토해양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체제이다.

[표 3-4] 건축정책기본계획 실천과제별 담당부처

추진전략	실 천 과 제	주관부처	협조부처
1.국토환경 디자인 강화	1) 지역 이미지 향상을 위한 경관 형성·관리	국토부 농림부	전부처
	2) 국토기간시설 디자인 제고	국토부	-
2.건축·도시 디자인 수준 향상	1) 공공건축물·시설물 디자인 품질 제고	국토부	전부처
	2) 일상생활환경 디자인 개선 추진	국토부	행안부, 농림부 환경부, 산림청
3.녹색 건축·도시 구현	1) 탄소저감형 건축·도시환경 조성	국토부	행안부, 농림부 지경부, 환경부
	2) 녹색 건축·도시 조성기술 및 에너지 관리 체계 마련	국토부 지경부	-
4.건축·도시 산업의 고도화	1) 건축설계·엔지니어링 분야 육성 및 진흥	국토부	교과부, 지경부 통계청, 기재부
	2) 건축·도시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 강화	국토부	교과부, 문화부
5.고유한 건축 문화 창달	1) 건축문화자산의 창조적 활용·발전	국토부 문화부	-
	2) 일상생활에서의 건축문화 향유기회 확대	국토부 문화부	교과부
6.건축문화의 역량강화 및 글로벌 확산	1) 건축관련기준 글로벌 스탠더드화	국토부	소방방재청
	2) 건축·도시분야 국제 교류·협력 강화	국토부 문화부	외교부, 지경부
실행력 강화전략	1) 선도시범사업 추진	국토부	-
	2) 제도적 기반강화	국토부	-
	3) 디자인행정 프로세스 개선	국토부	-

2. 실천과제의 유형화

□ 추진주체에 따른 분류

과제의 주요 추진주체에 따라 실천과제들을 나누면 「단일부처 추진과제」, 지역건축기본계획에 의한 「지자체 추진과제」, 「부처간·지자체간 협력과제」 등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 실천과제들을 구분하면, 단일부처 추진과제 22과제, 지자체 추진과제 13과제, 부처간·지자체간 협력과제 13과제로 나누어지며, 일부 과제는 단일부처에서 추진하면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의 형태로 과제가 수행되는 등 추진주체가 중복 교차되는 경우도 있다.

□ 과제의 성격에 따른 유형화

과제의 성격에 따른 분류에서는 「건축도시 관련 제도개선」, 「기존 국책사업의 체계적 관리(사업)」, 「산·학·연 협력의 연구개발」, 「건축디자인시범사업(사업)」 등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분류에 따르면 제도개선 14과제, 국책사업의 체계적 관리 5과제, 연구과제 22과제, 시범사업 19과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연구과제와 시범사업의 형태가 많은 이유는 처음으로 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되는 시기적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제의 성격을 구분할 때도 단일 유형의 과제보다는 2개 이상의 유형을 포함한 과제가 2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 공동주택 디자인 개선이나 한옥의 산업화 및 대중화 추진 등 과제는 국책사업인 동시에 제도개선, 연구, 시범사업이 함께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 과제 추진기간에 따른 유형화

과제의 추진기간에 따라 실행과제를 유형화하면 「단기적으로 성과측정이 가능한 과제」와 「중장기적으로 기획·추진되는 과제」 등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단기과제는 13과제, 중장기과제는 25과제로 과제들의 효과가 단기간에 드러나기 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효과가 드러나는 특성의 과제들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과제를 수행하고 성과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 성과지표에 따른 유형화

과제의 성격을 성과지표에 따라 분류하면 「성과지표 개발이 가능하고 관리가 가능한 과제」와 「성과지표 도출이 불가능하고 이행점검을 필요로 하는 과제」의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성과지표 개발이 가능한 과제는 7과제, 이행점검이 필요한 과제는 31과제로 대부분의 과제가 이행·점검을 통해 성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처음 시도되는 기본계획인 만큼 과제의 대부분이 제도개선이나 연구, 시범사업의 형태로 추진되어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제시하는데 무리가 있으며 따라서 이행점검의 형태로 사업관리와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 시사점

건축정책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실천과제들은 다음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추진주체, 과제의 성격, 추진기간, 성과지표 등에 따라 개별적인 유형화가 가능하고, 많은 과제들이 단일 유형이 아닌 2가지 이상의 유형을 지닌 것으로 나타나 과제별 성과지표를 도출하고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실천과제의 대부분은 1차 계획임을 감안하여 사업기획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연구 또는 시범사업의 성격을 띤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단기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과제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가 필요한 과제가 많았다. 따라서 성과관리도 단기적인 결과중심의 평가보다는 장기적으로 전략적이고 상시적인 과정중심의 성과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처음으로 시도되는 건축정책기본계획인 만큼 구체적인 성과측정 단계에 이르지 못한 과제가 많고, 과제별로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제시하는 것도 무리가 따르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1차 기본계획의 성과관리는 결과중심의 성과평가가 아닌 과정중심의 이행점검 방식으로 성과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3-5] 건축정책기본계획 실천과제 유형별 분류

정책목표	추진전략	실천과제	세부과제	추진주체			과제의 성격				추진기간		성과지표	
				단일부처	지자체	부처간협력	제도개선	국책사업	연구과제	시범사업	단기과제	중장기과제	성과지표	이행점검
1.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	1. 국토환경 디자인 강화	1)지역이미지 향상을 위한 경관 형성·관리	- 수변·연안 개발, 산업·관광단지 조성 등 지역개발사업의 디자인 제고			●				●		●	●	
			- 품격높은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건축·도시 통합디자인 도입	●		●					●	●		
		- 농어촌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루도록 경관형성 및 관리체계 강화		●			●	●			●	●		
		-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대표적 건축물로서 철도 건축물 디자인 향상		●				●			●	●		
	2. 건축·도시 디자인 수준 향상	2)국토기간시설 디자인 제고	- 항만 경관디자인 개선 및 랜드마크 시설 도입			●						●	●	
			- 성장시대의 단순한 이동통로 기능을 위한 도로에서 휴식, 조망,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경관도로로 전환	●			●					●		
		3)공공건축물·시설물 디자인 품질 제고	- 공공건축물·시설물 설계과정 개선	●					●	●		●	●	
			- 공공건축물·시설물에 대하여 디자인 가치를 중시하는 발주방식 장려	●		●	●			●		●	●	
4)일상생활환경 디자인 개선 추진	-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디자인 개선 추진	●			●			●		●	●			
	- 지역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시설의 디자인 개선 및 다양화	●		●			●	●		●	●			
2. 건축·도시 분야 녹색성장 기반구축	3. 녹색 건축·도시 구현	5)탄소저감형 건축·도시환경 조성	- 에너지 고효율화를 위한 녹색건축물 보급·확대			●		●				●	●	
			- 탄소저감을 위한 녹색도시 조성 기반 마련			●		●				●	●	
	6)녹색 건축·도시 조성 기술 및 에너지 관리체계 마련	- 저탄소 저에너지 건축·도시 관련기술 개발 촉진			●			●	●			●	●	
		- 건축·도시분야 효율적 에너지 관리체계 마련	●		●	●					●	●		
	4. 건축·도시 산업의 고도화	7)건축설계·엔지니어링 분야 육성 및 진흥	- 건축·도시 관련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공유체계 구축	●					●	●		●	●	
			- 건축·도시분야 연구기반 강화	●			●				●	●		
		8)건축·도시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 강화	- 건축·도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 공공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	●						●			●	
			-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건축 교육과정 확충 및 건축사 전문성 제고	●			●					●	●	
3. 창조적 건축문화 실현	5. 고유한 건축문화 창달	9)건축문화자산의 창조적 활용·발전	- 한옥의 산업화 및 대중화 추진		●	●		●	●			●	●	
			- 건축문화자산에 대한 관심 고취와 실용적 재생·활용		●	●			●	●			●	●
	- 건축문화 관련 기록물의 축적 및 관리시스템 구축	●			●				●		●	●		
	10)일상생활에서의 건축문화 향유기회 확대	-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건축문화 행사 다각화 및 내실화 추진			●				●			●	●	
		- 건축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창조역량 강화를 위하여 건축 기초 교육 활성화 도모			●				●			●	●	
	6. 건축문화의 역량강화 및 국제협력증진	11)건축관련기준 글로벌 스탠더드화	- 안정성과 사용성 향상을 위해 성능중심으로 건축관련 기준을 합리적 개선 추진	●				●				●	●	
- 건축 관련 설계도서 작성기준 및 계약 등의 선진화			●			●					●	●		
12)건축·도시분야 국제 교류·협력 강화	- 국내 신도시건설 경험 전략 상품화 및 해외 진출 추진			●			●	●			●	●		
	- 국내 건축문화와 건축가에 대한 해외 교류 강화			●				●			●	●		
실행력 강화전략	1)선도시범사업 추진	- 건축·도시 통합디자인 시범사업	●	●							●	●		
		- 한옥 활성화 시범사업	●	●					●		●	●		
		- 건축문화자산 보전·활용 시범사업	●	●					●		●	●		
		- 공공건축·시설물 디자인 개선 시범사업	●	●					●		●	●		
	2)제도적 기반강화	- 품격있는 건축·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법·제도 정비	●				●			●		●	●	
		- 각종 심의 및 평가제도 개선	●	●			●				●	●		
3)디자인행정 프로세스 개선	- 중앙정부의 설계관련 업무체계 개선	●				●				●	●			
	- 지자체의 건축·도시 디자인행정 쇄신	●	●			●				●	●			

제4장 정책평가 및 성과관리의 이론적 검토

1. 정책평가 및 성과관리 관련 법·제도 검토
2. 주요 평가 및 성과관리제도 운용현황 및 체계
3. 해외 주요국의 정책평가 및 성과관리제도 운용 현황
4. 요약 및 시사점

1. 정책평가 및 성과관리 관련 법·제도 검토

1) 정부업무평가기본법

□ 배경 및 목적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도입 배경은 현행 개별적인 관련법령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각종 평가와 소관별 정책에 대한 자체평가를 정부업무평가의 근간으로 통합하고 체계화하여 자율적인 평가역량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을 포함한 정부업무 전반에서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이 법은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능률성과 효과성, 그리고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구성체계 및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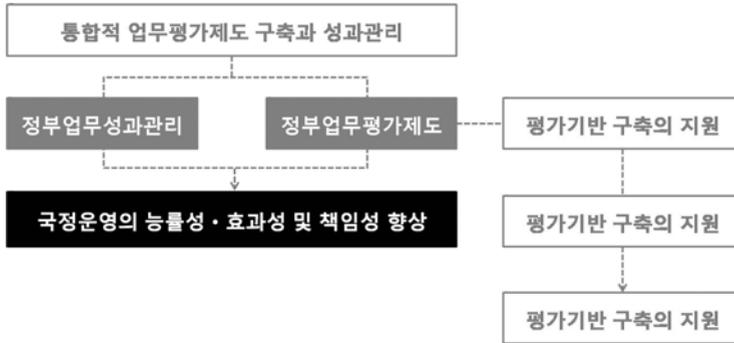
중전의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을 대체하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은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었으며 6개의 장과 부칙으로 총 34조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에 따라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업무의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정책목표와 방향을 정한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¹³⁾

정부업무의 성과관리와 평가를 심의·의결하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국무총리 및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등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은 소관정책 전반에 대한 자체평가계획을 수행하고 재평가를 통하여 자체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자체평가계획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여러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정책 등 국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가 별도의 특정평가를 수행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중복평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이 그 평가계획과 평가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정부업무평가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할 경우 평가역량의 강화를 위한 조직과 예산을 지원하고, 평가방법과 평가지표 등을 개발·보급하며, 평가전문인력의 활용방안 강구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13)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8조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의 수립'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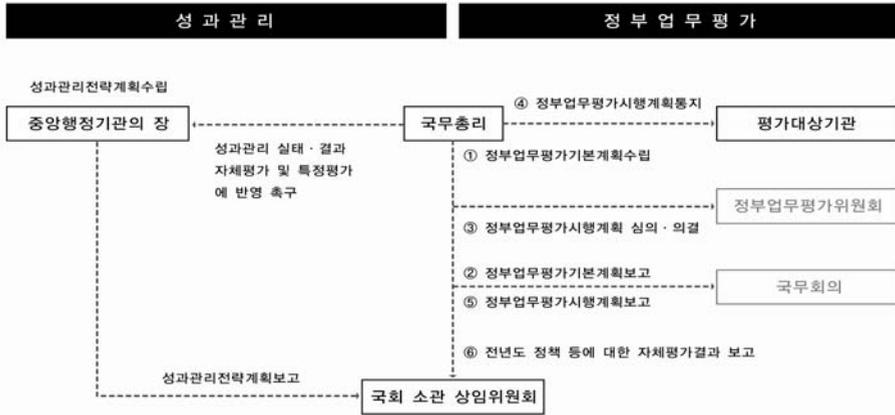


[그림 4-1]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구성체계

[표 4-1]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평가업무 유형

구분	자체평가	특정평가	성과관리
목적	기관의 자율적 역량 강화	국정의 통합적 관리	조직의 효율적 운영
대상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의무적 의무적 부적용	적용 부적용 부적용	의무적 임의적 임의적
평가기관	· 주관:국무총리(정부업무평가위원회) · 시행:중앙행정기관장(자체평가위원회) · 협조:평가총괄관련기관	· 주관·시행:국무총리(정부업무평가위원회) · 협조:특정평가관련기관	· 주관:국무총리(정부업무평가위원회) · 시행:중앙행정기관장(자체평가위원회) · 협조:평가총괄관련기관
대상분야	주요정책과제, 재정성과, 일반관리(조직·인사·정보화)	특정시책(기관공유과제·주요현안시책·국가주요사업 등), 특정관리(혁신관리·지속관리공통업무), 국민만족도	자체평가와 특정평가의 대상분야
평가관리	· 연도별 평가 - 국무총리의 확인·점검 및 재평가 - 국회사임위에 평가결과 보고	· 연도별 평가 - 평가업무 수행자의 확인·점검 - 대 국회 결과보고 없음	· 연도별·중장기적 평가 - 중앙행정기관장의 반기별 점검 - 국회 상임위에 관리계획 보고
특성	· 독립적 평가유형 내 부평가	· 독립적 평가유형 외 부평가	· 자체평가·특정평가에 반영 내부관리

※ 출처 : 김현구, 2006,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의 논리와 과제



[그림 4-2] 관련제도 운영체계

- 성과관리

정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활동을 말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 수립시 해당기관의 임무와 전략목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포함하여야 하고 최소한 3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 수정·보완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별도의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정부업무평가제도¹⁴⁾

국무총리는 정부업무의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한 정부업무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최소한 3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며 매년 3월말까지 연도별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대상기관에 통보함과 동시에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및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정부업무평가

14) 정부업무평가 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본 연구서의 '주요 평가 및 성과관리제도 운용 현황 및 체계' 참고(page 52)

의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두고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평가총괄 관련기관의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한다.

정부업무평가는 자체평가, 특정평가,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평가,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로 나눌 수 있고 정부는 평가방법과 평가지표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조치와 평가예산에 대해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과 같은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해서는 국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평가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고 공공기관 외부의 기관이 실시하도록 한다. 정부업무평가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국무총리는 매년 각종 평가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거나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표 4-2]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및 평가시행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정부업무평가와 관련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각종 평가제도와 평가방법 등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사항 · 평가관련 인력의 전문성·독립성 확보에 관한 사항 · 전자통합평가체계(이하“전자통합평가체계”)의 구축·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연도의 정책 등에 대한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의 기본방향 · 당해 연도의 정책 등에 대한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 당해 연도의 정책 등에 대한 특정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당해 연도의 정책 등에 관한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필요한 사항

[표 4-3] 정부업무평가의 평가구분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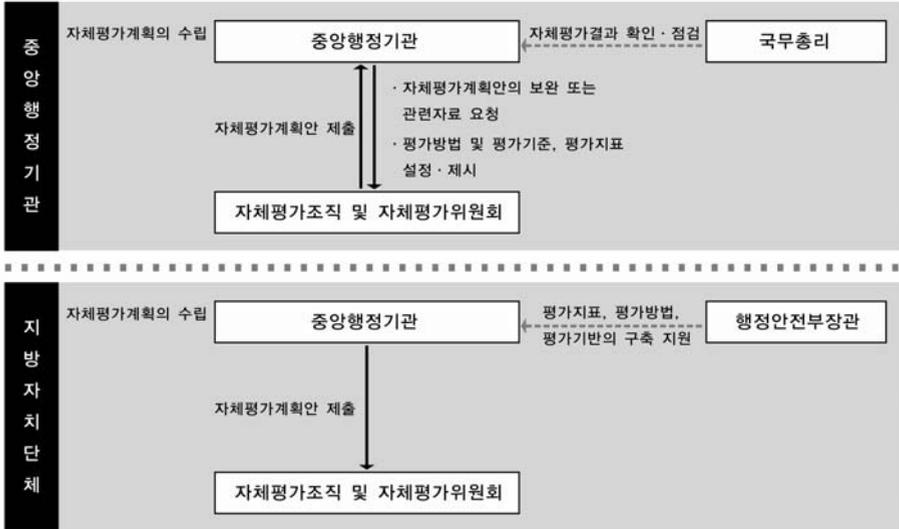
평가부문	관련중앙행정기관	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는 사항
주요정책기관	국무총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제도의 운영·개선, 평가지침 및 평가 지표의 작성 · 자체평가결과의 확인·점검, 재평가의 실시 여부 · 그 밖에 자체평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재정사업부문	기획재정부	
기관역량부문	행정안전부	

[표 4-4] 자체평가 및 특정평가 대상

자체평가 대상부문	특정평가 대상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기관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필수적 정책 등 · 그 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등 · 자체평가결과와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 등과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중앙행정기관이 공통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시책으로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문 ·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국가의 주요사업으로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부문 · 기관 또는 정책 등의 추진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부문 · 그 밖에 특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부문

[표 4-5] 자체평가계획 및 특정평가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자체평가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특정평가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 당해 연도 주요 정책 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 자체평가의 기본방향 ·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대한 사항 · 자체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자체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연도 특정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당해 연도 특정평가의 대상에 관한 사항 · 특정평가의 방법에 관한 사항 · 특정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특정평가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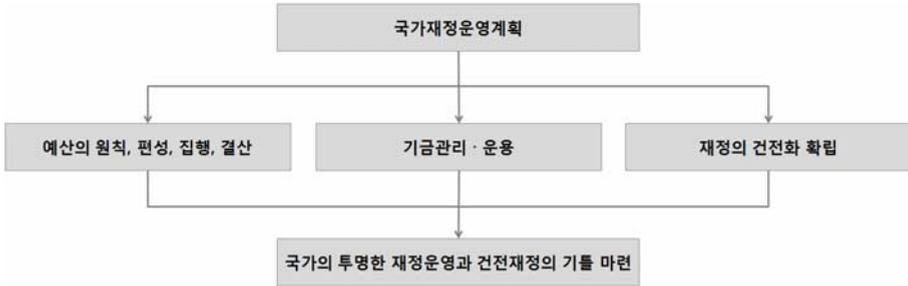
[그림 4-3] 자체평가 절차

2) 국가재정법

□ 구성체계 및 주요내용

「국가재정법」은 국가재정에 관한 총칙법으로써 종래의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폐합하여 만들어진 법으로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국가의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영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7개의 장과 부칙, 총 102개 조문의 세부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국가의 예산, 기금, 결산, 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정운영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을 위한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회계와 기금 간의 여유재원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며 국가재정에 관한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국민에게 공표함과 동시에 불법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제도를 도입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4-4] 국가재정법의 구성체계

□ 관련 제도의 운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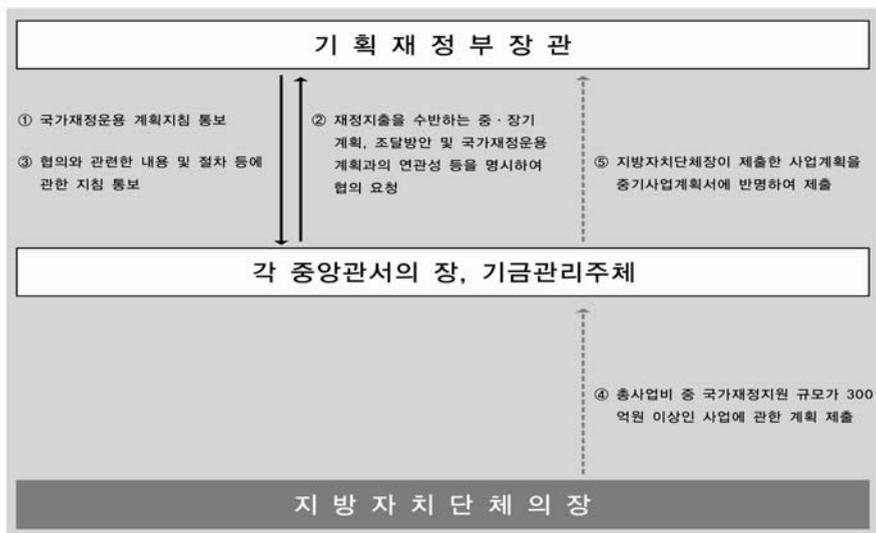
- 국가재정운영계획 수립

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목표, 중장기 재정전망, 분야별 자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 전년도에 수립한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대한 평가 등을 포함하여 국가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재정운영계획 지침을 통보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계획안의 확정 30일전에 중장기계획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요청한다.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지자체의 장은 사업계획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중기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다.

[표 4-6] 국가재정운영계획 수립에 포함되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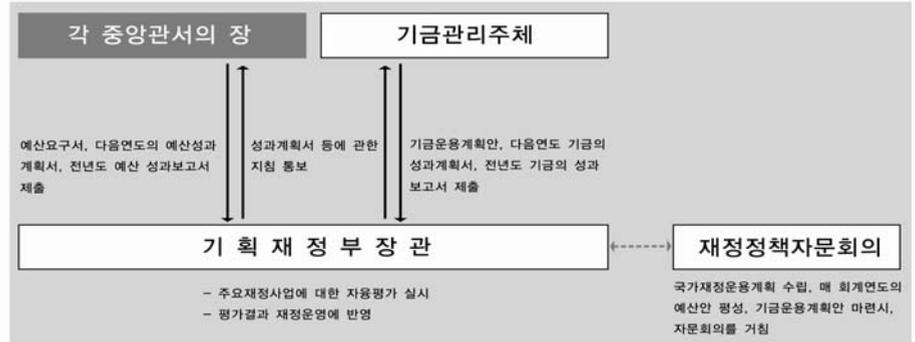
• 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목표	• 중·장기 재정전망
• 분야별 자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	•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 통합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에 대한 전망	• 전년도에 수립한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대한 전망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그림 4-5]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절차

- 재정사업의 성과관리평가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국가회계법」에 근거하여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 자율평가를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심층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그림 4-6] 재정사업의 성과관리평가 업무 흐름도

[표 4-7] 정부 성과관리와 감사원의 역할

재정사업자율평가	재정사업심층평가
Program review (체크리스트방식의 자율평가)	Program evaluation
매년 전체사업의 1/3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 또는 비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는 사업 · 향후 지속적 재정지출 급증이 예상되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지출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 그밖에 심층적인 분석·평가를 통해 사업추진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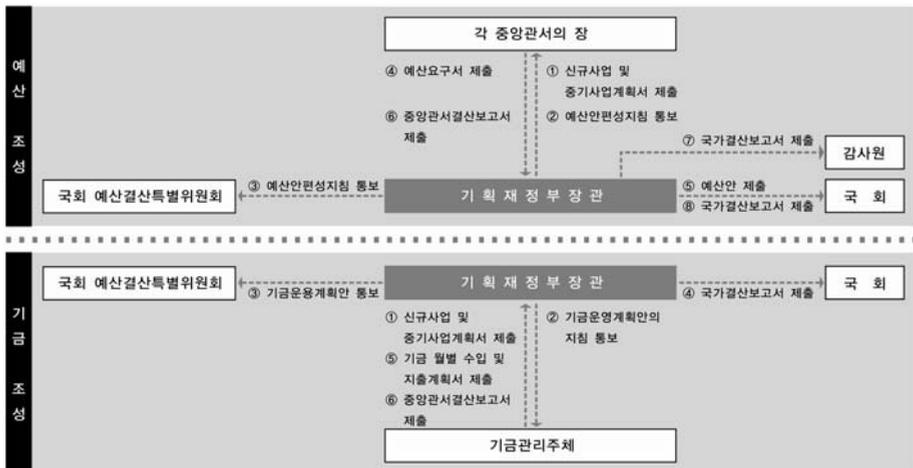
※ 출처 : executive report, 2009.04, 감사원연구원 연구부, 신상훈, 차경엽 참고

- 예산조성 체계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정부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고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 기금조성 체계

기금관리주체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정부는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때에 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중앙관서결산보고서에 통합하여 작성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그림 4-7] 예산조성 및 기금조성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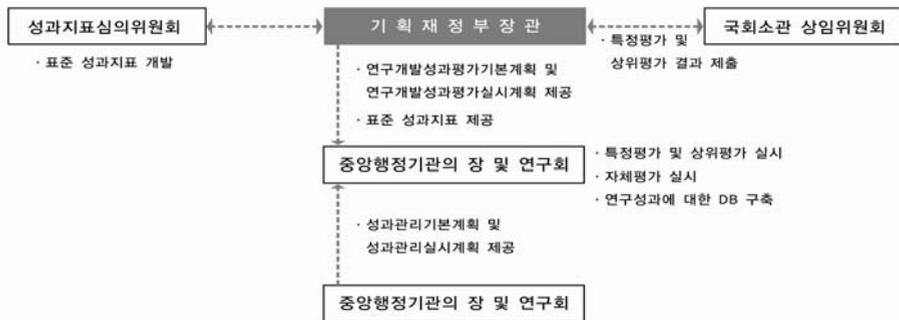
3)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 구성체계 및 주요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평가를 성과중심으로 체계화하고,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관리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2006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었다.

성과중심 평가제도 도입 및 체계적 평가시스템 구축, 사업의 특성을 감안한 평가방식 도입, 성과관리활용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자체평가,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대학 등의 연구성과 관리·활용, 평가결과의 활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관련제도 운영체계



[그림 4-8] 관련제도 운용체계

-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성과평가와 성과관리

[표 4-8] 연구개발성과평가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 성과평가의 기본방향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 성과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성과평가 기본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평가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 및 공개에 관한 사항 • 성과평가 전문가의 육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

기획재정부장관은 5년마다 연구개발사업 등에 관하여 연구개발성과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성과평가기본계획에 따라 연구개발성과평가실시계획을 마련한다. 연구성과관리, 활용계획에 관해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5년마다 성과관리기본계획을, 매년 성과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성과관리실시계획을 마련한다.

[표 4-9] 성과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성과 · 활용의 기본방향 · 특히, 논문 등 연구성과 유형별 관리 · 활용 방법에 관한 사항 · 연구성과 데이터베이스의 종합적 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성과 관리 · 활용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성과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성과평가관리로는 자체평가와 특정평가, 상위평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와 대학 등의 연구성과관리가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각 연구개발유형과 특성이 반영된 표준 성과지표를 개발·제공하여야 하고 성과지표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또한 자체성과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한다.

[표 4-10]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성과평가관리의 구분 및 대상

구분	내용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 실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간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예산 · 사업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 국가적 ·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사업 ·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특정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평가 <p>※ 상위평가는 자체성과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서면평가방법으로 실시</p>
자체평가 실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목표의 달성정도를 포함하는 연간 연구성과 · 단계적으로 구분되거나 장기간 추진되는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단계 또는 중간 연구성과 · 최종 연구 성과 · 연구개발사업 종료 후 5년간의 연구 성과의 관리 · 활용에 대한 추적 평가
기타 평가 실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 대학 등의 연구 성과 관리

2. 주요 평가 및 성과관리제도 운용현황 및 체계

1) 공공부문의 주요 평가제도 현황

공공부문의 평가제도로는 중앙기관, 지자체 및 산하기관의 업무평가 등 정부업무에 대한 심사평가와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같은 공공부문에 대한 평가 등이 운영되고 있다.¹⁵⁾ 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와 관련된 주요 사례로는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 평가제도, 기획예산처의 성과관리제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가균형발전사업 추진실적 평가 등을 들 수 있다.

[표 4-11] 공공부문 주요 평가제도 현황

제도	주관기관	평가주기	도입연도	관련규정	주요 내용
정부업무 평가제도	국무조정실	연2회	1961년	정부업무 평가기본법 (2006년 개정)	- 통합적인 성과관리체계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 - 중앙행정기관평가, 지방자치단체평가, 특정평가로 구분
성과관리제도	기획예산처	매년	2003년	성과관리제도 시행지침	- 전략·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 - 성과정도를 평가, 예산과 연계
성과감사	감사원	수시	최근 기능강화	감사원법	- 주요 정책·사업의 성과 평가
주요 정책·사업 평가 및 집행 모니터링	국회예산정책처	수시	2004년	국회예산정책법	- 주요정책·사업의 효과 등 평가 - 집행과정 평가
국가균형발전사업 추진실적 평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매년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정기적 점검, 문제점 도출 및 개선 방향 제시 - 각 시·도의 자체평가서 등을 토대로 평가를 시행

15) 정부에서 시행되는 공공부문의 주요평가제도로는 총 11종이 운영 중에 있음

□ 정부업무평가 현황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정부업무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공공기관이 행하는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임
- 이 규정에 따라 정부업무평가의 분류는 중앙행정기관평가, 지방자치단체평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공공기관평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평가

2008년도에 정부업무평가로 확정된 중앙행정기관 평가영역은 자체평가의 주요정책, 재정성과, 기관역량, 특정평가의 규제평가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들은 각각 다른 중앙행정기관에서 정하는 법령들에 근거하는 14개의 개별 평가들에 근거하고 있다.

[표 4-12] 통합평가체계하의 중앙행정기관 평가

구분	평가제도	근거법령
자체평가(주요정책)	1. 주요정책평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자체평가(재정성과)	2. 재정사업자율평가	국가재정법
	3. R&D평가	과학기술기본법
	4. HRD평가	인적자원개발기본법
	5. 정보화시책평가	정보화추진기본법
	6. 전자정부사업평가	전자정부법
자체평가(기관역량)	7. 개방형직위평가	개방형직위운영 등에 관한 규정
	8. 공무원교육훈련평가	공무원교육훈련법
	9. 조직운영평가	행정기관의 주직과정에관한통칙
	10. 지식정보자원평가	지식정보자원관리법
	11. 행정기관홈페이지평가	(법령 근거 없음)
	12. 정보공개평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자체평가 시 활용	13. 책임운영기관평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특정평가(규제개혁평가)	14. 규제개혁평가	행정규제기본법

※ 출처 : 이광희, 정부업무평가제도 조사 및 정비방안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을 평가대상기관으로 하는 평가는 12개에 이르며, 이들 평가 중 교육과학기술부의 “자격관리운영기본계획 관련평가”, 국무총리실의 “공직기강 관련 정부 합동점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운영실태 점검”, 법무부의 “외국인정책시행계획 관련 평가”, 법제처의 “입법예고제도 운영실적 조사”, 행정안전부의 “징계제도운영실태의 지도·점검” 등은 평가의 방식보다 실적점검 수준에서 평가업무가 진행된다.

[표 4-13]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

평가주관기관	평가명칭	근거법령
교육과학기술부	자격관리운영기본계획 연도별시행 평가	자격기본법시행령
국무총리실	공직기강 관련 정부 합동점검	대통령지시사항관리지침 공직기강업무규정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운영실태 점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온라인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기획재정부	부담금 운용평가	부담금관리기본법
법무부	외국인정책시행계획 추진실적평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시행령
법제처	입법예고제도 운영실적 조사	행정절차법, 법제업무운영규정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시책평가	중소기업특별위원회규정
지식경제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사업 부문별 추진실적평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및 시행령
환경부	-국가이행계획추진상황점검 -국가지속가능성평가 -법령·행정계획검토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및 시행령
행정안전부	징계제도운영실태의 지도·점검	공무원징계령
	사무자동화사업평가	사무관리규정
	일하는 방식 평가	별도 근거 없음

※ 출처 : 이광희, 정무업무평가제도 조사 및 정비방안

- 지자체 평가 현황

중앙행정기관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는 111개에 이르며, 지자체 평가를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수는 16개 기관이다. 이중 행정안전부가 42개로 전체 지자체 평가의 38.7%를 차지하며, 보건복지가족부(14개), 국토해양부(11개), 농림수산식품부(8개), 환경부(7개) 순으로 나타난다. 지자체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평가처럼 평가부문과 영역이 세세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다만 고유의 사업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업무의 특성, 평가시기 등의 이유로 인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표 4-14]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

평가주관기관	평가명칭	근거법령	평가방식
공정거래위원회 (1)	지방소비자행정	소비자기본법 및 시행령	개별평가
교육과학기술부 (2)	지방과학기술인 육성 및 활용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합동평가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활용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합동평가
국가보훈처(1)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시책평가		합동평가
국토해양부 (11)	시설물안전관리평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
	교통문화지수실태조사	교통안전법 및 시행령	-
	건축행정시스템활성화평가	-	합동평가
	국민임대주택건설지원	-	합동평가
	시설물의 안전관리	-	합동평가
	개별공시지가평가	부동산가격공시법	개별평가
	'08년지방자치단체 주거복지평가	서민·중산층주거안정지원대책03.8VIP보고, 의후속조치	개별평가
	하천제방정비평가	하천에 관한사무처리규정	개별평가
	광역교통시행계획추진계획평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
	대중교통시책의평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법률 및 시행령 대중교통시책평가지침	-
개발촉진지구 및 특정지역 개발계획의 집행결과평가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	
기획재정부(1)	국유재산관리·처분실적평가	국유재산법시행령	개별평가
노동부 (6)	고용촉진훈련		합동평가
	비정규직인력의합리적인응용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	합동평가
	청년실업대책추진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및 시행령	합동평가
	사회적기업지원시책수립시행	사회적기업육성법	합동평가
	장애인 공무원 의무 고용률 충족여부평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합동평가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및 시행령	개별평가	
농림수산식품부 (8)	지자체농정업무평가	농업·농촌기본법, 농림업무평가규정	개별평가
	고품질쌀생산·유통및경쟁개선대책평가	농업·농촌기본법, 농림업무평가규정	개별평가
	가축방역시책평가	축산법	개별평가
	식품안전관리		합동평가
	한약재유통관리평가		합동평가
	재래시장위생관리시범사업		개별평가
	지역계획의진실적평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법률	-
산림행정종합평가	산림기본법	개별평가	

농촌진흥청 (2)	지방농촌 지도사업평가	농촌진흥법 지방농촌진흥기 관상및지도대상규정	합동평가
	지역농업 연구활성화 지원 사업 평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개별평가
문화체육관광부 (4)	지방문화예술활동		합동평가
	관광인프라 확충 및 관광객 유치홍보		합동평가
	지방공공 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		합동평가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도서관법	개별평가
보건복지가족부 (14)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평가	정신보건법 및 시행규칙	합동평가
	노인복지사업(장기요양기관 확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합동평가
	취약계층 여성의 자립지원		합동평가
	보육서비스 확대		합동평가
	다문화가족 포용	다문화가족지원법	합동평가
	장애인 생산물 우선구매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	개별평가
	노인복지사업(독서노인생활 지도사 파견사업)	'08년 노인보건복지사업	개별평가
	모자보건사업평가	모자보건법	개별평가
	지자체 보건사업 종합평가	지역보건법 및 시행령	개별평가
	전염병 관리사업 종합평가		개별평가
	공중위생 관리사업평가	공중위생관리법	개별평가
	한방공공보건사업		개별평가
	지자체 복지수준 종합평가	사회복지사업법	개별평가
	지역병상수급계획 평가	병상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 정에 관한 규칙	-

(이하생략)

※ 출처 : 이광희, 정무업무평가제도 조사 및 정비방안

□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 ·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평가 현황

평가대상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평가는 모두 18개로 나타났으며¹⁶⁾, 모든 분석 및 정비방안은 중앙행정기관평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이 가운데 3개의 평가(비상대비업무평가, 재난관리평가, 기록관리평가)는 지자체 평가 차원에서 다시 분석이 이루어진다.

16) 이광희, 2008, 정무업무평가제도 조사 및 정비방안

[표 4-15]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현황

평가주관기관	평가명칭	근거법령	평가대상
국가정보원	국가 공공기관 보안관리 실태평가	전자정부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지방교육청 공공기관 국립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공직유관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정부투자기관
국무총리실	대통령지시사항추진상황점검 및 평가	대통령지시사항관리지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토해양부	-지역·지구등의행위제한내용평가 -지역·지구등의지정과운영실적평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및 시행령,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및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집행실적평가	교통체계효율화법 및 시행령,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5개년계획	
	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 추진실적평가	국토기본법 제4차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어업인 삶의 질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 특별법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건강가정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평가	건강가정기본법	
소방방재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난관리평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및 시행령, 자연재해대책법 및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조달청	정부 물품관리 종합평가	물품관리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제품우수구매분야평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통일부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연도별시행계획 점검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성과분석	정보시스템의 효율적도입 및 운영등에과난법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행정기관 웹사이트진단 및 컨설팅	정부기관홈페이지발전기본계획, 행정기관우수홈페이지선정계획, 홈페이지발전종합대책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록관리 평가	공공기록물관리예관한법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환경부	비상대비업무평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 추진실적평가	대기환경보전법,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2)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제도

□ 정부업무평가제도 개요

국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이 행하는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이 있으며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다음연도 초에 정부업무평가보고회를 개최하거나 국무회의에 보고한다.

□ 운영체계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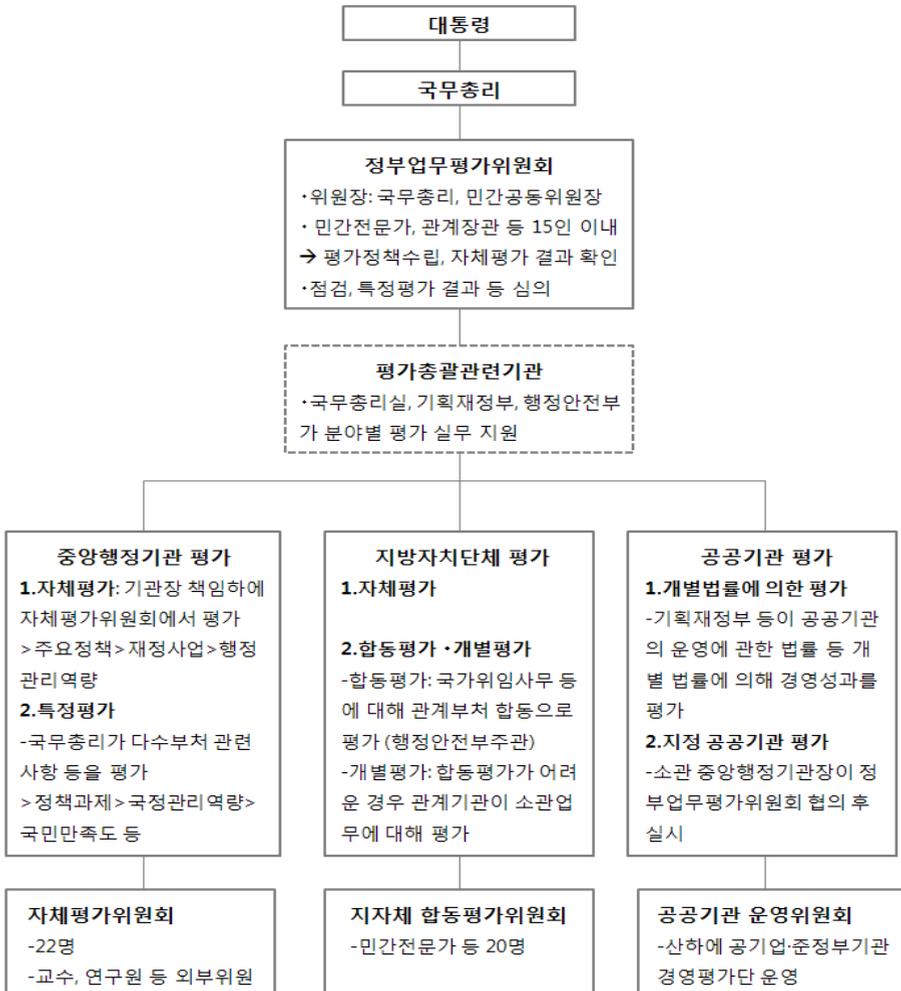
국무총리와 민간공동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심의기구인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평가제도를 총괄 운영하며 그 역할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
- 위원장 :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대통령이 지명)이 공동수행
 - 위 원 : 당연직 위원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및 민간위원(10명, 임기2년, 1차 연임 가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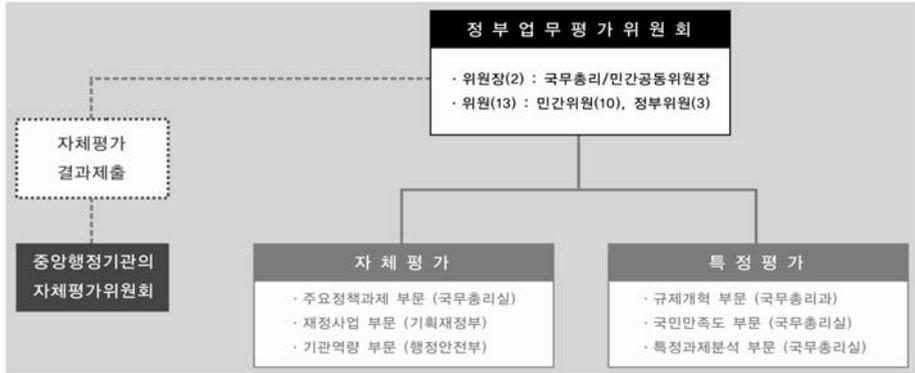
- 국가차원의 중장기 평가기반의 구축·운영계획의 수립 및 추진
-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및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의 수립
- 정부업무평가의 기획·조정·총괄
- 정부업무평가제도와 관련된 성과관리
- 정부업무평가결과의 활용 및 평가제도간 연계방안
- 특정평가계획의 수립·시행 등

- 부처 자체평가위원회

각 부처는 기관장의 책임하에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에 따라 ‘자체평가계획’을 수립·운영하며, 위원회는 부처별로 민간전문가를 2/3이상 포함한 25인 이내로 구성하여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주요정책, 재정사업, 기관역량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그림 4-9] 정부업무평가 운영 체계



[그림 4-10] 정부업무평가 시행체계

□ 중앙행정기관 평가

중앙행정기관 평가의 대상은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및 방송통신 위원회를 포함한 40개 중앙행정기관으로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다.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평가는 평가주체에 따라 자체평가와 특정평가로 구분된다.

자체평가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스스로 주요정책, 재정사업, 행정 관리역량 부문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개선, 예산배분, 공무원 개인의 성과에 반영. 평가총괄관련기관은 각 부처의 자체평가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확인·점검을 실시한다.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각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핵심과제, 녹색성장, 정책관리 역량, 정책소통·홍보, 규제 개혁, 정책 및 민원 만족도 부문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한다.

[표 4-16] 중앙행정기관평가 개요

구분		평가시행기관	평가총괄 관련기관	
자 체 평 가	주요정책		중앙행정기관의 장 (자체평가위원회)	국무총리실
	재정사업			기획재정부
	행정관리 역량			행정안전부
특 정 평 가	정책과제	핵심과제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국무총리실
		녹색성장		
		정책관리 역량		
	국 정 관 리 역 량	정책소통·홍보		
		규제개혁		
	국 민 만 족 도	정책 만족도		
민원 만족도				

□ 자체평가

자체평가의 평가대상으로는 주요정책, 재정사업, 행정관리 역량부문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 주요정책 부분은 자율평가로 평가지표, 지표별 배점 등의 평가방법을 100% 자율로 선정하고 있다. 재정사업과 행정관리 역량부문은 사업의 특징에 따라 일반재정사업, 정보화사업, R&D사업, 인사관리, 조직관리, 재정운용, 정보화관리로 세부적으로 나누어 평가방법을 달리하여 이루어진다.

평가방법은 각 부처별로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따라 평가대상, 평가방법, 세부평가일정 등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반기 동안 추진한 업무성과 및 목표달성도를 스스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자체평가에 반영한다. 각 부처가 제출한 자체평가결과는 부문별 자체평가 총괄관련기관에서 자체평가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이후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최종심의의결을 받는데, 이러한 점검 방법으로는 자체평가 시행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 여부 등을 점검한다.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확인·점검 결과, 자체평가의 객관성 및 신뢰

성에 문제가 있어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정부업무평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실시한다.

평가시기는 부처 자체평가의 경우 주요정책, 행정관리역량과 재정사업이 다른데, 주요정책, 행정관리역량의 경우 해당연도 11월말 실적을 기준으로 다음해 부처업무보고 전까지 자체평가를 완료하고 재정사업의 경우 해당연도 12월말 실적을 기준으로 다음해 1월~2월에 실시한다. 운영실태 점검 및 확인 점검은 주요정책, 행정관리역량의 경우 각 부처 자체평가 완료된 후에 필요에 따라 다음해 1월~2월에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재정사업의 경우 각 부처 자체평가 완료 후 다음해 3월~4월에 확인·점검한다.

※ 행정관리역량의 경우, 각 부처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전면적인 확인·점검은 지양하고 그 대신 필요시에 우수사례 컨설팅 위주의 제한적인 운영실태 점검

평가결과는 주요정책 부분의 경우 각 부처의 익년도 주요업무계획과 개인성과 등에 반영하고, 미흡과제의 경우 정책 개선방안 제시를 통해 정책 환류를 강화하며 각 부처 자체평가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결과, 수범부처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에서 포상을 실시한다. 재정사업 부분에서 사업별 확인·점검결과 등을 예산 편성시 반영하고 사업 효율성 및 성과달성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적극 발굴·지원한다. 행정관리 역량 부분에서 행정관리역량 우수사례를 부처간에 공유하고 각 부처에서는 미흡사례에 대한 정책 개선방안 제시를 통해 정책 환류를 강화하는 등 평가진단 및 결과 환류를 통해 업무개선 및 성과창출 유도 등 실질적인 부처의 역량강화 기회로 활용한다.

[표 4-17] 자체평가 대상

평가구분	평가방법		평가항목(예시)	평가총괄 관련기관
1. 주요정책	자율평가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부처가 기관특성 및 업무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 지표별 배점 및 측정방법 등을 100% 자율로 선정 - 평가지표는 가급적 각 부처의 특성에 맞게 개발·활용하되,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수립시 필요할 경우 포이을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의 목표달성 - 성과지표의 적절성 - 계획수립의 적절성 - 시행과정의 적절성 - 정책효과성 등 	국무총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량평가 외에 정성평가를 병용 - 정성평가는 정량평가를 통해 파악하기 어려운 정책 파급효과, 문제점 및 원인분석, 대안제시 등 질적 측면에 대해 서술적으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결과 상대등급화를 지속 추진 - 평가결과가 성과급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상대 평가 등급기준을 적용 - 정량평가에 의한 평정점수 등은 평가대상 과제별 우수·미흡 정도를 판정하는 기준으로만 활용 				
2. 재정사업	일반재정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사업(일반재정사업,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체계를 일원화하여 12개 공통질문 및 부문별 특성지표를 적용 * R&D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 지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의 타당성 - 성과계획의 적정성 - 사업관리의 적절성 - 성과달성 및 사업평가 결과의 환류 - 사업목적 및 내용의 타당성 - 사업추진체계의 합리성 - 사업관리 및 집행의 적절성 - 성과관리의 적절성 - 성과달성도 - 평가결과의 활용정도 	기획재정부
	정보화사업			
	R&D사업			

3. 행정관리 역량	인사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적인 기관 인사시스템 구현 - 성과지향적 인재 육성관리 	행 정 안 전 부
	조직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기관의 실질적인 관리역량이 측정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 통폐합 및 평가지표 대폭 축소 - 평가항목 통폐합:6개→4개 평가지표 축소:28개→13개 * 평가 결과, 행정관리역량 우수 사례를 환류를 통해 업무개선 및 성과 창출 유도 등 실질적인 부처간에 공유하고 각 부처에서는 미흡사례에 대한 정책 개선방안 제시를 통해 정책환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관리체계의 효율화정도 - 정부 기능·인력의 효율적 활용도 - 정보공개 처리 절차 준수 - 고객중심의 정보공개 서비스 제공 - 실용적 공직문화 조성 - 수요자 중심의 행정제도 개선 	
	재정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진단 및 결과 부처 역량강화 기회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운용 효율화 노력 - 지출한도 준수 여부 - 재정집행 실적 	
	정보화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정보화 추진방향과의 부합성 - 정보보호체계의 적절성 	

□ 특정평가

평가대상으로는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을 특정평가 분야로 선정하는 등 평가 대상기관의 업무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차별화된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보완하여 평가의 통합 및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있다.

[표 4-18] 특정평가 대상

평가분야		평가대상	평가기관
특정평가	정책과제	핵심과제	국무총리실
		녹색성장	
	국정관리역량	정책관리역량	국무총리실
		정책소통·홍보	
		규제개혁	
	국민만족도	정책만족도	국무총리실
민원만족도			

평가방법은 각 부처가 전자통합평가시스템에 등록하거나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평가하되 필요시 현장조사를 병행하는데, 각 평가부문별로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중심의 별도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다만 정책 및 민원 만족도 평가의 경우 민간전문조사기관의 설문조

사를 통해 평가를 실시하는데 조사대상은 일반국민, 전문가 및 민원인 모집단 으로부터 각각 일정비율을 무작위 추출하여 표본조사를 하고 방문, 전화,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면접방식을 활용한다. 이때, 각 부처는 조사대상 정책(특정평가 핵심과제와 동일)에 대한 정책설명문 및 조사대상 기간 중 접수처리한 전체 민원접수대장(목록)을 각각 작성하여 제출한다.

평가지기는 상반기에 중간점검을 시행하고(6월 또는 7월) 하반기에는 평가결과를 종합, 평가보고회 개최 또는 국무회의에 보고(12월 또는 익년도 1월)하는 등 상·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고, 유용한 평가정보를 생산하여 차기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는 등 정책개선에 적극 활용한다. 수범사례는 타 기관에 확산할 수 있도록 전파하고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조치 또는 역량제고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 수시현안 평가(2009년도 개선사항)

수시현안 평가는 정례적 평가(특정평가) 외에 국가의 중요현안의 추진 상황을 수시로 분석·평가(현장점검 병행)하여 제도개선 또는 행정조치 필요사항을 발굴함으로써 차질 없는 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며 평가대상은 사회적 파급효과가 커 신속한 점검을 통한 현황파악 및 대안마련이 필요한 정책으로 국가당면 현안과제(일자리창출, 녹색성장, 4대강 살리기 등) 중 집행점검 또는 개선방안 도출이 시급한 정책이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국정과제 등 정부 역점시책 중 체계적 심층평가가 필요한 정책으로 첫째, 다수 부처가 관련되어 종합적, 체계적 시각에서 분석이 필요한 정책과 둘째, 정책수요자와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분석이 필요한 정책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추진과정에서 실적 미흡, 부작용 발생 등이 예견되는 정책을 그 평가 대상으로 한다.

평가항목으로는 정책목표와 수단, 추진체계, 계획 집행의 적절성, 성과

목표 달성도, 실질적 정책효과 발생여부 등을 중심으로 대상과제의 특성에 따라 분석항목 및 기준을 신중적으로 설정하여 분석한다. 평가방법은 민간전문가, 총리실 담당관 등이 참여하는 사안별 「과제분석팀」을 구성하여 기술적, 처방적으로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점검팀’을 통해 정책현장의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대안을 강구한다.

※ 1개월 내 신속한 분석을 통해 대안을 도출하는 Issue Paper 형식의 단기현안 과제 및 In-depth Report 형식의 심층분석 과제 등으로 운용하며 관련부처에서는 정책자료 제공, 보고서 검토 등을 통해 분석과정에 참여함

평가결과는 관계장관회의,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에 보고하고, 소관부처의 장은 개선조치 사항에 대해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다. 평가시기에 대해서는 연중 수시로 분석 대상과제를 선정하고,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¹⁷⁾

17) 지방자치단체평가 및 공공기관평가의 경우 생략 됨

3)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 개요

2005년부터 주요 재정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 과정에서 활용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전체 재정사업을 매년 1/3씩 자율평가 하는데 기획예산처가 계획, 집행, 성과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각 일선 부처에 제공하면 일선부처는 이를 통해 자율적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기획예산처가 다시 평가결과를 점검하는 제도이다.

□ 평가대상 및 절차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평가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하며,¹⁸⁾ 평가받은 사업 중 성과지표 보완, 성과달성도 등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여 기평가결과를 조정해야하는 경우에도 그 대상이 된다.

[표 4-19] 자율평가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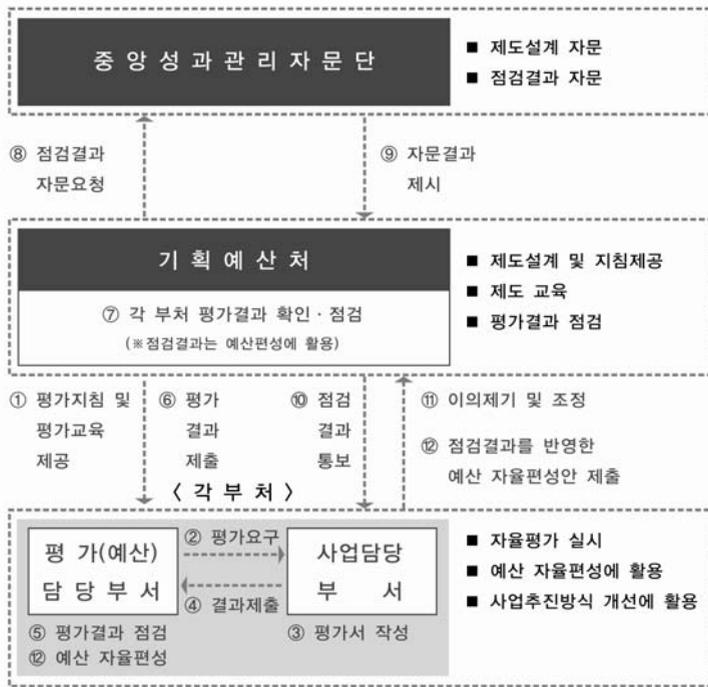
시 기	주요내용
1월	· 지침 각 부처 통보(기획예산처) · 평가대상 사업 선정(각 부처+기획처 협의)
2~3월	· 자율평가 후 평가결과 기획처 제출(각 부처)
4~5월	· 확인·점검 후 검토의견 각 부처 통보(기획처)
6월	· 이의제기 및 협의·보완(각 부처+기획처)
6월 말	· 평가결과를 반영한 다음연도 예산요구서 기획처 제출(각 부처)
7~8월	· 권고사항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 요약 작성(기획처)

□ 평가항목

「공통 평가항목」과 「사업유형별 평가항목」으로 구분하여 운용되는데, 「공통 평가항목」은 계획단계와 집행단계로 구분되며 ‘사업계획의 타당성’, ‘성과계획의 합리성’, ‘집행의 효율성’, ‘성과목표 달성도’ 등 일반적인 질문형식의 지표로 구성된다.

18) 자치단체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자치단체에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사업비나 인건비, 기본사업비 등 경상적인 행정경비 등의 사업은 제외

「사업유형별 평가항목」은 SOC, 시설·장비, 기타 직접, 출연·출자, 용자사업, 민간보조, 지자체보조로 구분하여 평가항목을 구성한다.



[그림 4-11] 자율평가 추진 체계도

[표 4-20] 재정사업자율평가 평가항목 구성

구분	공통평가	사업유형별 평가
계획단계	· 사업계획의 타당성 · 성과계획의 합리성	SOC, 시설·장비, 기타직접, 출연·출자, 민간보조, 지자체보조
집행단계	· 집행의 효율성 · 성과목표 달성도	SOC, 용자사업, 민간보조, 지자체 보조

[붙임-1] 재정사업자율평가지표

□ 평가결과 활용

항목별 평가결과를 종합점수화하여 사업별로 「우수」, 「다소우수」, 「보통」, 「미흡」 등 4단계로 등급화하여 관리하는데 2005~2006년간 40개 부처 1,132개 사업(약 71조원)에 대해 자율평가를 실시하였다.¹⁹⁾ 평가결과, ‘미흡’ 등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전년대비 10%이상 사업비를 삭감하는 등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활용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하여 각 부처 재정사업 효율화를 지원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3. 해외 주요국의 정책평가 및 성과관리제도 운용 현황

1) 미국의 정책평가 및 성과관리 제도

□ 미국의 정책평가제도의 도입 및 평가 체제

1993년 정부사업의 성과목표와 결과측정을 연계시킴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성과 및 결과법(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은 모든 연방기관이 성과기준과 목표에 대한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부와 의회가 정책평가기능을 공유하는 이원화 체제로 구성되어 행정부에서는 대통령 소속의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가 정책평가를 주도하며, 의회에서는 정부책임처(Government Accountability)가 정책평가를 주도한다.

□ 관리예산처(OMB)에 의한 정책평가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는 대통령의 정책개발과 집행을 지원하는 대통령실 기구로서 행정부에서의 정책평가를 주도하며 성과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2004회계연도 예산편성단계에서 PART(Program

19) 평가결과 전체사업 중 ‘보통’이상의 등급비율은 2005년도 84.3%, 2006년도 88.7%

Assessment Rating Tool)를 실시하였다. PART는 30여개의 질문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에 대한 필요한 설명과 증거를 제시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관리에산처는 PART의 산출결과로부터 각 사업의 효과성 정도 및 성과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후속조치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며, PART의 결과는 의회에 보고되고 OMB의 PARTWeb으로 공개하도록 되어있다.

□ 회계감사원(GAO)에 의한 정책평가

의회 소속의 회계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은 의회에 의한 정책평가를 주도하는 기관으로서 1921년 공공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예산과 회계에 관한 법률(Budget and Accounting Act)'을 제정하였으며, 2004년 7월 7일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연방의회에 소속된 독립적, 비당파적, 전문적 서비스기관으로서 미합중국 시민의 이익과 연방정부의 성과(performance) 증진 및 책무성(accountability) 확보를 위하여 의회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 역할이 규정되어 있으며, GAO 원장의 임기는 15년으로 의회의 원장추천위원회에서 대통령이 지명하여 상원의 인준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표 4-21] PART에서의 평가영역 및 평가영역별 질문(평가기준)

부 문	질 문 (평가기준)
1부 목적과 설계	1.1 사업목표는 분명한가? 1.2 사업이 구체적으로 현존하는 문제를 다루는가? 1.3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사업과 중복되지 않게 설계되었는가? 1.4 사업설계가 사업의 효과성이나 능률성을 저해하지는 않는가? 1.5 사업의 대상 집단이 명확히 정의되고, 자원이 수혜자에게 적절히 배분될 것으로 기대되는가?
2부 전략 계획	2.1 사업의 목적을 반영하는 장기성과목표가 설정되어 있는가? 2.2 장기성과목표에 대한 목표치와 일정표가 설정되어 있는가? 2.3 장기적 목표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연간 성과목표가 설정되어 있는가? 2.4 매년 성과측정의 기본선과 의욕적인 목표치가 설정되어 있는가? 2.5 사업의 개선과 효과성/적절성을 평가하는 독립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가 적절히 시행되는가? 2.6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과의 연계성은 충분한가?
3부 사업의 관리	3.1 신뢰할 수 있는 성과정보를 수집하고 성과 개선에 활용하는가? 3.2 연방정부 관리자 및 사업 참여자(보조금 지급대상, 외부계약자, 비용 분담기관 기타)에 대해 비용-일정-성과에 대한 책임이 부과되는가? 3.3 자금이 적시에 배정되고 원래의 목적에 사용되는가? 3.4 사업집행의 효율성과 비용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는가? 3.5 관련된 다른 사업과 효과적인 협조와 조정 가능한가? 3.6 재무관리가 잘 이루어지는가? 3.7 경영상의 결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취하여졌는가?
4부 사업의 성과	4.1 장기 성과목표 달성에 적절한 진척을 보이고 있는가? 4.2 연간 성과목표를 달성하였는가? 4.3 매년 성과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효율성이 개선되었는가? 4.4 유사 사업 및 민간사업에 비해 성과가 양호한가?

2) 영국의 정책평가 및 성과관리 제도

□ 영국 행정부에 의한 정책평가체계 도입

1997년 블레어(Tony Blair) 정부가 들어선 뒤 공공서비스에 대한 품질 향상 및 효과적 재정지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 부처와 재무성 간의 공공서비스협약(Public Service Agreement)이 체결되고 이를 구체화하고 보완하기 위한 공공서비스전달협약(Service Delivery Agreement)이 도입되었다.

행정부 내에서의 정책평가는 주로 공공서비스협약의 형태로 각 행정부처와 재무성이 성과목표 등을 결정하고 성과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평가는 정책집행을 담당하는 각 행정부처의 자체평가에 맡겨져 있으며, 재무성이 정책평가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공공서비스협약(PSA)은 각 부처가 재무성과 협의하여 각 부처 업무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게 해주는 정부차원의 성과목표이며 공공서비스전달협약(SDA)은 제시된 각 부처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공공서비스협약(PSA)을 통해 영국 각 부처의 향후 3년간의 정책목표와 자원, 성과 및 효율성 달성치를 구체적이고 계량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PSA에서 제시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부처에 대해서는 차후 예산심의에 반영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삭감이 이루어진다. 공공서비스전달협약(SDA)은 공공서비스협약에 포함되어 각 부처별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게 되며, 재무성 간에 협의를 통해 모니터링과 성과측정을 위한 세부적인 지표가 결정된다.

□ 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 : NAO)에 의한 정책평가

법률적으로는 입법부 소속기관으로서 국가회계에 대한 재무감사(financial audit)와 성과감사(value for money audit)를 수행하며, 감사원의 평가결과는 각 부처별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 권고안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서로 작성되고 있다.

동 보고서는 하원의 공공회계위원회(Committee of Public Accounts)에 보고되며, 위원회는 청문회와 질의토론을 거쳐 도출된 결론에 따라 행정부처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 등이 포함된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3) 일본의 정책평가 및 성과관리 제도

일본에서는 2001년 6월 ‘행정기관이 행한 정책의 평가에 관한 법률(약칭 : 정책평가법)’이 제정되고 2002년 3월 정책평가법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정책평가가 실시되고 있다.

일본의 정책평가제도는 국가의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어 정책효과 등을 측정·분석하고 일정한 척도에 따라 객관적인 판단을 내림으로써 정책의 기획·입안 및 수행에 도움을 주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각 행정기관(부·성 및 일정한 독립성을 갖춘 조직)이 정책평가의 실시 주체가 되어 정책평가의 일차적 책임을 지며, 각 행정기관의 장은 3년 이상 5년 이하의 각 기간마다 해당 행정기관의 정책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 공표하며 매년 평가대상 정책 및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규정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정책평가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평가대상의 선정기준은 정책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활동이 5년 이상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정책을 주요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또한 정책평가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5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²⁰⁾

[표 4-22] 일본 정책평가의 일반적인 5개 기준

일반기준	내 용
필요성	- 목적의 타당성이나 행정이 담당하는 필요성 여부
효율성	- 투입된 자원량에 알맞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
유효성	- 기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
공평성	- 정책의 효과수익이나 비용 부담의 공평한 배분 여부
우선성	- 상기 관점으로부터의 평가를 근거로 다른 정책보다 우선적으로 실시해야할지의 여부

20) 문정호, “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 평가체계 정립방안 연구”, p.21

4. 요약 및 시사점

성과관리와 관련된 국내의 주요 근거법령으로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국가재정법」, 「국가연구개발 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각 법령의 구성체계와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은 국무조정실이 주관으로 공공 및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 of 통합적 관리를 위해 제정된 성과관리 관련 최상위 관련 법이며, 「국가재정법」은 중앙부처 중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별 정부예산 배분을 위해 시행되는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근거법이다. 또한 「국가연구개발 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은 특정 부처에 소속된 평가가 아닌 연구과제 및 사업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통합관리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은 국무총리실의 주도하에 정부업무 전반에 걸친 각종 성과관리 및 평가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공 및 중앙기관 조직의 자율적 역량을 강화하고 국정 of 성과관리를 위해 자체평가와 특정평가로 대표되는 정부업무평가를 시행하는 근거법이다. 「국가재정법」은 국가의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영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기획재정부 주도하에 「국가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을 위하여 재정사업자율평가를 시행한다. 평가결과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이나 유사·중복 사업 또는 지속적인 재정지출 급증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층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 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평가를 성과중심으로 체계화하여 평가하고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관리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자체평가,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등 다양한 성과관리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해외 성과관리 제도에 대한 분석에서는 각국의 정책평가 체계가 예산제도의 변천이나 행정개혁의 수단으로 강조되어 정부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정부의 책임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행정개혁이 이루어졌으며, 공공관리의 일환으로 평가체계를 재구성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평가구조는 많은 경우 행정부의 내부평가와 국가정책에 대한 외부감사로 평가체계를 이원화하고 있다. 의회소속 또는 독립적인 감사원과 행정부 내 평가전담기관으로 이원화된 평가체계는 각 기관의 자율과 분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체평가기능을 중심으로 하되, 이를 총괄·조정하는 상위 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내용을 검증받는 메타평가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구성원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집행과정에서 발견된 오류를 시정하고 개선하는 일련의 조치 등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기능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대부분 성과관리에 획일적인 평가기준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제하에 융통성 있는 평가 전략을 활용하려는 추세이며, 평가결과의 활용은 주로 평가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여 업무에 대한 책임성과 효율성을 증진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건축정책기본계획은 범부처, 범지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건축·도시관련 정책 및 예산사업에 대한 통합관리를 목적으로 수립되는 것으로 앞서 살펴본 「정부업무평가기본법」과 「국가재정법」과는 어떠한 연관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지속적인 검토와 연계가능성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연구개발 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이 정부예산의 25~30%를 차지하고 있는 건축·도시관련 사업의 통합관리를 위한 별도의 성과관리 관련법령을 제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제5장 국내 법정계획의 성과관리 체계

1. 국내 법정 기본계획의 성과관리 현황
2. 법정계획의 성과관리 운영 사례 조사·분석
3. 기존 법정계획의 성과관리 체계 종합 분석

1. 국내 법정 기본계획의 성과관리 현황

□ 법정 기본계획 수립현황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 수립·시행하는 법정계획은 기본법에 근거한 기본계획과 일반 법률에 의한 종합계획, 발전계획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²¹⁾

부처별로 운용하는 기본법이 48개에 달하며, 기본법에 의한 관련계획 44개와 관련계획을 지원하는 실천계획 49개가 수립·시행 중이다. 이러한 기본법과 일반 법률에 의해 수립되는 법정계획은 모두 합쳐 126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부처별로는 국토해양부가 가장 많은 8개의 기본법을 운용하고 있으며, 지식경제부 5개, 행정안전부 5개, 교육과학기술부 4개, 문화체육관광부 4개의 순이다.

21) 김상호, 2008, 질적특성을 고려한 건축·도시공간정책의 방향설정을 위한 연구

[표 5-1] 기본법에 근거한 법정 기본계획 현황

소관부처	연번	기본법	기본계획	수립기간	수립주체	위원회	기타 실천계획
국무총리 (1건)	1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3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성과관리 전략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계획
국토해양부 (8건)	2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제3차: '08~'12)	5	국토해양부장관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	연차별 계획
	3	건축기본법	건축정책기본계획	5	국토해양부장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지역건축정책위원회)	지역 건축기본계획
	4	국토기본법	국토종합계획 (제4차: 2000~2020)	20	국토해양부장관	-	도종합계획 지역계획(수도권 발전계획, 광역권개발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등) 부문별계획, 소관별 실천계획
	5	물류정책기본법	국가물류기본계획 (2001~2020)	10 (5)	국토해양부장관	물류정책위원회	연도별 시행계획 지역물류기본계획
	6	지속가능발전기본법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20	정부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가이행계획
	7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 (제1차: 2006~2010)	5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산업위원회	철도산업 구조개혁 기본계획
	8	토지이용규제기본법	-	-	-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
	9	해양수산업발전기본법	해양수산업발전 기본계획	10	정부	해양수산업발전위원회	-

교육과학기술 (4건)	10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기본계획 (제2차 : 2008~2013)	5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 (4건)	11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문화산업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기본계획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	세부시행계획(문화산업 각 분야별 및 기간별로 계획수립)
지식경제 (5건)	12	에너지기본법	국가에너지기본계획 (2003~2012)	5	지식경제부장관	국가에너지위원회	지역에너지계획(시·도지역에너지계획은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수립·시행)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비상계획) 수립
행정안전 (5건)	1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제1차 : 2005~2009)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행정안전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지역안전관리위원회(시·도 및 시·군·구)	사도안전관리계획 시·군·구안전관리계획 5년마다 시·군·구 재난예·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환경 (1건)	14	환경정책기본법	국가환경종합계획 (2006~2015)	10	환경부장관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 이하 생략

공정거래위원회(1), 국가보훈처(1), 국방부(2), 기획재정부(2), 노동부(2), 농림수산물부(2), 법제처(1), 보건복지가족부(4), 여성부(2)

□ 주요 법정계획의 성과관리 체계

기본법과 일반 법률에 근거하여 수립·시행되고 있는 법정계획 중 평가 제도가 존재하는 경우는 국토해양부의 ‘국토종합계획’, 환경부의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계획’, 통일부의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농림수산식품부의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법무부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보건복지가족부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건강가정기본계획’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환경부의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계획’, 법무부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평가대상이 중앙행정기관이며, 그밖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공통평가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표 5-2] 법정 기본계획과 평가제도 현황

주관기관	평가 기본계획	평가명	평가근거(법령)	평가 종류
국토 해양부	국토종합계획	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 추진실적평가	국토기본법(제18조)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공통평가
환경부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	국가이행계획추진상황 점검, 국가지속가능성평가, 법령·행정계획검토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중앙행정기관평가
통일부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연도별시행계획점검	남북관계발전기본법(13조) 시행령(제6조)	공통평가
농림수산 식품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5개년 기본계획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6,10조)	공통평가
법무부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외국인정책시행계획 추진 실적평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시행령(제5조)	중앙행정기관평가
보건복지 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공통평가
보건복지 가족부	건강가정 기본 계획	건강가정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평가	건강가정기본법	공통평가

2. 법정계획의 성과관리 운영 사례 조사분석

1) 국토종합계획의 실천계획 추진실적 평가

□ 개요

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은 지침 위주의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하고, 국토종합계획의 이념과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성격을 지닌 계획이다.²²⁾ 실천계획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²³⁾의 내용 중 집중적인 관리와 분석·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6개의 전략(자립형 지역발전 기반의 구축, 동북아 시대의 국토경영과 통일기반 조성,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 아름답고 인간적이 정주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원관리, 분권형 국토계획 및 집행체계 구축)과 각 전략별 실천과제 83개, 단위과제 150개로 이루어져 있다.

국토종합계획의 실천계획 추진실적 평가는 국토기본법(제18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매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가 수립·제출하는 소관별 실천계획이 국토종합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실천과제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22) 국토해양부 “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 평가체계 정립방안 연구”, 2007

23) 2005년 12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2006년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천계획을 수립·제출 및 평가를 실시함

[표 5-3] 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 추진실적 평가 개요

구분	내용
평가제도 명칭	-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 추진실적 평가
근거	-국토기본법 제18조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06~'20)
평가내용	-국토종합계획 소관부처별 실천계획에 대한 매년도 추진실적
평가주관 기관	-국토해양부 ('06년 평가시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평가대상 기관	-중앙행정기관(국토계획관련) -국토계획관련 광역지방자치단체
평가단위	실천계획의 사업을 평가하며, 성과목표 수준 (6대 전략 관련 150개 단위과제)
평가기준 및 지표	평가분야 2개, 평가항목 6개
평가주기	-1년 단위 평가
평가기간	-6개월(6월1일~11월30일)
평가결과 보고	-요약보고서 (평가결과 관계부처 송부) -익년도 말월
평가결과 공개	-공개안함

□ 성격과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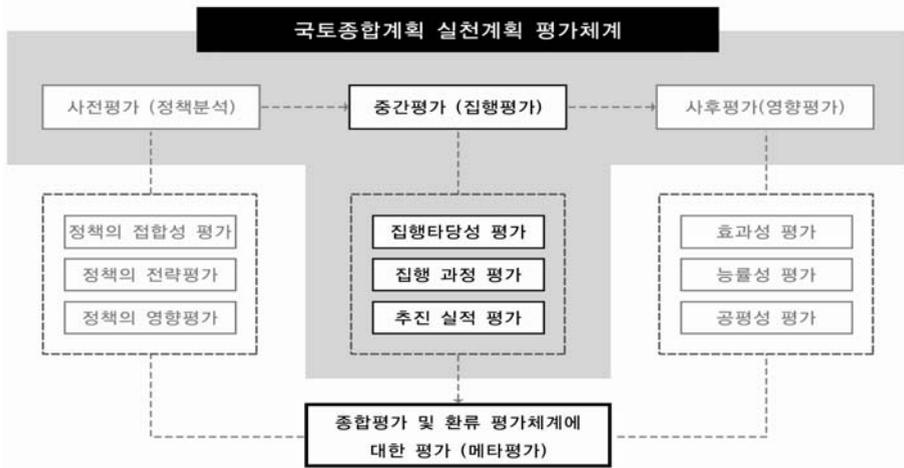
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의 평가는 정책 및 계획의 추진과정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중간평가의 성격을 지니며 정책의 추진과정 및 중간결과를 검토하고 점검하여 평가 이후의 사업추진에 있어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평가의 주요내용은 집행타당성, 집행과정 및 추진실적, 사업추진조직 등으로 구성된다.²⁴⁾

평가는 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최종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단계에서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결과물을 분석하는 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 평가적 성격을 지닌다. 평가를 통해 계획수립 및 추진을 담당하는

24) 국토해양부 “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 평가체계 정립방안 연구”, 2007

각 부처와 기관의 책임의식을 고양하고, 평가과정에서의 학습 및 지식축적을 통해 계획수립 및 추진주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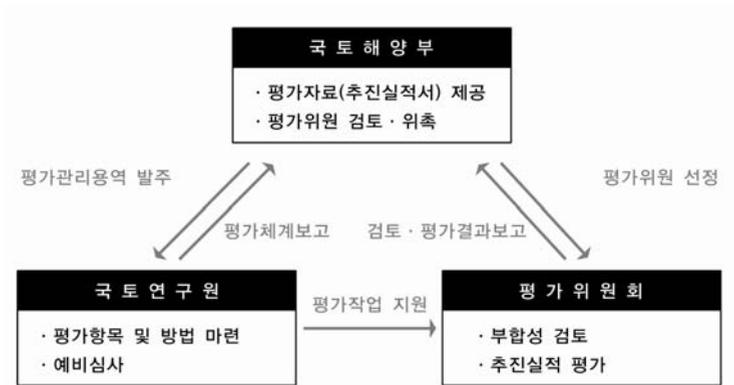
평가를 통해 계획수립 이후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환류함으로써 계획의 수정 및 보완방향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그림 5-1] 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 평가체계

□ 평가체계 및 절차

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의 평가체계는 실천계획의 부합성 검토와 추진실적 평가로 구성되며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와 국토연구원, 평가위원회가 역할을 분담하여 협력하는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실천계획 및 평가자료(실천계획 추진실적서)를 취합하고, 평가위원 검토 및 위촉 등을 지원하고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역할을 하며 국토연구원은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마련 등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국토해양부에 보고하고, 예비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지침을 토대로 실천계획의 부합성 검토 및 추진실적 평가를 수행하고 검토·평가결과를 보고한다.



[그림 5-2] 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 평가주체별 역할

평가의 추진절차에 대해 개략적으로 정리하면 먼저 실천계획 및 추진실적 취합은 국토해양부가 소관부처별로 작성한 실천과제에 대한 실천계획 및 추진실적서를 취합하며,²⁵⁾ 평가 방법 및 평가항목은 자문회의와 설문조사를 통해 설정되는데 이것이 평가의 기준으로 적용된다. 예비평가는 취합된 추진실적서를 대상으로 미리 제시된 자료 형식과의 부합 여부와 필수 제시항목 등 기초사항 충족여부를 미리 평가하게 된다.²⁶⁾ 이후 분과별 평가위원회를 소집하여 평가지침을 토대로 실천과제에 대한 부합성 검토와 추진실적 평가를 수행한다. 각 항목별 평가결과 및 항목별 가중치를 종합하여 각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에 관한 전체 평가점수(단일 평가점수)를 산출하여 평가결과를 종합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 평가항목 설정 기준 및 방향

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의 평가를 위한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은 중간평가와 정책평가의 성격을 잘 반영하여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및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설정하며,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평가항목,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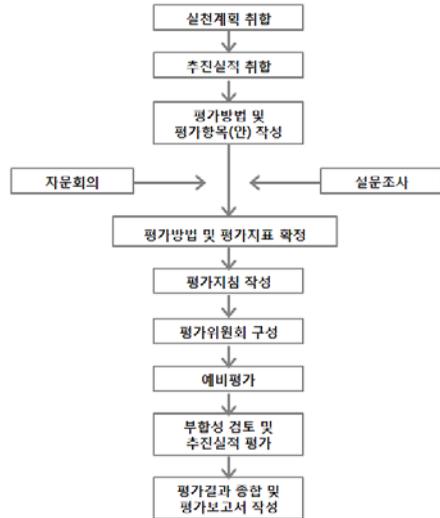
25)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7조, 소관별 실천계획그이 추진실적서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해 5월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함

26) 미충족시 보완요청 및 추진실적 평가시 감점 처리

가방법 및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확정한다.

실천계획의 평가는 계획의 추진과정 및 사업추진조직이 체계적·효율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평가의 주 목적이므로 정량적 평가보다는 정성적 평가 또는 기술적 평가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이 명확한 목적 지표 및 산출지표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성적 평가 또는 기술적 평가를 중심으로 정량적 평가를 적절히 활용하는 평가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평가의 명확한 계량화가 어려운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 및 기준의 경우 점수제보다는 등급제를 채택하고 있다.

검토·평가항목은 각 소관부처가 제출하는 실천계획 및 추진실적서에 기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자체평가와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각 담당 소관부처에서 작성하여 제출하는 자체평가 형식은 실천과제별 일반적인 현황 및 문제점, 목표 및 추진전략,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추진기간 및 투자계획, 기타 사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며, 추진실적서는 추진개요,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추진내용 및 실적, 예산집행(투자실적) 추진내용, 자체평가 종합 및 향후 대책, 기타 참고자료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검토·평가항목은 되도록 실천계획 및 추진실적서의 구성항목과 1:1로 대응되도록 설정함으로써 평가의 용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림 5-3] 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 평가절차

□ 평가항목

2006년 실천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에서는 83개 실천과제(150개 단위과제)를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국토종합계획과의 부합성 검토와 실천과제 추진실적 평가로 나뉘는 2개 평가분야와 6개 평가항목으로 구분되어 검토가 이루어졌다.

[표 5-4] 2006년 실천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항목

	검토항목	검토내용
실천계획 부합성 검토항목	목표의 적 합성	-계획의 목표나 유형이 정책적 입장에서 바람직한가? -해당 계획을 꼭 추진해야 할 필요성(필연성)이 있는가? -국토종합계획이 제시하는 세부전략에 적합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가? -전체목표 및 연차별 목표 등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 되었는가?
	세 부 수 단 의 충실성	-국토종합계획이 제시하는 세부전략을 구현하기에 적합한 수단을 구사하고 있는가? -국토종합계획의 전략을 구현하기에 충분한 수단을 구비하고 있는가? -계획의 내용 추진방법, 추진체계 등이 다른 대안들보다 그 목표들을 더욱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인가?
	과정 및 절차적 적 절성	-계획 수립 이후 여건변화를 고려할 때 실천계획의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하는가? -단계별 추진계획 등이 전단계 또는 후속단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적절한 정차 및 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가?
실천과제 추진실적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내용
	계 획 대 비 추진실적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 내용이 원래의 실천계획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는가?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 결과가 당초의 계획에 맞는 수준으로 집행 되었는가?
	시 행 과 정 의 적절성	-초기 계획된 일정에 의거하여 집행되고 있는가? -집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 적절한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집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의 변화를 적절히 고려하고 있으며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예 산 집 행 의 적절성 (예산사업 에만 적 용)	-정책 또는 사업의 예산집행 내용과 일정이 원래의 실천계획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는가? -예산 집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의 변화를 적절히 고려하고 있으며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또한 투입된 예산을 목표달성(결과)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가?

국토종합계획과의 부합성 검토는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의 목표를 충실히 수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 및 기본방향을 달성하기에 적절한 계획인가를 검토하기 위해 목표의 적합성, 세부수단의 충실성, 과정 및 절차상의 적절성 등 3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정성적으로 검토한다. 실천과제의 추진실적 평가는 각 소관부처에서 추진·집행하고 있는 실천과제가 연차별 실천계획의 목표를 충실히 추구하고 있으며, 계획된 내용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있는지를 검토함과 동시에 집행과정상 장애요인 등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항목은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으로 구분하여 모든 부문에 적용되는 공통항목과 예산사업에만 적용되는 특수항목을 설정하여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공통항목은 계획대비 추진실적, 시행과정의 적절성(추진일정의 적시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상황대응성) 등 항목으로 구성되며, 특수항목은 예산집행의 적절성(계획대비 예산집행실적, 예산집행 적절성 등) 등을 다룬다.

□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위원회는 실천과제별 추진실적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는데 국토해양부, 관련학회 및 전문가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분야별(6대 전략분야별)로 최소한 5~7명 정도로 구성한다. 예를 들어 각 분과별로 국토정책위원회 2~3인,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참여연구진 및 관련분야 전문가 3~4인 등 분과별 5~7명의 평가위원을 위촉한다.

2006년 실천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에서 평가위원회는 총 4개 분과로 구성되었으며 각 분과별로 3명의 평가위원을 위촉하여 총 12명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되 각 분과별로 국토정책위원회 위원이 최소 1명씩 포함되도록 하였다.

평가위원회는 전문분야 또는 6대 전략별로 복수의 분과를 두어 해당분야의 평가를 전문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1분과는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의 구축(I), 동북아시아의 국토경영과 통일기반조성(II), 분권형 국

토계획 및 집행체계 구축(Ⅲ) 등 3개 분야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평가위원회의 평가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운영하며, 지원기관이 제공하는 평가지침과 평가방법을 숙지하고 평가자료를 기초로 하여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 평가절차

평가는 1년 주기로 이루어지며 평가기간은 6개월로 6월1일부터 11월30일로 정해졌다. 일례로 2007년에 이루어진 평가 일정은 다음과 같았다.

- 2007.5 : 2006년 추진실적 평가서 제출요청
- 2007.6 : 평가체계 및 방법초안 마련
- 2007.8 : 중앙부처 소관별 추진실적 취합
- 2007.9.7 : 평가위원회 인선 및 섭외 완료
- 2007.9.13 : 1,2분과 평가위원회 개최
- 2007.9.14 : 3,4분과 평가위원회 개최

※ 평가지침 및 평가자료 배부, 평가방법 및 주의사항 전달

- 2007.9.15~10.12 : 실천계획 평가 및 위원별 평가결과 취합
- 2007.12 : 평가보고서 작성
- 2007.12~ : 국토종합계획 평가결과 국토정책위원회 보고 및 관계부처 통보

2)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 성과관리

□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 개요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전략 및 이행계획은 22개 부처가 공동 참여하고 향후 5년간 추진할 48개의 이행과제²⁷⁾로 구성되어 있다. 2002년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를 계기²⁸⁾로 2005년 6월 ‘국가지속가능발전비전(경제·사회·환경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선진국가)’을 발표하고, 2006년 10월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06~’10)’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이행계획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수립된 경제·사회·환경의 통합·연계계획으로 실질적인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및 평가시스템 기반을 마련하게 됨으로써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행과제별 성과지표, 국가지속가능성지표에 근거)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 발전의 과정을 거칠 수 있게 되었다.

이행계획의 내용은 2006~2010년에 추진할 5대 핵심 정책분야, 48개 이행과제, 223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행계획의 내용에 근거한 성과관리의 구성체계²⁹⁾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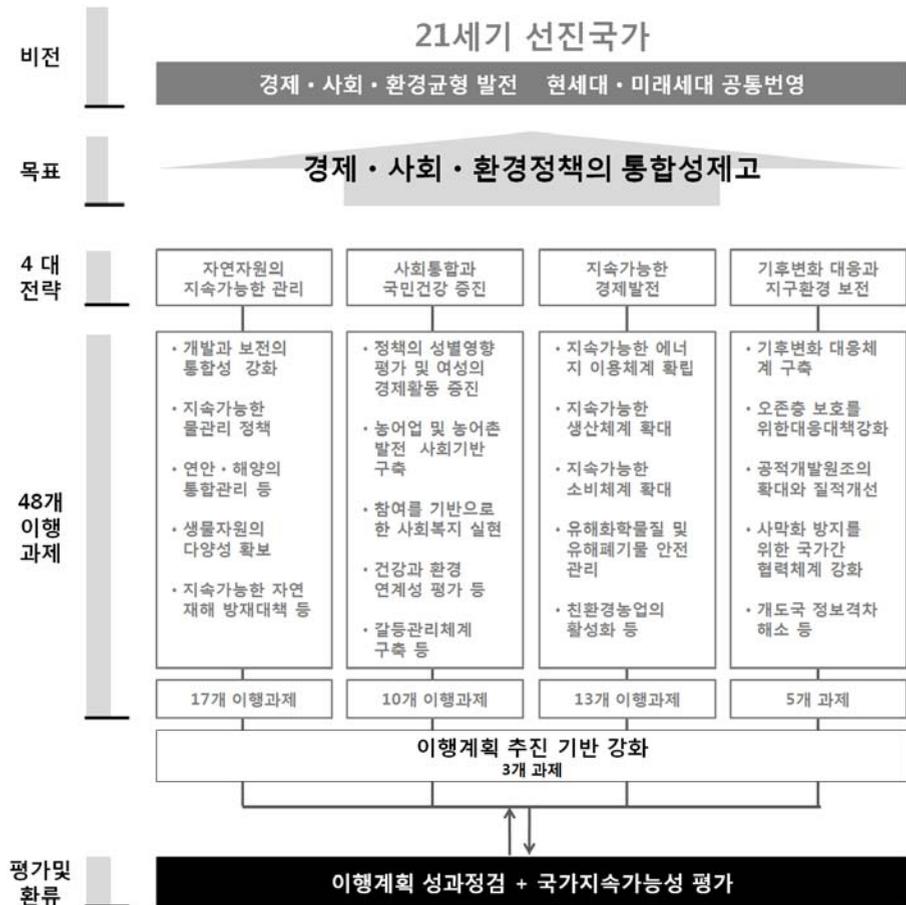
[표 5-5] 이행계획의 내용 구성

5대 분야	이행과제(48개)	세부과제(223개)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17개	89개
사회통합과 국민건강 증진	10개	39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13개	65개
기후변화 대응과 지구환경 보전	5개	20개
이행계획 추진기반 강화	3개	10개

27) 비전연시 제시된 이행과제, 2002 WSSD 이행과제, 국정과제·인수위 과제, UN 새천년선언 과제 등

28)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자치로서 ‘05년까지 지속가능발전 국가전략과 이행계획 수립을 함의

29)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



[그림 5-4]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 성과관리 구성체계

□ 평가의 개요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의 성과관리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제6조, 제9조) 및 동법 시행령(제4조, 제9조)에 근거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매5년마다 수립·추진하는 국가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중앙행정기관이 스스로 평가하며, 그 결과는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점검하고 있다.

[표 5-6]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 성과관리 평가 개요

구 분	내 용
평가제도 명칭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 성과관리
근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6조, 제9조 및 시행령 제4조, 제9조
평가내용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각 중앙행정기관은 5년 단위 이행계획을 수립·제출하고, 매 2년마다 추진실적을 스스로 평가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에 위원회가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결과를 통보하고 있음
평가주관 기관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중앙행정기관(국가이행계획 추진상황을 중앙행정기관 자체 평가)
평가대상 기관	-중앙행정기관(국가이행계획을 수립하는 중앙행정기관, 국가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개정 또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행
평가단위	-사업평가 -성과목표 수준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국가이행계획의 성과목표, 지속가능발전 지표
평가기준 및 지표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4대전략 및 48개 이행과제, '06.05),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사회·환경·4경제 3개분야 77개 지표, '06.10)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시행('08.04.16)에 따라 새로운 국가지속가능 발전기본전략, 국가이행계획, 지속가능발전지표 수립 추진('08~'09)
평가주기	-국가이행계획 추진상황 점검 및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 2년 단위 -주요 법령 및 행정계획 검토: 수시
평가기간	-2년마다 익년 2월 말까지 제출
평가결과 보고	-국가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평가결과 공개	-공개: 관련 홈페이지 (www.pcsd.go.kr)

* 이광희, 2008, 정부업무 평가제도 조사 및 정비방안

□ 평가방법

부처별 이행계획 추진실적은 부처별 이행계획 담당관(이행계획 T/F팀)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이행과제별 성과지표에 따라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하며, 추진실적 내용을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가지속가능성지표는 2년마다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되며, 필요시 부처별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보완 수정하게 된다. 2002년 요하네스버그 세계정상회의(WSSD) 합의사항에 따라, UN에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행성과를 정기적으로 국제사회에 소개함으로써 대외적 위상 제고 및 이니셔티브를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 평가항목

이행계획의 평가는 소관부처별로 이행과제별 성과지표를 선정하여 자체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각 이행과제별 세부과제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부합하는 적절한 성과지표가 설정되고, 주로 정량적인 평가기준을 갖도록 구성되어 있다.

[표 5-7] 이행계획 세부과제별 성과지표

세부과제	성과지표
1.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17)	
1-1 안전한 먹는 물 공급 확대	
1-1-1. 수질기준 강화	수돗물 수질기준 초과율
1-1-2. 수도시설 증설 및 개량	상수도 보급률, 수도시설 확충 용량, 노후관 개량 실적
1-1-3. 운영관리체계 효율화	상하수도 정보화 장기종합계획 추진 실적
1-1-4. 취약지역의 먹는 물 위생관리체계 강화	지역별 상수도 보급률(농어촌, 도시지역)
1-1-5. 상수원 확보 및 대체수원 개발	대체상수원 총량(강변여과수, 지하수, 식수용 저수지)
1-2-가. 수자원 통합관리 및 효율적 이용체계 구축(건교부)	
1-2-가-1. 수자원 개발 및 공급제도의 개선 방안	수자원 총공급능력 및 1인당 이용가능량
1-2-가-2. 수자원 통합관리 방안	용도별 배분량 평가 실적
1-2-가-3. 물 재이용 체계의 강화 방안	한국형 용수재이용 연계공정 기술 개발 실적
1-2-가-4. 지속가능한 지하수 관리체계 구축	지하수 정보화시스템 구축 실적
1-2-나. 수자원 통합관리 및 효율적 이용체계 구축(환경부)	
1-2-나-1. 하수 재이용체계의 구축	하수처리수의 재이용률
1-2-나-2. 합리적 물 가격체계 마련	수도요금 현실화율
1-2-나-3. 수돗물 수요관리정책 강화	절수 인프라 구축 실적
1-2-나-4. 지하수의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구축	국가 지하수 수질측정망 측정지정수
1-3 수자원네트워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1-3-1. 국가 유량측정망 구축	연도별 유량 및 수위 측정 지점 및 횡수
1-3-2. 유량 및 수위측정 확대	(위 세부과제 지표에 통합 반영)
1-3-3. 원격자동 유량측정 등 수문조사 자동화	수문조사 자동화율
1-3-4. 물관리 공동자료 확대 및 기능 개선	물관리 공동자료 DB구축 실적
●●● 이하생략	

국가지속가능성지표는 국내 지속가능발전 수준을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진단하기 위해 77개의 지표가 선정되어 있는데, 사회·환경·경제 등 3개 분야에 14개 영역, 33개 항목으로 분류되며, 앞으로의 추이나 여건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될 예정이다.

[표 5-8] 77개 국가지속가능성 지표(SDI,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

분야	영역	항목	지표	비고		
				UN	OECD	비전 2030
사회	1.형평성	1-1.빈곤	01) 빈곤인구비율(상대빈곤율기준) (%)	○		○
			02) 소득불평등에 관한 지니계수	○		
			03) 실업률(%)	○	○	
	1-2.노동	1-2.노동	04) 평균 근로시간		○	○
			05) 정규직대비비정규직임금수준(%)		○	○
			06)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		○
	1-3.남녀평등	1-3.남녀평등	07)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	○
			08) 유소년 영양 상태 (기준대비 %)	○		
			09) 영아 사망률(%)	○	○	○
	2.건강	2-1.영양상태	10) 평균수명	○	○	○
			11)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		○
			12) 건강보험보장률(%)	○		○
			13) 국가보건복지지출		○	
			14) 유소년 전염병 예방주사(%)	○		
	3.교육	3-1.교육수준	15) 중등학교 순졸업률(%)	○		
			16)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	○
			17) 교육비 (공교육비,사교육비) 지출		○	
4.주택	4-1.생활환경	18) 1인당 바닥 면적	○			
		19) 인구 1000명당 주택 수		○		
		20) 무주택자 비율(%)				
5.재해·안전	5-1.범죄	21) 1000인당 신고된 범죄 수	○			
		22) 자연재해 인명피해·경제적 손실	○			
6.인구	6-1.인구변화	23) 인구 증가율(%)	○	○		
		24) 인구 밀도(명/km2)				
		25) 고령인구비율(%)		○		
환경	1.대기	1-1.기후변화	26) 온실가스 배출 (Gg)	○		
			27)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	○	
			28) GDP당 온실가스 배출량		○	
	2.토지	2-1.농업	29) 오존파괴물질의 소비	○		
			30) 광역도시권별 대기오염도(ppm)	○		○
			31) 농지면적 비율(%)	○		
2.토지	2-1.농업	32)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비율(%)			○	
		33) 식량자급률(%)	○	○		
		34) 비료(질소,인) 사용 (kg/ha)	○	○		
		35) 농약 사용 (kg/ha)	○	○		
2.토지	2-2.산림	36) 국토면적 중 산림지역 비율(%)	○			
		37) 도시내 1인당 공원면적	○		○	
		38) 목재 벌채 정도 (임목축적량대비)	○			
		39) 도시화율 (%)	○			
2.토지	2-3.도시화	40) 수도권 인구 집중도(%)			○	

환경	3. 해양/연안	3-1. 연안지역	41) 연안 해조류 (클로로필A등) 농도 42) 폐기물 해양 투기량 43) 갯벌면적 증감 면적 및 비율	○				
		3-2. 어업	44) 수산자원량 (만톤) 45) 어업양식량 (만톤)	○	○	○		
	4. 담수	4-1. 수량	46) 지하수 및 지표수의 연간 취수량 47) 1일 1인당 물소비량	○	○			
		4-2. 수질	48) (4대강 평균) BOD, COD, SS, pH 농도 49) 하수도보급율(%)	○	○	○		
	5. 생물 다양성	5-1. 생태계	50) 자연보호지역비율(%) 51) 국가생물종 수 52) 멸종위기종 수	○ ○ ○	○ ○ ○	○		
경제	1. 경제 구조	1-1. 경제이행	53) 1인당 GDP 54) GDP 55) 경제 (실질GDP) 성장률(%) 56) GDP 대비 투자분(%) 57) 소비자물가지수	○ ○ ○ ○ ○	○ ○ ○ ○ ○			
			1-2. 무역	58) (상품과 서비스) 무역수지	○			
			1-3. 재정상태	59) 국민 1인당 조세부담율(%) 60) 부채/GDP(%)	○ ○	○ ○		
				1-4. 대외원조	61) GNI대비 총 ODA	○	○	○
			2. 소비/ 생산	2-1. 물질소비	62) 원료이용도 (GDP 1000\$당)	○		
	2-2. 에너지 사용	63) 1인당 연간 에너지 소비 64) 총에너지 공급량 (에너지원별) 65) 재생가능에너지자원 소비 비중 66) 에너지 원단위(MJ/US\$)		○ ○ ○ ○	○ ○ ○ ○	○		
		2-3. 폐기물 관리		67) 산업 및 도시 고형폐기물 발생량 68) 유해 폐기물 발생량 69) 방사성 폐기물 발생량 70) 폐기물 재활용 및 재이용	○ ○ ○ ○	○ ○ ○ ○		
				2-4. 교통	71) 교통수단별 수송 분담률 72) 도로 및 자전거 도로 총 연장 73) 자동차 사고건수(100만명당, 100만대당)	○ ○ ○	○ ○ ○	
	3. 정보화 등			3-1. 정보접근	74)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 75) PC보유가구비중	○	○	○
				3-2. 정보인프라	76) 온라인 신청가능 민원종류건수			○
		3-3. 과학기술	77) GDP 대비 R&D에 대한 지출	○	○			

3) 여성정책기본계획 이행상황 점검

□ 평가의 개요

여성정책기본계획 이행상황 점검은 여성발전기본법(제8조,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제9조)에 근거하여 여성부가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있는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조정 및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표 5-9] 여성정책기본계획 이행상황 점검 개요

구분	내용
평가제도 명칭	-여성정책기본계획 이행상황 점검
근거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9조
평가내용	-5년 마다 수립되는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제출하고, 여성부는 이를 조정하고 이행상황을 점검 함
평가주관기관	-여성부
평가대상기관	-중앙행정기관 (21개 참여부처)
평가단위	-사업평가
	-성과목표 수준
	-여성정책인프라, 여성정책기본계획 이행결과보고, 지방자치단체 특화사업 이행결과 보고
평가기준 및 지표	-분야별로 평가 항목과 항목별 세부내용을 포함한 작성 지침 제시
평가주기	-매년 평가
평가기간	-
평가결과보고	-실적 보고서 작성
평가결과공개	-

□ 여성정책기본계획의 개요

여성정책의 기본방향과 함께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 증진 등에 관한 정책 목표와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범정부 차원의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매 5년마다 수립된다.³⁰⁾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된 이래 3차례에 걸친 여성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현재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08~’12)이 시행중이다.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비전으로 정하고 이에 따른 5개 정책과제, 구체적 실현을 위한 15개의 정책영역, 53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30) 변화순, “여성정책기본계획 이행상황 점검 개선방안 연구”, 2008

[표 5-10] 여성정책기본계획의 구성 및 과제

정책과제	정책영역	세부과제
1. 국가 운영에 주도적 참여	1. 국가 정책의 성 주류화	1. 성별영향평가 실효성 확보 2. 성인지 예산제도 기반 확대 3. 공무원 성인지 교육 체계화
	2. 통합적 여성정책 추진	1. 여성정책 협의조정 강화 2. 시민사회와의 협력
	3. 의사결정에 참여 확대	1. 공직 여성참여 확대 2. 기업 여성 관리직 확대
2. 여성의 복지와 인권 강화	1. 여성의 건강 및 복지 강화	1. 여성 보건의료서비스 증진 2. 여성 복지 서비스 강화 3. 여성장애인 권익 증진 4. 여성의 빈곤 해소
	2.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실효성 제고	1.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2. 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내실화 3. 가해자 처벌 및 교정치료 강화
	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자활지원 내실화	1.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2. 피해여성 인권보호 및 자활지원 내실화 3. 성매매에 대한 단속·처벌 강화
3.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1. 여성 일자리 확대	1. 성장동력 분야 여성일자리 확대 및 제도개선 2. 기업 여성인력 수요 활성화 3. 여성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
	2. 여성의 평생 직업능력 개발	1. 청년여성층의 진로지도 및 경력개발 지원 2. 근로여성의 전문능력 개발 3. 경력단절여성의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3. 여성근로자 차별 해소 및 보호	1. 노동시장내 성차별 해소 2. 여성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3. 비공식부문 여성근로자 보호
4. 돌봄의 사회적 분담	1. 보육 및 교육 서비스 강화	1.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2. 수요자중심 보육서비스 제공 3. 보육서비스 질 향상
	2.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	1. 가정내 양육지원 서비스의 다양화 2. 돌봄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충 3. 돌봄 서비스 관리체계 구축 4. 가정내 돌봄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지원
	3. 일-가정 양립	1. 모성보호제도 활성화 2. 남성의 육아 및 가사활동 참여 3. 가족친화적 직작환경 조성
5. 사회통합과 평등문화 정착	1. 평등문화 확산	1. 남녀가 함께하는 평등문화 조성 2. 양성평등 미디어 활성화 3. 양성평등 교육 확대
	2. 다양성 존중과 사회적 통합	1.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수용성 제고 2.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 지원 3.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
	3. 여성 교류협력 강화	1. 남북한 여성협력 활성화 2. 국제협력 강화

□ 평가의 주요방향

중앙정부에서 제시한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뿐 아니라 지자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립된 기본계획까지 포괄하여 자율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중앙정부에서 견인하는 여성정책의 주요방향이 지자체 여성정책에 반영됨과 동시에 지자체의 특수성과 자율성이 고려될 수 있는 이행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성정책의 주요 방향에 대한 정합성 점검을 위해 표준화, 체계화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여성정책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확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성정책기본계획의 모든 사업에 대해 보고하지 않고 각 영역별로 공통 보고내용을 우선 선정하고, 광역자치단체의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내용의 수량을 명확히 작성지침에 기재함으로써 성과관리에 대한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 평가대상 및 방법

평가는 3개의 보고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토대로 15개 영역별 주요 정책이행사업 제시, 주요 정책이행사업에 대한 시행 실적 보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실적에 대한 별도보고가 대상이 된다.

실적보고서는 양식의 표준화와 체계화를 위해 계획대비 달성도(%)를 기술하도록 하며 정성적 수준의 이행결과는 평가에서 삭제하고 필요시 정량보고와 정성보고의 영역을 구분하도록 하고였다. 해당 영역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대표적 여성정책을 중심으로 이행실적을 보고하며, 시행실적과 시행계획을 함께 보고함으로써 과제의 연속성과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평가항목

평가는 총 3부분으로 구성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³¹⁾

- Part Ⅰ :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인프라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추진 인프라 현황파악을 목적으로, 세부항목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로 항목별 수치 혹은 설명을 작성한다.

[표 5-11] 여성정책기본계획 Part Ⅰ 이행점검표 작성항목

항목	세부항목
1. 여성정책전담부서 예산	• 총액 • 지자체 총예산대비 비율
2. 여성정책전담부서 담당인력	• 총인원수 • 5급 이상/이하 분포
3. 여성정책전담부서 소관 조례	• 조례 명칭 • 제정 시기(년월)
4. 자체 여성정책기본계획	• 명칭 • 제정시기
5. 광역 및 기초의회 여성의원	• 기초의회 여성의원수 • 기초의회여성의원수/전체기초의회 의원수 • 광역의회 여성의원수 • 광역의회 여성의원수/전체광역의회 위원수
6. 여성정책전담부서 소관위원회	• 명칭 • 위원회별 남녀위원수
7. 지자체 소속 여성연구기관	• 명칭 • 설립년도 • 인력(연구인력/사업인력/행정인력 구분) • 조직형태(독립기관 또는 센터 또는 팀인지여부)
8. 여성공무원	• 총인원수 • 직급별 남녀비율
9. 여성관련시설	• 시설유형별 시설수

31) 실적보고의 작성양식과 세부지침으로 제안됨. 변화순 “여성정책기본계획 이행상황 점검 개선방안 연구”, 2008

- Part II : 여성정책기본계획 이행결과 보고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기준으로 5개 정책과제, 15개 정책영역별로 계획의 주요 정책과제 혹은 각 지자체에서 자체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른 여성정책의 이행결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이를 위해 각 정책영역에 대해 실제 지자체에서 추진한 사업의 내용, 해당사업에서 설정한 목표치와 목표 대비 달성도 등을 보고토록 하고 있다.

평가항목은 공통(Ⅱ-1)과 선택(Ⅱ-2)으로 구분하여 보고되는데 공통부문은 주요 정책이행사업의 내용을 참고하여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한 사업결과를 16개 시·도 가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선택부문은 15개 주요 정책이행사업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자체에서 수행한 사업에 대한 이행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표 5-12] 여성정책기본계획 Part II 이행점검표 작성항목

항목	세부항목	내 용	
1	과제명	중과제 수준의 정책과제명 예)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1-1 수준임	
2	정책사업	중과제 수준의 정책과제 목표를 위해 설정된 사업과제 예) 주요정책 이행사업의 목록에 제시된 내용과 일치	
3	2008년도 추진실적	사업내용	· 2)의 정책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행한 사업 명칭 및 내용을 각각 1줄 정도로 소개 · 제시하는 시행사업 수는 3개 이내로 제한 · 사업선정기준: 2)를 시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적절성, 대표성, 예산규모 등의 측면에서 중요도를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함 · 사업의 수준: 예결산서의 세부사업 수준 · 선택사업의 경우 선정근거를 제시할 것
		예산	· ①에 제시한 개별 사업에 대한 예산관련 내용임
		사업명	· ①에 제시한 개별 사업명을 쓰되 명칭이 동일해야 함
		예산액	· ①에 제시한 개별사업 예산액을 기록함 · 예산배정이 없을 경우는 비예산으로 표시함
		집행액	· ①에 제시한 개별사업 집행한 금액을 기록함
		2008년도 추진실적	· 2008년도 추진실적을 기술함
		사업명	· ①과 ③에 제시한 개별 사업명을 쓰되 명칭이 모두 동일하여야 함
		계획	· 해당연도 사업목표 및 계획을 기술함 ※ 계획 변동시 변경 사유를 표 하단에 별도로 '※' 표시하고 기술함
		실적	· 사업실적을 기술함
목표달성도 (실적, 계획)	· 계획대비 실적을 비율로 나타냄		
추진근거	· 법령, 지자체 자체 조례 등 사업추진 근거 제시 ※ 각 사업별 개별 근거가 있을 때는 별도 명시할 것		
4	2009년도 계획	사업내용	· 2)의 정책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09년도 시행예정인 사업 명칭 및 내용을 각각 1줄 정도로 소개 ※ 지속사업, 새로운 사업으로의 전환/변경 등 가능함.
		2009년도 추진계획	· 위에서 제시한 시행예정 사업에 대한 2009년도 추진계획임
		사업명	· 개별 사업명칭을 쓰되 ②에 제시한 명칭과 동일하여야 함
		예산	· 개별사업 예산액을 기록함
		목표량	· 사업목표량을 제시하고 계량화된 목표치를 설정함. 명, 개, 개소 등
추진근거	· 법령, 지자체 자체 조례 등 사업추진 근거 제시 ※ 각 사업별 개별 근거가 있을 때는 별도 명시할 것		
5	2009년도 개선조치 및 필요 사항	· 지자체 수준과 중앙 수준으로 구분하여 기술 · 지자체 수준에 대해선 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 및 개선사항 중심, 중앙 수준에서는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조치 등에 대해 간략히 기술	

- Part Ⅲ : 지방자치단체 특화사업 이행결과 보고

지자체의 여성정책을 대표하는 여성정책 모범사례, 다른 지자체에 홍보하고 싶은 시범사례, 지자체의 특수여건을 고려한 특화사업 등에 대해 정성적으로 보고한다. 이 보고는 지자체별로 3건 이내로 하며,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이 가능하도록 사업의 특징적인 측면을 잘 부각하여 서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표 5-13] Part Ⅲ 이행점검표 작성항목

항목		내용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사업추진의 배경)	· 사업이 필요한 구체적인 지자체 여건 · 사업추진의 배경
2	사업내용	-
3	사업추진 방법	· 예산, 추진근거 (조례 등)
4	추진실적 및 성과	· 정량적/정성적 차원 모두 평가
5	사업에 대한 평가	· 사업 성공요인 · 지역의 여성정책 발전에 기여한 점 등
6	개선 보완사항 및 향후 계획	-
7	다른 지자체를 위한 벤치마킹 포인트	-

□ 평가결과 (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시행실적 및 시행계획 분석 결과)

지침 및 관련계획 작성상의 문제로는 과제 목표와의 불일치성, 과제 선정의 부적합성, 계획수립 단위의 일관성 미흡, 실적보고 양식 내용의 충실성 미흡, 계획 및 실적의 계량화 방법에 대한 구체적 기준 미흡, 지자체의 특수성을 반영하기에 불충분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운영상의 문제로는 실적보고 및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된 지침 및 양식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교육의 미흡, 체계적인 현장점검의 미흡, 지자체의 여성정책 추진 여건의 열악, 환류의 문제, 전년도 사업실적 보고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는 환류체계 미구축 등이 지적되었다.

4)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 평가의 개요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제4조)에 근거하여, 매년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수립·시행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사업별 추진실적과 정책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표 5-14]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개요

구분	내용
평가제도 명칭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 4항 및 시행령 제4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
평가내용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점검하고 정책효과를 분석, 평가하여 정책실효성 제고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시행계획 사업별 추진실적 평가와 성과지표에 의한 정책분야별 성과평가 실시
평가주관 기관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평가대상 기관	-15개 중앙행정기관 및 16개 관역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가족부,교과부,행안부,문화부,농식품부,환경부,노동부,국토부,지식경제부,금융위원회,여성부,법무부,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국방부,경찰청
평가단위	-사업평가 -전략목표 15개 부처가 공동참여하는 중장기적 범정부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목적의 매년 평가임
평가기준 및 지표	-1차평가: '07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상의 4대 분야 227개 과제의 추진성과(예산집행률, 사업목표달성률 등) -2차평가: 객관적 지표에 의한 정책성과평가(중앙부처 67개, 지자체 25개 지표)
평가주기	-1년 단위 평가
평가기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는 도입단계로, 평가기간은 매년 다소 유동적임 -'07년 추진실적 성과평가의 경우 평가체계 개선작업을 포함해 총 10개월 소요: 08년3월25일~08년 12월25일
평가결과 보고	-종합분석보고서 -익년도 3월말
평가결과 공개	-관련부처 담당자에게 인쇄보고서 배포 -평가요약결과 보도자료 배포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개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대통령직속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되면서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2020년까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5년마다 단계적 목표를 설정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1차 계획(2006~2010년)은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및 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³²⁾

1차 기본계획에서는 추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개의 추진전략(저출산 분야, 고령화분야, 성장동력분야, 교육홍보분야로 구분)과 13개의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32) 보건복지가족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06~2010, 새로마지플랜 2010”

[표 5-15] 제1차 기본계획의 구성 및 내용

기본계획 목표	추진전략	추진과제
1차 기본계획 목표 (2006~2010) 출산율 하락추 세 반전과 고령 사회 적응기반 구축	(저출산 분야) 출산과 양육에 유리 한 환경 조성	1.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2.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고령화 분야)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4.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5. 노인건강 및 의료보장 내실화 6. 주거·교통·문화 등 안전하고 활기찬 노 후생활기반 조성 추진
	(성장동력 분야)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	7.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8. 인적자원의 경쟁력과 활용도 제고 9. 고령사회 금융기반 조성 및 고령친화산 업 육성 추진
	(교육·홍보 분야) 저출산·고령사회 대 응 사회분위기 조성 과 정책 효과성 제 고	10. 전략적 교육·홍보 11. 정책공동체 구축 및 사회적 합의 유도 12. 중앙·지자체간 연계 강화 13. 정책 성과관리체계 구축 추진
	2차 기본계획 목표(2011~2015) : 점진적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공고화	
	3차 기본계획 목표(2016~2020) : OECD 국가평균수준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성공적 적응	

각 부처별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은 4개의 분야별로 구체적인 사업을 시
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분야별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³³⁾

- 저출산분야 : 보육비 지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지원, 아
이돌보미서비스 확대, 산전검사포 지원, 모성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산모도우미 지원, 국가 필수예방접종
확대, 국내입양 활성화, 드림스타트 사업 확대
- 고령화분야 : 기초노령연금지급, 노인 구강건강 증진, 치매조기발
견 및 예방,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 노인일자리 지
속 확대
- 성장동력분야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고령친화 우수제품 개발 지원
- 교육홍보분야 : 국민인식 개선 등

33) 보건복지가족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09년 중앙부처 시행계획”

□ 평가의 목적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각 부처의 다양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통의 전략목표와 분야별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평가체계를 제도화하였다. 평가실시 이후 평가결과를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이나 예산편성, 기관평가 등으로 환류하여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저출산·고령화사회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 평가체계 및 내용

보건복지부가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평가지침을 통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기관별로 시행사업에 대한 자체평가가 이루어진다. 15개 중앙부처와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매년 수립·시행되는 시행계획의 각 사업별 추진실적을 평가(1차평가)하고, 분야별 성과지표를 통해 기본계획의 정책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2차평가)하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다. 각 사업의 평가는 시행주체인 각 기관에서 성과목표와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스스로 사업의 목표치를 선정하여 시행계획과 개별정책이 전체적 목표에 부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성과평가의 결과는 익년도 시행계획 수립시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이나 예산편성 등에 환류되며 각 기관의 평가에도 활용된다.³⁴⁾

각 부처와 기관에서 정하는 사업의 성과목표는 주로 정량적인 성과지표와 산출로 평가되며, 2008년 시행계획에 대한 사업의 성과지표 사례는 다음과 같다.

34) 제2차 기본계획('11~'15) 수립시 사업별 우선순위 결저, 매년 예산편성 등의 기본적 판단자료로 활용됨

[표 5-16] 여성가족부의 시행계획 성과지표(예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계산방식)	목표치	산출근거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가족친화제도 도입 확대	컨설팅 기업수	3개 기업	맞춤형 컨설팅 비용을 감안하여 목표치 하향 조정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가족친화 인식제고	가족친화 교육 실시 횟수	170회	'07년 150회 기준

[표 5-17]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시행계획 성과지표(예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계산방식)	목표치	산출근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참가자수	프로그램에 참석한 학생수	8,400명	150개 아카데미의 주간보고서 집계
	참가자 만족도	제3의 기관에서 연2회 조사하는 만족도 조사결과	84점	1차 만족도 표본조사
	지역사회 연계지원 활동 횟수	지역의 인적 물적 인프라 활용	15,400회	150개 아카데미의 보고서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가족부장관 위원회로 조정, 2008.4)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대통령직속의 위원회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두고 당연직위원 10명(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10개의 중앙부처 차관), 위촉직위원 11명(각계 대표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 업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중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전망,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시행,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조정 및 평가 등을 심의한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며 위원장을 포함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이 위원장이 된다.

3. 기존 법정계획의 성과관리 체계 종합 분석

□ 요약 및 시사점

「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의 평가」는 정책 및 계획의 추진과정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사업의 효과성이나 능률성을 평가하기보다는 사업집행의 타당성, 집행과정 및 추진실적, 사업추진 조직 등을 평가하여 사업추진에 있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천계획의 실천과제(83개)와 단위과제(150개)를 대상으로 2개의 평가분야(국토종합계획과의 부합성 검토와 실천과제 추진실적 평가)와 6개 평가항목(목표의 적합성, 세부수단의 충실성, 과정 및 절차적 적절성, 계획대비 추진실적, 시행과정의 적절성, 예산집행의 적절성)으로 구분되어 검토가 이루어진다. 검토내용은 정량적인 수치보다는 정성적 평가 또는 기술적 평가를 중심으로 평가체계가 구축되는 것이 특징이다. 평가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전략별로 복수의 분과를 두어 분과별 5~7명의 국토정책위원회, 국토종합계획 참여연구진,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의 성과관리」는 5년마다 수립·추진하는 국가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2년 단위로 평가하며, 중앙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이행과제별 성과지표를 선정하고 스스로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행계획은 5대 핵심 정책분야, 48개 이행과제, 233개 세부과제로 구성되며, 세부과제별 내용에 부합하는 성과지표는 주로 정량적인 평가기준을 갖게 된다. 국가지속가능성 지표는 국내 지속가능발전 수준을 객관적인 지표(사회·환경·경제 3개의 분야 77개 지표)를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필요시 이행계획을 수정·보완한다.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기본전략 및 이행계획을 수립·변경하고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여성정책기본계획 이행상황 점검」은 연도별 시행계획(5대 정책과제, 15개 정책영역, 53개 세부과제)의 추진상황을 해당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이행·점검하고, 그 결과를 여성부에 보고하는 형식을 지닌다. 평가는 여성정책 주요 방향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대표적인 여성정책의 이행실적을 보고하며 과제의 연속성과 변경 여부 등이 확인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보고는 지자체의 여성정책 추진인프라 현황, 여성정책기본계획 이행결과, 지자체의 여건을

고려한 특화사업의 이행결과 등 3개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보고분야별로 평가항목과 항목별 세부내용을 포함하는 작성양식과 작성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평가를 심의·조정하는 별도의 평가위원회는 두지 않았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는 보건복지부가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평가지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각 기관은 시행사업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며,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심의하는 체계를 갖는다. 평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의 각 사업별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1차 평가와 분야별 성과지표를 통해 기본계획의 정책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2차 평가로 구분된다. 1차 평가에서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되는지를 점검하고, 2차 평가에서는 각 부처와 기관에서 정하는 사업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통해 정책성과를 평가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 종합

이상으로 살펴본 국내의 법정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의 성과관리는 주로 시행 사업들의 추진실적 점검과 익년도 예산편성, 사업조정 등의 환류를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의 추진실적 평가는 중간평가로서 시행중인 사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대부분의 법정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정책과제별로 평가분야와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세부과제의 평가가 이루어지며, 과제별 성과지표를 두고 정량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토종합계획과 여성정책기본계획의 경우에는 별도의 성과지표가 없이 주로 정성적, 기술적 평가가 이루어지며, 필요시에만 정량적 평가를 병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평가는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평가위원회는 각 기관에서 이루어진 자체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성과관리는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두지 않고 각 기관이 여성부에 시행계획 이행상황을 보고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표 5-18] 법정 기본계획의 성과관리 종합표

평가명	주관기관	평가대상	평가근거	평가위원회	평가대상기관	평가기준/지표	평가주기 / 기간
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 추진실적 평가	국토해양부	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 (전략 6개, 실천과제 83개, 단위과제 150개)	국토기본법 (제18조)	평가위원회	중앙행정기관 / 광역지방자치단체	-평가분야(2) :실천계획 부합성 실천과제 추진실적 -평가항목 (6) :목표의 적합성세부수단의 충실성, 과정·절차의 적절성, 계획대비 추진실적, 시행과정의 적절성 예산집행의 적절성 -평가지표 없음	1년 단위 평가/ 6개월 (6월1일~11월30일)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 성과관리	환경부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 (5대 핵심 전략, 이행과제 48개, 세부과제 233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6, 9조) 및 시행령 (제4, 9조)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	중앙행정기관 / 광역지방자치단체	-이행계획 성과지표 :4대전략, 48개 이행과제, 233개 세부과제별 성과지표 -지속가능발전지표 :사회·경제·환경 3개 분야 77개 지표	2년 단위 평가/ 익년 2월 말 제출
여성정책기본계획 이행상황 점검	여성부	여성정책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5개 정책과제, 정책영역 15개, 53개 세부과제)	여성발전 기본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9조)	-	중앙행정기관 / 광역지방자치단체	-평가분야(3)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인프라 보고, 여성정책기본계획 이행결과 보고, 지방자치단체 특화사업 이행결과 보고 -평가지표 없음	1년 단위 평가/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성과평가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연도별 시행계획 (4대 추진전략, 추진과제 13개, 세부과제 227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4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 광역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성과 (1차평가) :예산집행률, 사업목표달성률 등) -성과지표에의한 정책성과평가 (2차평가) :과제별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가짐	1년 단위 평가/ 10개월 (3월~12월)

제6장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방향

1. 성과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기본방향
2. 기본계획 단계별 성과관리 방향
3. 실행계획의 성과관리 방향 설정

1. 성과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기본방향

- 일시적·단편적 성과측정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의 성과관리 체계 구축

앞서 살펴보았듯이 정책평가 또는 성과관리는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측정하는 것으로 건축정책기본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건축·도시관련 정책 및 사업의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와 함께 부수적인 효과나 역기능, 장기적인 파급 효과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성과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건축정책기본계획에서 다루는 정책 및 사업은 제도개선, 국책사업, 연구과제, 시범사업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각 과제의 효과가 단기간에 드러나기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효과가 나타나는 특성이 있으므로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성과측정(performance measurement)이 아닌 장기적 안목을 가진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 중앙집권적인 평가체계가 아닌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성과관리 체계 구축

현행 우리나라의 정책평가 체계는 중앙행정기관 위주의 평가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자체의 자체평가 기능보다는 중앙에 의한 성과관리가 더 중시되는 경향이 강하며 따라서 지역의 실정이 고려되지 않고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건축·도시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성과는 대부분 지역차원에서 수립되는 광역 건축기본계획 및 기초건축기본계획에서 수립한 구체적인 과제와 사업을 통해 나타난다.

특히 2010년부터 시행예정인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관련분야에서 처음으로 수립·시행되는 기본계획으로 실천과제별로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제시하는데는 무리가 있으며, 향후 수립될 예정인 지역차원의 광역 또는 기초건축기본계획에서 각 지자체별로 성과지표가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광역·기초지자체별로 구체적인 건축·도시관련 현황과 함께 성과지표가 체계적으로 구축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인 환류 체계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건축·도시관련 정책적·산업적·제도적·문화적 현황분석 자료가 태부족한 상황에서는 기본계획의 실천과제별 결과에 대한 성과측정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며, 향후 지역별 현황과 성과지표의 데이터베이스가 정착화 된 이후에 국가차원의 성과지표가 설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부처별 실행계획과 지역의 기본계획에 대한 시범적인 성과평가를 거쳐 구체적인 성과평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건축·도시관련 현황조건이 다르고, 대부분의 건축·도시관련 정책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중앙 집권적으로 일률적인 성과지표를 제시하는 것은 지역의 환경 및 여건을 고려할 때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기존의 top-down 형식의 성과관리가 아닌 bottom-up 방식의 자체 이행 점검을 통해 지역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한 환류체계의 구축

과제별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추궁이나 실패의 원인을 찾는 도구로 활용³⁵⁾되어서는 곤란하며 보다 나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건축·도시관련 사업은 지자체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은데 성과평가 결과를 중앙정부차원에서 지자체에 대한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이나 지자체 장의 능력을 가늠하는 잣대로 활용한다면 지역건축기본계획이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정책 및 사업에 초점을 맞춘 단기 결과지향적인 계획으로 전략할 우려도 있다.

성과관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기본계획 실천과제별 정책 효율성 제고와 함께 그 추진과정을 상세히 분석하여 향후 정책방향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로 성과에 대한 평가위주의 측정만 하고 이것이 정책개선에 제대로 환류되지 못한다면 결국 평가를 대비한 준비업무만 가중시킬 뿐 성과관리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역과 국가의 건축·도시 관련 디자인수준을 제고하고, 건축문화에 기반한 도시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의 실천과제에 대한 각 부처별, 지역별로 서열을 측정하는 방식이 아닌 전략적이고 상시적인 과정중심의 성과관리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³⁶⁾

35) 평가는 관리의 수단이지만 지금까지의 평가관행은 각 부처의 특수성이나 정책의 특성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거나 부처에 대한 감시기능으로 인식되어 왔음(박병식, 2002)

36) 현재 정부업무평가법에서는 과정평가와 사후평가를 시행하고 있지만, 사업이 종료 된 후 원래의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살피는 사후평가에 집중된 나머지 사업의 추진과정이 계획대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은 부족한 것이 현실임(이윤식, 숭실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 기본계획 단계별 성과관리 방향

□ 1 단계 : 정보수집기(2010~2011)

2010년에 시행 예정인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국내 최초의 건축도시분야 정책계획으로서 국가차원의 비전과 정성적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1차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12개 실천과제 및 3개의 실천력 강화를 위한 과제는 관련부처의 실행계획과 지자체 단위의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방향을 제시하는 포괄적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까지 건축도시관련 현황 및 기초통계자료 구축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각 실천과제별로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작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역별로 구체적인 현황 및 기초조사가 이루어지고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성과관리는 이러한 지역별 여건 및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일례로 실천과제 중 건축·도시관련 에너지절감 및 탄소저감 기준치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지역별 여건이 반영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지역별 불균형 심화와 함께 실효성 없는 계획이 수립될 우려가 높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성과관리의 1단계인 “정보수집기”에는 지역별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지역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시기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러한 지역계획을 바탕으로 정보를 취합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지침에서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 실천과제별 성과지표 구축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조사항목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16개 광역시·도별 지역건축기본계획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지역별 성과지표를 취합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부차원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012년에 실시될 국회보고에서는 건축기본법 제15조에서 명시된 보고서 포함내용³⁷⁾에 대해 두가지 측면에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첫째, 중앙정부차원에서 추진되는 부처별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이행사항을 정성적 지표에 따라 이행 점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둘째, 16개 광역시·도별로 수립된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상황 및 지자체별 성과지표를 취합한 국가차원의 성과목표 및 지표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역별로 작성된 성과지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부처별, 지역별로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전문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실천과제별 정량적, 정성적 성과측정이 이루어진다면 2014년의 제2차 국회보고에서는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보고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 2 단계 : 성과관리체계 구축기(2012~2014)

성과관리체계의 본격적인 구축은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첫 번째 국회보고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시점에는 지역의 특성 및 여건을 반영한 국가차원의 성과목표 및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1차 기본계획의 최종성과를 도출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면 비로소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성과관리체계가 구축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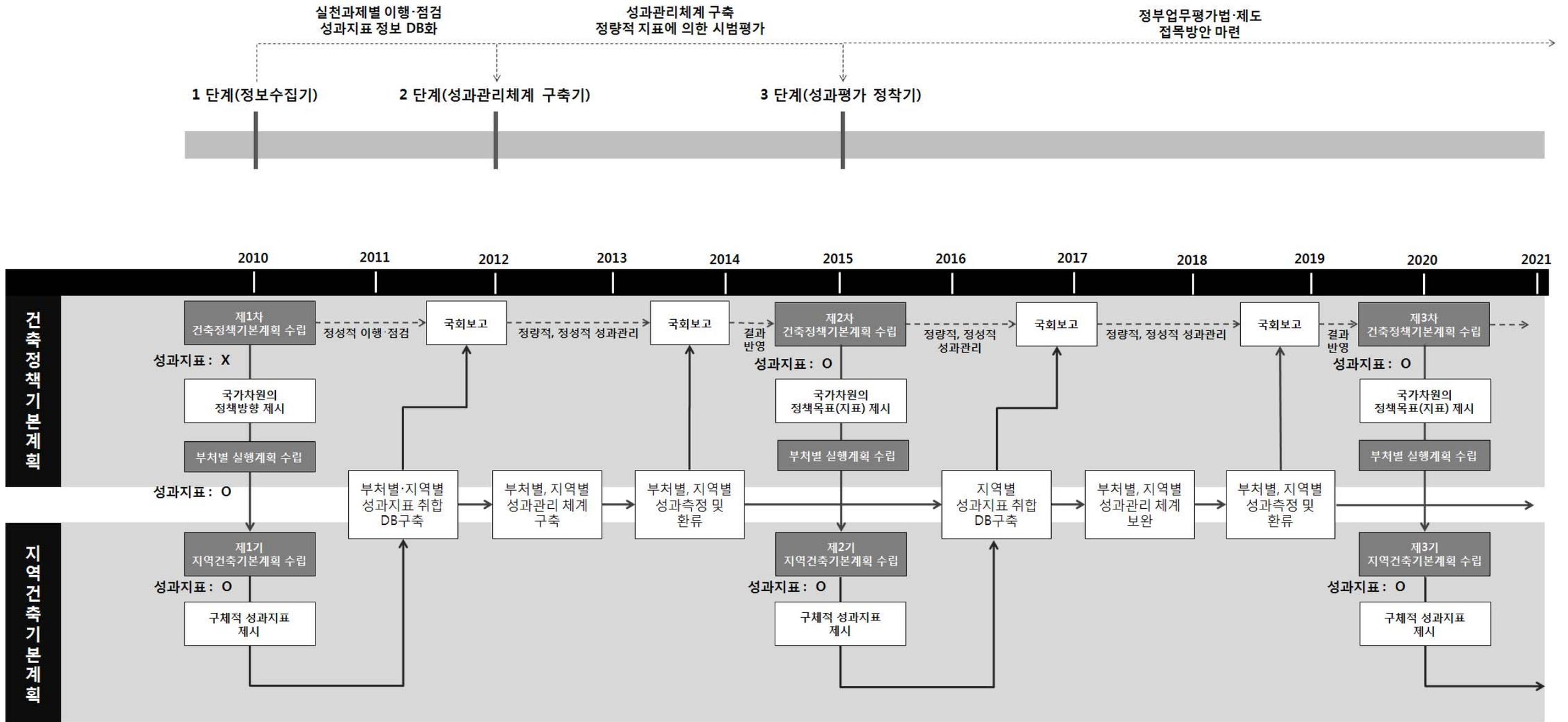
37) 건축기본법 제15조에서는 2년마다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성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①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성과 등에 관한 사항, ②미래사회의 건축환경 변화 전망 및 대책, ③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과 사업 등에 관한 사항, ④건축환경, 문화 창달을 위한 지역의 품토성 및 전통성 계승에 관한 시책, ⑤건축제도기준 등의 국제화에 관한 사항, ⑥건축기술건축설계의 발전,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⑦그 밖에 건축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음

□ 3 단계 : 성과평가 정착기(2015~)

성과평가 체계 구축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과평가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이 마무리되고 그 성과가 널리 홍보되는 시점에서 작성되는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이 될 것이다. 이때는 예산과 연계된 본격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현행 성과평가와 관련된 법·제도와의 연계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내의 정부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성과관리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근거하여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각 부처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구조이다.

건축기본법에 근거하여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자체적인 성과관리도 가능하겠지만 범부처, 범지역적인 특성을 지닌 건축도시 관련정책의 성과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행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및 「국가재정법」 등과 접목시킬 필요³⁸⁾가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8)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근본적인 목적은 각 부처별, 지자체별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에 의해 피평가자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해소하고, 평가의 중복현상을 지양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주관으로 통합평가하여 국정평가 제도를 체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림 6-1] 건축정책기본계획 성과관리 로드맵

3. 실행계획의 성과관리 방향 설정

1) 성과관리의 성격과 기능

- 실천과제에 대한 부처별 실행계획의 추진사항 이행점검(review & monitoring) 기능

2010년부터 시행 예정인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실천과제는 건축도시관련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이에 대한 성과지표를 현 시점에서 제시하는 것은 어려우며 향후 추진될 부처별 실행계획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천과제에 대한 부처별 실행계획은 매년마다 작성될 예정이며 과제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① 현황과 문제점, ② 목표 및 추진전략, ③ 세부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④ 추진기간 및 투자계획, ⑤년차별 시행계획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다수의 소관부처별로 작성될 실행계획이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실행계획의 수립 집행 및 실적평가에 관한 기준 및 지침이 필요하다. 이것은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부합성을 검토함으로써 기본계획의 본질적인 취지와 의도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실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이행점검 결과를 통해 계획 추진의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선책을 제시할 수 있으며 또한 후속적으로 수립되는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방향을 제시하는 참고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성과관리는 실천과제별 실행계획의 추진과정에서 중간단계의 검토와 점검 기능도 함께 수행하게 된다.

□ 수행과정에 대한 성과평가의 성격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계획 초기부터 구체적인 성과지표 설정이 사실상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지역계획 등에 반영하는 중간단계의 이행점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즉 정책목표별, 실천과제별 실행수단, 방법, 프로그램,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으로 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최종목적 달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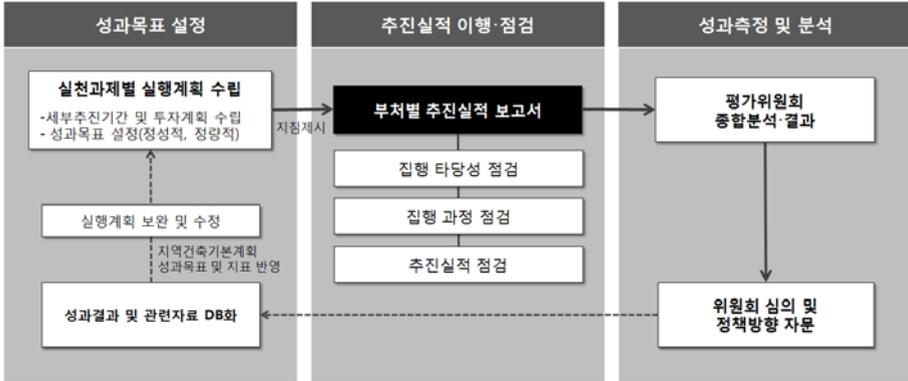
2) 성과관리 체계 및 참여주체별 역할

□ 성과관리 체계 및 절차

실천과제별로 부처에서 수립한 실행계획을 중심으로 「성과목표 설정」, 「추진실적 이행점검」, 「성과측정 및 분석」단계로 구분하여 연차별 환류시스템을 구축한다. 「성과목표 설정」단계는 실천과제별 주관부처와 협조부처가 공조하여 성과목표를 포함한 세부추진기간 및 투자계획 등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단계이다. 국토해양부는 각 부처별 실천계획을 취합하고, 이행점검을 위해 각 부처와 협조하여 「집행 타당성」, 「집행과정」, 「추진 실적」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부처별 추진실적 보고서에 대해 성과측정 및 종합 분석하여 연말 성과보고서(annual review report) 초안을 작성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이에 대한 심의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자문을 통해 최종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성과평가 과정에서 조사된 건축·도시관련 기초통계 및 관련자료, 실행계획별 성과는 국토해양부에서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이를 반영한 보다 실효성 높은 실행계획과 지역계획의 수립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러한 성과관리 환류체계를 통해 5년단위의 종합성과를 도출하고, 향후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시 활용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체계를 정비한다.



[그림 6-2] 건축정책기본계획 성과관리 환류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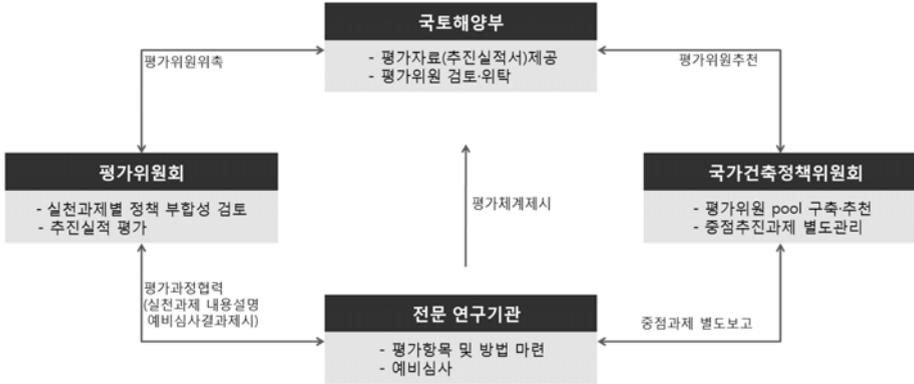
□ 성과관리 참여주체별 역할

실천계획의 부합성 검토 및 추진실적 평가를 위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해양부, 전문연구기관 및 평가위원회가 역할을 분담하여 협력하는 평가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권자로서 부처별로 실천과제에 대한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제시하고, 실행계획별 성과관리를 위한 추진실적 보고서 작성지침 및 이행점검 기준 및 지표를 제시한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건축정책기본계획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연차별 실행계획,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관련자료 및 성과지표, 성과결과, 지역건축기본계획 관련자료 및 지표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리한다. 연차별 성과보고서 및 국회보고자료, 종합성과결과보고서 등을 홈페이지에 등재하여 홍보한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심의·조정을 수행하는 대통령직속 위원회로서 건축정책기본계획 실행계획별 성과측정 및 분석을 수행할 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한 관련전문가 Pool을 구축하여 위원을 추천하고, 국토해양부 및 평가위원회에서 작성한 성과보고서(annual review report)의 심의와 정책방향에 대한 자문을 시행한다. 건축정책기본계획 중 범부처 및 국가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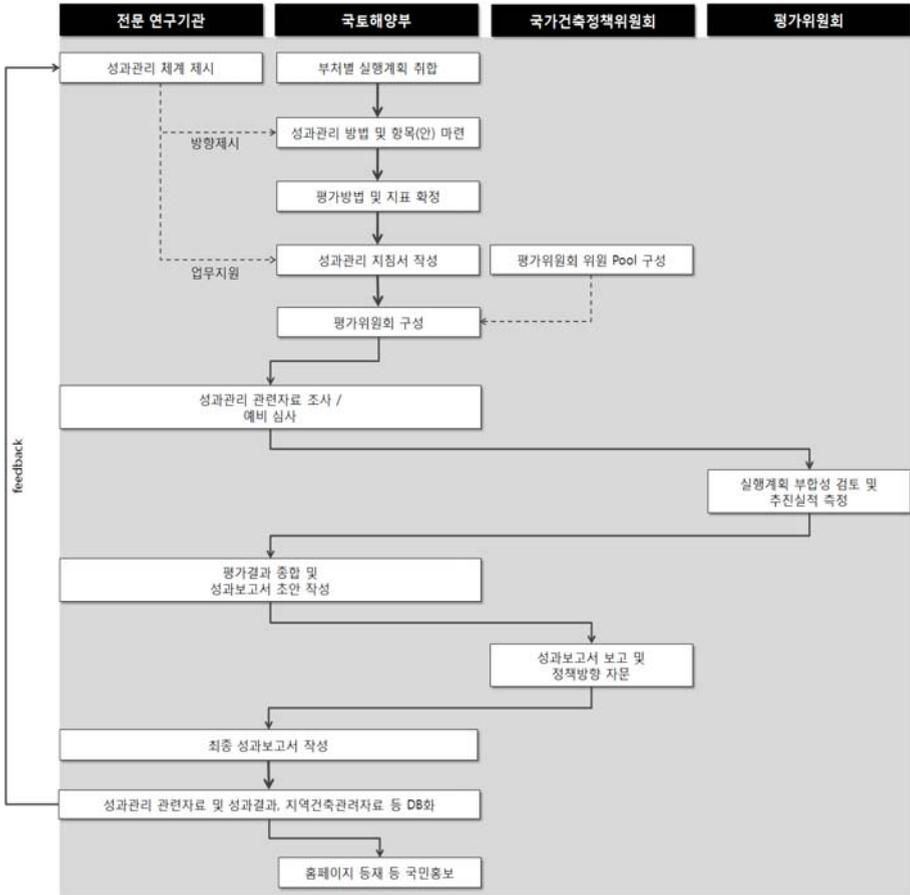
원에서 별도의 기획이 요구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별도 자문하고 관리한다.



[그림 6-3] 건축정책기본계획 성과관리 참여주체별 역할 및 기능

성과관리를 위해 국토해양부가 위촉, 구성되는 평가위원회는 실천과제의 실행계획별 집행타당성, 집행과정,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국토해양부를 지원하는 전담연구기관은 구체적인 성과관리 체계(실행계획별 평가항목 및 기준, 측정방법 등)를 제시하고 평가위원회 및 국토해양부의 추진실적 모니터링 업무를 지원(예비심사)하며 성과결과를 바탕으로 성과보고서 초안 작성에 대한 지원 등 국토해양부의 성과관리 관련업무 전반에 대한 지원을 담당한다.



[그림 6-4] 건축정책기본계획 성과관리 세부절차

3) 성과측정 방법 및 항목 설정 방향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실천과제별 실행계획에 대한 성과관리는 추진과정에서의 이행점검의 성격을 지니므로 이에 적합한 성과측정 방법 및 항목이 설정되어야 한다.

□ 실행계획 부합성 점검(집행타당성) 항목 설정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전략별 실천과제 내용과 부처별로 수립한 실행계획 간 부합성을 비교 검토하여 부처별로 시행되는 계획이 궁극적으로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정책목표 달성에 적절한 실행계획인지 여부를 검토한다.

기본계획 실천과제와 부처별 실행계획의 부합성을 점검함으로써 실행계획의 추진여부를 점검하고, 불합리할 경우에는 실행계획의 수정 및 보완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실행계획의 집행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리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표 6-1] 실행계획 부합성 점검항목(예시)

점검항목		검토내용
1	성과목표의 적합성	1. 계획의 목표나 유형이 정책적 입장에서 바람직한가? 2. 해당 계획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3. 건축정책기본계획이 제시하는 추진전략에 적합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가? 4. 전체목표 및 연차별 목표 등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5. 선정된 성과목표는 지자체의 건축·도시관련 기초조사에 근거하여 수립되고, 실천과제의 취지에 부합하는가?
2	세부실천과제 선정의 적정성	1.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충분한 세부실천과제로 구성되었는가? 2. 세부실천과제를 추진하는데 적절한 수단 및 소요예산계획을 수립하였는가? 3. 세부실천과제간 연계되어 서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가? 4. 선정된 세부실천과제가 목표대로 추진되었을 때 국가차원의 건축·도시분야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인가?
3	추진과정 및 절차의 적절성	1. 계획의 내용 추진방법, 추진체계 등이 다른 대안들보다 목표를 더욱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인가? 2. 단계별 추진계획 등이 전단계 또는 후속단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3. 실행계획을 추진하는데 적절한 절차 및 과정을 제시하고 있는가?

※ 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 평가체계 정립방안 연구의 점검항목 일부 발췌

□ 실행계획 추진실적 점검(집행과정 및 실적) 항목 설정

부처별로 수립한 실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담당 부처에 대해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유도하고,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실천성 및 효과성에 대해 점검한다.

실행계획 추진과정에서 절차적, 내용적 문제점과 수행방법상의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는데 활용한다.

[표 6-2] 실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항목(예시)

점검항목		검토내용
1	계 획 대 비 추진실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내용이 원래의 실행계획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는가? 2.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결과가 당초의 계획에 맞는 수준으로 집행되었는가?
2	수 행 과 정 의 적절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기 계획된 일정에 의거하여 집행되고 있는가? 2. 집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 적절한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3. 집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의 변화를 적절히 고려하고 있으며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4. 수행과정의 기록(회의록, 회계장부 등 각종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3	예 산 집 행 의 적절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책 또는 사업의 예산집행 내용과 일정이 원래의 실행계획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는가? 2. 예산집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의 변화를 적절히 고려하고 있으며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3. 투입된 예산을 목표달성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가?

※ 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 평가체계 정립방안 연구의 점검항목 일부 발췌

□ 실천과제 및 실행과제의 성격 유형별 점검기준 마련이 필요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추진전략별 실천과제를 「제도개선」, 「기존 계획관련 국책사업 관리」, 「연구과제」, 「시범사업」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부합하는 점검항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향후 부처별 실행계획이 완료·취합되면 과제유형별로 구체적인 점검항목 및 성과관리 방안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4) 성과측정 및 분석을 위한 성과관리 평가위원회 구성 방향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 위원 및 민간전문가 Pool 활용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기본법(법률 제8852호)에 근거하여 지속성을 갖는 대통령직속의 위원회로 16개 부처 장관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13인의 건축도시관련 전문가를 위촉위원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정책조정분과», 「국토환경디자인분과», 「건축문화진흥 분과」 등 3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정책목표 3개와도 연계될 수 있다. 또한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에 근거하여 건축·도시관련 민간전문가 pool을 구축하고 있어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성과관리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정책목표별 3개 분과의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위원회의 구성은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목표에 근거하여 「생활공간개선», 「녹색성장기반», 「건축문화실현」 등 3개 분과로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각 분과별 평가위원회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민간위원 1인이 분과위원장이 되고, 전문분야별로 민간전문가 pool을 국토해양부에 추천하여 5~7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총 6~8인으로 구성한다.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추천과 건축·도시관련 학·협회의 추천을 받아 국토해양부 장관이 선정하여 별도로 위촉한다.

□ 평가위원회의 업무수행 지원

실행계획, 성과측정항목 및 기준, 성과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련자료 및 행정프로세스에 대한 조연을 수행하는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인력으로 국토해양부 실무담당자 1인과 전담연구기관의 연구원 1인이 각 분과별 평가위원회에 투입될 필요가 있다.

제7장 결론

□ 연구의 요약 및 한계

본 연구는 2007년 12월에 제정된 건축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 중인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시행과 성과관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정부성과평가관련 법·제도로서 정부업무평가기본법, 국가재정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정부업무평가제도,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등을 조사·분석하고, 해외의 성과관리 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성과관리에 관한 법적 구조 및 국제정세 등을 파악하였다. 또한 건축정책기본계획과 유사한 법정 기본계획의 성과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항목 등 성과관리 체계를 조사·분석하여 향후 본격적으로 연구가 진행될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성과관리체계 연구를 위한 사전 기초조사 자료를 구축하였다.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성과관리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현재 수립 중에 있는 건축정책기본계획의 구성체계를 살펴보고, 각 실천과제별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세부실천과제별 추진주체, 과제성격, 수행기간, 성과지표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 과제를 유형화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성과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처음으로 수립·시행하는 현시점에서는 건축도시관련 현황 및 기초통계자료조차 부족한 실정으로 각 실천과제별 구체적

인 성과지표를 도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이는 지역별로 구체적인 현황 및 기초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차원의 성과관리를 위한 일방향적 성과지표를 제시하면 그 부작용이 상당할 것이라는 예측도 반영된 결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과정에서 조사·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성과관리 체계구축 과정을 3단계(정보수집기-성과관리체계구축기-성과평가 정착기)로 구분하여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최종년도인 2014년까지 지속적인 개선·개발을 위한 성과관리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이 중에서 관련부처별로 당장 성과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실천과제별 실행계획에 대해서는 과정중심의 이행점검을 제안하고, 이를 위한 성과관리 체계도, 성과측정 방법 및 항목, 관련 추진체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본계획 실천과제별 실행계획의 수행과정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계획이 지닌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선방안을 도출 환류하여 이후의 지역건축기본계획과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시 성과결과를 반영하여 전략계획으로서 갖추어야 할 실효성을 향상시키고, 성과관리 과정에서의 학습 및 지식 축적을 통해 계획 수립 및 추진주체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 향후 과제

본 연구는 3개월이라는 제약적인 연구기간과 함께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기본계획의 실천과제에 대한 심층적인 내용분석이 어려운 한계점이 있었으며 따라서 실천과제별 성과지표를 도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또한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고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부처별 실행계획과 지자체별 지역건축기본계획이 아직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점도 구체적인 성과지표의 도출이나 이를 바탕

으로 한 성과관리 방안을 도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성과가 정부의 예산배분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궁극적으로 목표했던 전략계획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정부정책평가관련 법·제도와의 연계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성과관리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나아가 건축정책기본계획이 범부처, 범지역적으로 기획·시행되고 있는 건축·도시관련 정책 및 예산사업에 대한 통합관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부업무평가기본법」과 「국가재정법」과의 연계방안에 대한 지속적 검토가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국가연구개발 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이 건축·도시관련 사업의 통합관리를 위한 별도의 성과관리 관련법령의 제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전택승, “우리나라와 외국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한국조세연구원, 2004.
- 이광희, “정부업무 평가제도 조사 및 정비방안”, 국무총리실, 2008.
- 이윤식, “우리나라 정책평가체계의 현안과 과제”, 송실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4.
- 박노옥,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국제비교”, 한국조세연구원, 2008.
- 문정호, “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 평가체계 정립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7.
- 대한민국정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국토연구원, 2006.
- 김성일, “정책목표 연계형 성과지표 및 평가체계 개발 2단계”, 국토연구원, 2007.
- 김용근,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한 방향설정 및 지표 개발 연구”, 한국문화원연합회, 2008.
- 김상호, “질적특성을 고려한 건축·도시공간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08.
- 이상민, “공공건축물의 효율적 조성을 위한 운영방안 연구(최종연심회 자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09.
- 이용우,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지표 설정과 활용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2007.

- 김성일, “재정사업 자율평가 체계구축 연구”, 국토연구원, 2005.
- 김진욱,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동향조사 및 활성화 방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08.
- 한국은행, “사업서비스업의 현황 및 발전방향”, 한국은행 조사국 산업지역팀, 2007.
- 김상호,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공청회 자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09.
- 김현구,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논리와 과제”, 2006.
- 건설교통부, “공공 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 1999.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사업 추진실적 자체평가서 작성지침, 2005.
-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 “정부업무 평가지침”, 2002.
- 김명수, “공공정책평가론”, 1985.
- 김재형, “재정사업 성과평가 체계 및 지침개발 연구 : 사회간접자본투자, 직업훈련투자 및 연구개발투자 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2003.
- 기획재정부, “회계연도 국유재산 결산결과”, 2005.
- 오수호,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와 지속가능한 개발”, 대한건축학회, 건축 제47권 제12호, pp.45~48, 2003
- 하봉찬,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정체 현상과 시사점”, KIET 산업경제.
- Peter Hall, "Evolution of strategic planning and regional development"
- 게리코킨스(주순제 역), “전략적 성과관리”, 2008.
- 정주택, “정책평가론”, 2007.
- 김홍배, “정책평가기법”, 2003.
- 정정길, “정책평가 : 이론과 적용”, 2004.
- 이광희, "정책평가와 성과관리 ", 2006.

Guideline for Performance Management of the Fundamental Plans on Architecture Policy

Kim, Sang Ho
Kim, Young Hyun

Background for Study and its Purpose

Since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Architecture in December 2007 until now, a controversy over the validity of the Fundamental Plans on Architecture Policy has been ceaselessly raised. In addition, on the relationships with the currently implementing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the Urban Planning System in wake of the Act on Planning and Use of National Territory, and the Framework Plan on Landscapes in wake of the recent Act on Landscapes, even experts on architecture and cities have shown mixed opinions on the discrepancy and role between those plans.

So, in order to secure sustainability of the architecture policies along with the ultimate achievement of the goal of the Fundamental Plans on Architecture Policy, it is necessary to arrange a systematic and strategic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reasonably suitable for such policies, enhance the efficiency of implementing the plans and maximize management capability.

the Fundamental Plans on Architecture Policy, a broad-wide plan which covers the buildings and cities as a whole requires a

detailed evaluation method by action task and their evaluation index. However, the scope of such evaluation method and index is pretty much wide and in order to build a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as a plan to be set up for the first time in Korea, prereview is demanded in many respects.

It is meaningful in that this study, the first attempt for performance management of the Fundamental Plans on Architecture Policy intends to categorize the characters of such Policies by action task and review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s of the currently performed government policies-related laws and systems and those of similar plans, instead of building a complet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so that I sought to find a direction of performance management to be established in years to come.

Analysis on the Fundamental Plans on Architecture Policy

In order to define the character of the Fundamental Plans on Architecture Policy by action plans, it needs to categorize such action tasks in a multi-faceted aspect. In this study, I categorized and analyzed those tasks in 4 aspects - "Driving Subject," "Character of the Action Task," "Period of Driving the Action Task" and "Whether or not a Performance Index is possibly induced."

The study found that a lot of action tasks bears more than 2 patterns, not a single one and many of them requires a mid- & long-term management. So, it is judged that a performance management too must be conducted around a long-term and process-centered evaluation, rather than a short-term and result-centered one.

A Theoretical Review on Policy Evaluation and Performance Management

I examined the 「Basic Act on the Evaluation of Government Work」, 「National Finance Act」 and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 the foundation for implementing performance management for the government's policies and projects and analyzed the situation of operating the major institutions, organization of the institutions and their driving system. Also, I reviewed the evaluation and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of the overseas major nations –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and Japan, and checked with the position and character of Korea's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As a result, the findings demonstrated that many of those nations reject an uniform evaluation standard for performance management and are going to make use of a flexible evaluation strategy, whose evaluation consequences are mainly reflected in their governments' budget and are being used as a means for enhancing the responsibility and efficiency of the government work.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of Korea's Legal Plans

In order to set up the direction of performance management of the Fundamental Plans on Architecture Policy, I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detailed performance systems, like performance index, evaluation method and evaluation index, of the "Action Plan of the Comprehensive National Territory," "Strategy of the Sustainable National Development and Its Implementation Plan,"

“the Fundamental Plans on Female Policies,” and “the Fundamental Plans on the Low Fertility-Aging Society Policies” similar to the character of the Fundamental Plans on Architecture Policy.

In the analysis, the findings showed that many of the legal Fundamental plans and their implementation plans were conducting an evaluation on their detailed tasks by policy tasks in terms of evaluation field and items. An quantitative evaluation on a detailed performance index by tasks has not been performed. Exceptionally, in case of the Action Plan of the Comprehensive National Territory and the Strategic Plan on Female Policies, a qualitative and technical evaluation has been mainly conducted without an additional performance index, carrying out a quantitative evaluation in parallel, whenever necessary.

Most of the evaluation has been made by the evaluation committees and the evaluation committees played a role of deliberating on the organizations' own evaluation results and establishing and coordinating the strategic plan and implementation plan.

Direction of Building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of the Fundamental Plans on Architecture Policy

As earlier discussed, policy evaluation or performance management is to evaluate and mea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ies, which must play a role of comprehensively reviewing an issue of whether the policies and projects implemented by the Fundamental Plans achieved their goals as well as the accompanying effect, adverse effect and a long-term ripple effect.

In summary, the basic direction of the Fundamental Plans

on Architecture Policy suggested by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a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must be built from a long-term perspective, not a temporary and fragmental performance measurement.

Secondly, local considerations must be reflected in conducting performance management, avoiding a power-centralized evaluation system.

Thirdly, a sustainable and developmental feedback system must be set up.

The most important purpose of performance management is to analyze its driving process and to utilize it as a basic material for improving and developing the policies in years to come. In order to do so, a strategic and process-centered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nstead of a fragmental evaluation method, must be created.

This study faced a few difficulties in that research was restricted to a 3-month period and an in-depth analysis on the action tasks of the Fundamental Plans on Architecture Policy had to be conducted under the situation where the First Fundamental Plans on Architecture Policy is being established. So, in the study, I divided the process of building a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of the Fundamental Plans into 3 phases (Information Gathering – Building of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Firmly Positioning of Performance Evaluation), based on the investigations and analyses performed in the course of the research and concluded the study by suggesting a performance management roadmap for sustainabl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by 2014, the last year for the First Fundamental Plans on Architecture Policy.

부록1. 재정사업자율평가지표

□ 구성

- 총 24개의 평가항목으로 구성하고, 전체 평점은 100점으로 구성
- 공통 평가항목

단계	평가항목	세부질문
계획 단계	1. 사업계획의 타당성	1-1. 사업목적이 명확하며 추진근거가 있는가? 1-2.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한가? 1-3. 다른사업과 중복·유사하지 않게 사업이 설계되었는가? 1-4. 현재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인가?
	2. 성과계획의 합리성	2-1. 성과목표/성과지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2-2. 성과목표/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2-3.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집행 단계	3. 집행의 효율성	3-1. 사업추진 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3-2. 사업추진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3-3.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3-4.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평가 단계	4. 성과목표 달성도	4-1.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 4-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4-3. 사업고객이나 이해관계인이 만족하고 있는가? 4-4. 평가결과를 사업계획·방식의 보완·변경 등에 활용하였는가?

• 사업유형별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질문	단계
SOC	1-SOC 1. 각종 갈등요인을 점검·조정하고, 계획에 반영하였는가?	계획
	2-SOC 1.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는가?	집행
	2-SOC 2. 총사업비 관리가 적절한가?	집행
시설·장비	1-시설장비 1. 시설·장비구매의 적정시점인가?	계획
	2-시설장비 2.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는가?	계획
기타 직접	1-기타직접 1. 사업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가?	계획
출연·출자	1-출연출자 1. 대상기관의 경영상황 점검결과 적정규모의 지원인가?	계획
용자 사업	2-용자 1. 대출조건의 설정은 합리적인가?	집행
	2-용자 2. 자금 회수계획 대비 자금 회수율은 양호한가?	집행
민간 보조	1-민간보조 1. 다년간 연속지원된 사업의 지원필요성을 재검토하였는가?	계획
	2-민간보조 1. 민간사업자 선정은 합리적인가?	집행
	2-민간보조 2. 민간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충실한가?	집행
지자체보조	1-지자체보조 1. 지자체의 사업여건을 검토하였는가?	계획
	2-지자체보조 1. 지자체 단계 집행이 효율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는가?	집행

부록2. 건축정책기본계획 실천과제별 실행계획 추진실적서 작성양식(예시)

1. 추진 체계
2. 실행계획 및 세부실행과제 추진내용 및 실적
3. 2010년 예산집행(투자실적) 추진내용
4. 자체평가 종합 및 향후대책
5. 참고자료 첨부

- 정책목표 1.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
- 추진전략 1-1. 국토환경 디자인 강화
- 실천과제 1-1-1. 지역이미지 향상을 위한 경관 형성·관리

세부실천 과제명	수변·연안 개발, 산업·관광단지 조성 등 지역개발 사업의 디자인 제고		
실행계획명	세부실행과제 1.		
	세부실행과제 2.		
	세부실행과제 3.		
관리번호	1-1-1-1		
과제구분	제도개선 <input type="checkbox"/> 국책예산사업 <input type="checkbox"/> 연구과제 <input type="checkbox"/> 시범사업 <input type="checkbox"/>		
주과부처	국토해양부, 농림수산부	협조부처	전부처
추진기간	2010. 1. ~ 2012. 12.	단기과제 <input type="checkbox"/>	중기과제 <input type="checkbox"/> 장기과제 <input type="checkbox"/>
성과지표	성과지표 제시 <input type="checkbox"/> 성과지표 미제시 <input type="checkbox"/>		
담당자	■ 성명 : ○ ○ ○		■ 직책 : ○ ○ ○
	■ 전화 : 000-0000		■ E-메일 : ○ ○ ○

1. 추진 체계

구분	업무/역할	'10년 업무추진내용
주관부서	■ 국토해양부	-
	-	-
	-	-
	■ 농림수산부	-
	-	-
	-	-
협조부서 (정부부문)	■ 중앙행정기관 -	- -
외부협력기관 (비정부부문)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
	-	-
	-	-
	-	-
특기사항	-	

2. 실행계획 및 세부실행과제 추진내용 및 실적

실행계획 및 세부실행과제	2010년 추진계획(목표)	2010년 추진실적	자체평가
디자인관련 심의제도 개선	■ ■	■ ■	매우우수 (제정시행'00년)
생태하천 조성 사업 추진	■ ■	■ ■	우수 (사업대상지 선정, 공모시행)
디자인가이드 라인 연구용역	■ ■	■ ■	우수 (용역추진중)
...			

3. 2010년 예산집행(투자실적) 추진내용

구분	2010년 투자계획(억원)				2010년 투자실적(억원)				자체평가
	국고	지자체	민자	소계	국고	지자체	민자	소계	
특기사항									

4. 자체평가 종합 및 향후대책

1) 자체평가 종합

구 분	내 용
자체평가 종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사업추진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2) 부진사유 및 개선방안

구 분	내 용
부진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3) 향후과제 및 조치계획 등

구분	내용		
향후과제 및 조치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평가위원회 지적·요구사항	지적일자	지적사항	처리내용 및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 참고자료 첨부